

研究報告 154  
1987. 12

# 뉴라운드에 對應하는 農林水産物 輸出入政策方向

輸入部門을 中心으로

金 基 成 (責任研究員)

金 亨 模 (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비

면

# 뉴라운드에 對應하는 農林水產物 輸出入政策 方向 輸入部門을 中心으로

## 要 約

우루과이라운드로 代表되는 뉴라운드는 1986年 9月,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발표된 GATT 閣僚會議宣言을 계기로 協商이 開始토록 되었으며, 農林水產物貿易에 관한 協商은 1987年 2月부터 시작된 GATT 農產物協商그룹會議와 熱帶產品協商그룹會議등의 第1次會議에서부터 初步的이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 研究는 그 뉴라운드가 推進되어온 背景과 經緯 및 GATT 閣僚宣言의 주요 내용을 概觀하고, 그중에서 특히 農林水產物의 무역확대와 輸入自由化의 촉진에 관한 協商의 흐름과 提起된 問題, 各國의 立場 및 韓國의 現行 農產物輸出入制度和 輸入自由化率등을 綜合的으로 감안하여 導出된 對應方案을 摸索, 提示코자 한것이다.

研究結果에 의하면 뉴라운드에 對應하는 農林水產物 輸出入政策의 方向은 대략 다음과 같이 集約될 수 있다.

### 1. 政策方向

韓國이 처해있는 현재의 복잡한 國內外 經濟 및 政治의 與件下에서 농림 수산물의 輸入開放問題가 직면한 難點과 憂慮를 해소할 수 있는 主導의 政策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農業에 대한 保護와 開放이라는 相反된

立場을 보다 적절히 감안하여 實利的으로 現實에 適應해 본다는 前提下에서 몇 가지 政策方向은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이제는 지금까지 採擇하여온 保護主義政策 내지 消極的인 中途政策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開放擴大政策으로 과감히 轉換하는 것이다.

둘째, 이와같은 農業部門의 대폭적인 開放擴大로 인하여 초래되는 農業部門, 특히 農民의 不利益分은 國家의 社會經濟政策的 次元에서 충분히 補償할 수 있도록 적절한 農業補償政策을 實施하여야 한다.

세째, 그와동시에 農業開放으로 인하여 발생할 國內農業에의 衝擊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國內農業 및 產業構造의 調整政策을 併行 推進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構造調整을 먼저 完成한 후에 그에 맞추어 開放擴大등 對外貿易政策을 樹立하는 것이 順理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의 協商進展狀況과 그 裏面에 깔려있는 農產物輸出國과 輸出擴大經濟強國들의 강력한 開放壓力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유있는 接近을 허용치 않고 있다.

네째, 앞에 열거한 農業補償政策이나 農業 및 產業構造調整政策등을 動員하고도, 開放해서는 아니될 部分은 부득이 協商을 통하여 積極的으로 방어할 수 있는 方案을 研究하여 對應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論理的으로는 다소 脆弱하고 진부한 感이 없지 않으나, 農業의 特殊性을 考慮할 것을 강조하면서 쌀, 쇠고기등 韓國의 戰略品目を 輸入自由化의 對象品目에서 제외시키도록 主張하는 동시에 특히, 開途輸入國이 產業構造調整에 所要되는 10年以上의 準備期間을 갖도록 提議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 2. 協商에의 基本카드

만일 農產物貿易을 完全開放하는 것이 國家政策의 기본적인 方向이라면 뉴라운드協商에 對應하는데 있어서 별로 큰 問題가 없을 것이다. 問題는 어디까지나 農產物貿易을 어느 時點에 가서 거의 完全에 가까울 정도까지 開放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時期에 이르기까지는 國家利益과 關聯하여 그 開放의 幅과 規模 및 時間등을 가급적 緩和 내지 늦추어가면서 對處해 나가려 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같이 農業을 대폭적으로 開放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서 輸入開放으로 인하여 발생한 農業部門에의 不利益을 補償하고, 産業構造를 調整한다는 前提下에서도 未洽하거나 不完全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부득이 뉴라운드라는 協商테이블을 통하여 지혜롭게 對處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國際貿易의 大勢가 이미 農產物의 輸入을 完全に 開放하도록 기울고 있는 限, 그리고 그것이 國際間貿易의 大原則으로 確立이 되어가고 있는 이상, 農產物貿易을 開放하지 않겠다는 여하한 論理도 일단, 自國의 利益을 利己적으로 옹호하려는 詭辯에 不過하다는 攻駁과 비난을 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協商相對國도 그러한 立場을 취하고 있고, 國內의으로도 輸入開放과 관련하여 부단히 심각한 문제가 비등하고 있는 한, 論理的으로는 다소 脆弱性이 있고, 또 다소 진부한 감이 있더라도 協商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그 協商에 임하는 기본적인 카드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 農產物의 輸入開放擴大案에는 원칙상 同調하되, 신중을 期하는 方便으로 多數國家가 경험한 農業 및 農林水產物의 特殊性 등을 열거 想起시키면서, 農產物輸入이 例外的으로 開放要求對象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실을 GATT關聯規定등을 들어서 再強調하고,

둘째, 쌀, 쇠고기 등 韓國의 戰略品目에 對하여는 一定限度內에서 輸入自由化를 留保할 수 있도록 하자는 提議를 거듭하는 동시에,

셋째, 長期的 觀點에서 農林水產物의 輸入自由化에 相應하는 農業構造의 조정의 所要期間內에 各國이 輸入自由化 擴大에 의한 충격과 損失을 最少化할 수 있는 「農林水產物 輸入自由化 15 個年計劃」 등과 같은 長期計劃을 勸告토록 提議해 보는 것이다.

끝으로, 未久에 경험하게 될 農業補助金 撤廢論의 壓力과 그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소위 PSE Ratio (生産者補助등가액 比率) 公正算出委員會(假稱)의 設置를 提案(UR 事務局 및 各國別 委員會등) 해 놓고 國內의으로도 그에 對應할 研究팀을 構成하여 準備作業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

## 머 리 말

최근 國際經濟關係에서 關心이 集中되는 主要 爭點의 하나는 輸入開放 즉, 輸入의 自由化를 擴大하는 問題이다. 그와 관련하여 韓國에 있어서도 이 輸入自由化의 적절한 범위와 規模 및 時期 등을 결정하는 일이 懸案難題로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 農林畜水産物の 輸入開放은 특히, 1980 年代에 들어와서 부터 韓國의 對外貿易政策의 主要한 課題로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그 代表的인 要因은 세계 主要 農産物 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開放壓力이다. 이러한 農林水産物の 輸入開放問題가 특히 우리의 심각한 關心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첫째, 韓國이 대외적으로 이른바 新興工業國(NICs)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內面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農業生産國으로서의 經濟 社會的 狀況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둘째, 農林水産물이 그 特殊性 때문에 GATT등의 國際貿易規範上 從來에 開放對象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다른 商品과 같이 開放對象으로 바뀌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 셋째, 韓國의 工産品輸出을 위해서는 1次産品인 農林水産物の 輸入이 불가피한 실질적 前提條件으로 내세워지고 있다는 점 등에 연유한다.

韓國이 그 동안 예전대 對美通商協商과 같은 兩國間 雙務的 接觸에서나, 뉴라운드 등과 같은 多者間 協商에서 農林水産物の 輸入開放論이 提起될 때 마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贊成도 反對도 못하는 애매한 立場을 取하여 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最近 美國의 강력한 貿易收支逆調改善要求로 인하여, 그리고 호주, 캐나다, EC등 기타 先進國으로 부터의 農林水産物 輸入開放擴大要求로 말미암아 韓國은 이제 지난날과 같이 국제적인 貿易協商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中途的인 立場을 더이상 堅持해 나갈수가 없게 되었다. 즉, 지

금까지와 같이 農林水産物の 輸入開放問題를 단순히 輸入을 억제하려는 理論만으로는 그 거센 對外開放壓力에 對應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그러한 農林水産物の 輸入開放壓力에 대응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問題가 提起되며, 이 경우 가장 現實的인 接近方法의 하나로서 현재 추진중인 뉴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에의 積極的인 參與를 생각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命名된 이 뉴라운드는 지난해(1986) 9月,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GATT閣僚會議宣言을 계기로 協商을 開始한 이래 今年들어 5차례의 會議을 개최하였으며, 韓國도 協商初期부터 성실히 會議에 臨하여 왔다.

前述한 國際經濟與件의 變化에 적절히 적응키 위해서는 특히 이러한 뉴라운드에 對應할 수 있는 農林水産物輸出入政策의 方向을 設定하여야 할 것인바, 이 研究는 그중에서 특히, 뉴라운드에 對應하는 農林水産物の 輸入政策의 方向을 研究, 提示코자 한 것이다.

우선 이 뉴라운드協商의 推進背景 및 경위와 그 協商의 계기가 된 GATT 각료선언의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第2章), 아울러 진행중인 뉴라운드의 協商體系와 農林水産物貿易關聯 GATT規定 등을 概觀한 후(第3章), GATT를 비롯하여 UNCTAD, OECD 등 國際機構에서 그동안 推進되어온 農業部門 貿易關聯 主要 討議內容을 考察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뉴라운드로 接近해 온 過程을 고찰하였다(第4章).

이어서 今年 2月부터 실제로 개최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그룹회의와 熱帶產品協商그룹회의에서의 討議內容을 檢討한 후, 그것이 韓國의 農林水産物 輸入開放課題에 제시한 示唆點을 찾아보고(第5章), 앞으로 계속될 이 뉴라운드 農業部門協商에의 對應政策方向을 정리해 보았다.

금년은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개시된 初年度이며, 아직은 實質的協商이 그리 깊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研究가 進行되었기 때문에 研究의 내용도 다분히 「總論的인 概觀」이라는 範圍와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보다 本格化하여 各國의 利害關係가 더욱

실질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므로 次年度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심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87.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 目 次

## 第 1 章 序 論

|               |   |
|---------------|---|
| 1. 研究의 必要性    | 1 |
| 2. 研究의 目的     | 2 |
| 3. 研究의 範圍와 方法 | 3 |

## 第 2 章 뉴라운드協商的 推進背景과 經緯 및 GATT 閣僚宣言

|                 |    |
|-----------------|----|
| 1. 推進背景         | 5  |
| 2. 뉴라운드協商的 推進經緯 | 10 |
| 3. GATT 閣僚宣言    | 13 |

## 第 3 章 뉴라운드協商體系와 農業貿易關聯 GATT 規定

|                            |    |
|----------------------------|----|
| 1. 協商體系                    | 17 |
| 2. 農林水産物の 分類               | 18 |
| 3. GATT 協定文의 構成과 農業貿易 關聯條項 | 19 |

## 第 4 章 農業貿易關聯 國際討議의 뉴라운드 接近

|              |    |
|--------------|----|
| 1. UNCTAD    | 28 |
| 2. OECD와 FAO | 32 |
| 3. GATT      | 33 |

## 第 5 章 뉴라운드協商과 農業部門商品그룹會議

|                                |    |
|--------------------------------|----|
| 1. 1986 GATT 閣僚會議宣言의 內容과 主要 爭點 | 39 |
| 2. 農産物交易에 대한 GATT內의 既存 主要 論議   | 54 |
| 3. 우루과이라운드 農業部門協商              | 64 |

|                                   |    |
|-----------------------------------|----|
| 4. UR 協商的 主要 中間結果 要旨 및 對韓示唆 ..... | 87 |
|-----------------------------------|----|

## 第 6 章 뉴라운드對應 農産物 輸出入政策 方向

|                                    |     |
|------------------------------------|-----|
| 1. 우루과이 라운드 農業部門 貿易協商 對應接近 .....   | 94  |
| 2. 韓國의 뉴라운드關聯 農産物 輸出入制度 概要 .....   | 95  |
| 3. 우루과이 라운드對應 農林水産物 輸出入政策 方向 ..... | 102 |

## 附 錄

|                                                 |     |
|-------------------------------------------------|-----|
| 1. 우루과이 라운드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商議題 및 檢討意見 .....         | 108 |
| 2. 우루과이 라운드 農産物貿易協商에 관한 主要 提案要旨 및<br>檢討意見 ..... | 121 |

# 表 目 次

## 第 2 章

|         |                      |   |
|---------|----------------------|---|
| 表 2 - 1 | 美國의 貿易赤字 .....       | 5 |
| 表 2 - 2 | 美國의 對外純資産 推移.....    | 6 |
| 表 2 - 3 | 美國의 對日貿易赤字 .....     | 6 |
| 表 2 - 4 | 美國의 10 大 貿易赤字國 ..... | 6 |

## 第 3 章

|         |                      |    |
|---------|----------------------|----|
| 表 3 - 1 | GATT의 農業貿易 關聯條項..... | 26 |
|---------|----------------------|----|

## 第 4 章

|         |                                    |    |
|---------|------------------------------------|----|
| 表 4 - 1 | Tokyo Round 以後 先進國의 貿易自由化 措置 ..... | 36 |
|---------|------------------------------------|----|

## 第 5 章

|          |                                          |    |
|----------|------------------------------------------|----|
| 表 5 - 1  | 非關稅措置의 類型別 主要事例.....                     | 49 |
| 表 5 - 2  | 主要國의 國營貿易品目 .....                        | 50 |
| 表 5 - 3  | 主要國의 Safeguards 發動事例 .....               | 50 |
| 表 5 - 4  | 동경 라운드 MTN 協定締結 現況 .....                 | 52 |
| 表 5 - 5  | 國際 關稅引下協商의 成果.....                       | 54 |
| 表 5 - 6  | 우루과이 라운드 農業部門 協商經過 概要 .....              | 68 |
| 表 5 - 7  | 農產物貿易을 規律할 基本原則.....                     | 77 |
| 表 5 - 8  | 美國, EC의 農產物 貿易關聯 措置 通報內譯 .....           | 78 |
| 表 5 - 9  | 韓國의 農產物交易制度 補完資料提出 通報內譯<br>1987. 5 ..... | 80 |
| 表 5 - 10 |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案.....                   | 91 |

## 第 6 章

|         |                           |     |
|---------|---------------------------|-----|
| 表 6 - 1 | 農林水產物 輸出入 推移·····         | 96  |
| 表 6 - 2 | 農林水產物 輸出入現況과 推移·····      | 97  |
| 表 6 - 3 | 農林水產物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措置 ····· | 99  |
| 表 6 - 4 | 主要 農畜產物 基本關稅率 推移 ·····    | 101 |
| 表 6 - 5 | 農畜水產物 輸入自由化率 ·····        | 102 |
| 表 6 - 6 | 代案別 政策比較 ·····            | 103 |

## 圖 目 次

### 第 3 章

|         |                    |    |
|---------|--------------------|----|
| 圖 3 - 1 | 뉴라운드 協商體系 .....    | 18 |
| 圖 3 - 2 | GATT 協定文의 構成 ..... | 19 |

### 第 4 章

|         |                    |    |
|---------|--------------------|----|
| 圖 4 - 1 | UNCTAD의 會議構成 ..... | 30 |
|---------|--------------------|----|

### 第 5 章

|         |                |    |
|---------|----------------|----|
| 圖 5 - 1 | GATT의 組織 ..... | 40 |
|---------|----------------|----|

### 第 6 章

|         |            |     |
|---------|------------|-----|
| 圖 6 - 1 | 關稅體系 ..... | 100 |
|---------|------------|-----|

# 第 1 章

##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農産物의 輸出入開放에 관하여 各국은 그 처하여 있는 經濟與件에 따라 각각 立場이 다르다.

農産物을 輸出하는 나라의 立場에서는 世界貿易秩序가 自由貿易理論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중에서 先進輸出國은 農産物貿易과 關聯된 모든 國家措置를 포괄적으로 정상적인 GATT 體制內로 끌어 들임으로써 農産物도 다른 品目과 같이 모든 나라가 輸入을 開放하는 것이 有利할 것이며, 農産物을 輸出하는 開發途上國은 自國의 世界市場參與의 기회를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들 農産物 輸出國은 보다 公正한 競爭條件下에서 比較優位에 있는 品目の 加工 및 輸出을 확대하는 동시에 輸出多樣化를 위한 기술과 人력의 開發을 支援하면서, 한편으로 일부 國家의 農産物補助金政策과 保護貿易主義를 금지 내지 撤廢할 것을 주장한다.

反面에 農産物을 輸入하는 國家는 대부분의 農産物規制事項이 각국의 國內 政策目標의 추구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國內의 政治, 經濟 事情이 農産物輸入開放論을 受容하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결국 農産物의 수입개방을 주저하거나 反對하고 있다.

한국은 農業生産國이면서 동시에 농산물의 輸入國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입이 관련부문의 생산기반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波及效果를 우려하여 필요불가결한 극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農産物의 輸入을 억제하여야 하겠으나 工產品輸出과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부득이 輸入開放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만일, 자국의 農業保護論을 고수하려는 開發途上 農業生産國家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固守한다면, 예컨대 농산물의 輸入開放을 강력히 요구하는 美國등과 같이 한국의 貿易依存率이 높은 先進 輸出國과의 貿易摩擦로 인하여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큰 損失이 발생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만일 선진 수출국의 요구에 따라 農産物의 輸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려 한다면, 우선 國內農業의 유지와 發展에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韓國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의 多數交易國家와의 通商 및 外交關係가 악화되어 輸出擴大와 海外市場 多邊化政策의 실현에 차질을 빚는 등 國家經濟가 감수해야 할 不利益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韓國은 多者間協商에서 부득이 農産物의 輸出國과 輸入國의 兩面的 立場을 절충하여 受容해야 하는 中道의 位置에 있어 왔으며, 그러한 與件下에서 1986年 9月 GATT 각료회의선언 이후 推進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임하여 보다 바람직한 對應方案을 찾는 노력이 요청되어 왔다.

이 農林水産物의 輸出入政策方向에 관한 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一部로서 시도된 것이다.

## 2. 研究의 目的

이 研究의 目的은 우루과이라운드(뉴라운드)가 추진된 背景과 經緯 및

뉴라운드 展開의 본격적 시발점이된 우루과이라운드 개시선언(GATT자료 회의 선언<sup>1)</sup>)의 주요 골격등을 개관하고, 그중에서 특히 農林畜水産物(農産物, 熱帶産品 및 天然資源産品の 일부 등)의 貿易擴大 및 自由化 促進에 관한 협상의 흐름을 파악하여 비록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그러한 협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利害當事國群<sup>2)</sup>들의 立場을 고려, 앞으로 취해야 할 農業部門 輸出入政策의 기본방향과 계속되는 뉴라운드 협상에의 對應方案을 찾아 보고자 함에 있다.

### 3. 研究의 範圍와 方法

#### 가. 研究의 範圍

GATT 閣僚宣言을 통하여 제시된 우루과이라운드協商的 對象은 熱帶産品<sup>3)</sup>, 天然資源産品<sup>4)</sup>, 織物類, 農産物<sup>5)</sup>, 知的所有種 등의 商品群과 關稅,

---

1) 1986年9月 우루과이 몬타 벨 에스페이에서 개최된 GATT 第8次 貿易協商에 참석한 閣僚級代表들이 뉴라운드를 개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閣僚宣言으로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우루과이라운드)이 시작된 것이다(第5章1節 參照).

2) G-32 3Majors : 美國, EC, 日本 <先進國>

G-9 : EFTA 6國(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中小先進國 <強硬開途國>

G-20 : 韓國, 홍콩, ASEAN 5國(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자메이카, 헝가리, 자이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터키, 멕시코, 아이보리코스트, 튀니시아 <穩健開途國>

※ (G-10) : 브라질, 인도, 이집트, 나이지리아, 유고, 아르헨티나, 쿠바, 니카라과아, 페루, 탄자니아

3) 第3章2節 “農林水産物の 分類” 參照.

4) 1982年3月 페루가 '82 GATT 開僚會議 議題로 非鐵金屬問題를 提議한 이래 北區諸國이 林産物과 水産物の 交易 自由化를 추가하게 된 다음부터 非鐵金屬과 礦物, 林産物, 水産物 등을 말한다.

5) 뉴라운드協商 對象分野로서의 農産物은 農林水産物 중에서 既 논의된 熱帶産品 및 天然資源産品을 제외한 모든 1次産品을 말한다.

非關稅障壁, 緊急輸入制限措置 등과 같은 制度和 政策的措置 등 13개사항<sup>6)</sup>을 協商的 對象으로 하고있는 바, 이 研究는 그중에서 商品群으로는 農產物과 熱帶產品 등을, 그리고 이들 商品에 대한 貿易自由化 擴大措置로서는 非關稅障壁의 撤廢, 貿易自由化 歪曲의 修正方案으로서는 補助金制度 撤廢 등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考察對象으로 한다.

#### 나. 研究의 方法

- 1) 文獻調査 : GATT 營運에 관한 文獻, 其他 農產物貿易關聯 資料
- 2) 國內外 貿易關聯法規 및 國際間的 各種 協定內容 檢討 : 關稅法, 貿易管理法, 通商關係法, GATT 協定文 등
- 3) 農產物貿易관련 각종 國際會議 討議內容 分析 : GATT 總會, GATT 閣僚會議, GATT 貿易開發委員會, GATT 農產物交易委員會, GATT 우루과이라운드 商品協商會議(農產物協商그룹會議, 熱帶產品協商그룹會議), UNCTAD會議 등.

---

6) 關稅, 非關稅障壁, 熱帶產品, 天然資源產品, 纖維類, 農產物, GATT 條文, 緊急輸入制限措置(세이프가드), 多者間協定(補助金 및 相計關稅措置 包含), 紛爭解決, 知的所有權(偽造商品交易 包含), 貿易關聯投資, 서비스交易.

## 第 2 章

# 뉴라운드協商的 推進背景과 經緯 및 GATT閣僚宣言

### 1. 推進背景

뉴라운드協商이 추진되어온 주요 背景은 主要國의 經濟構造變化, 國際貿易與件의 惡化, 새로운 貿易懸案의 발생과 各國의 새로운 協商要求의 대두 등으로 集約될 수 있다.

#### 가. 主要國의 經濟構造 變化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強力해왔던 美國의 經濟力이 점차 相對적으로 弱화되기 시작하여 1970 年代初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貿易赤字가 1980 年代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고 <表 2 - 1 >, 1980 年代를 넘어서부터는

表 2 - 1 美國의 貿易赤字

單位：億 弗

| 區 分 | '80   | '82   | '83   | '84     | '85     | '86     |
|-----|-------|-------|-------|---------|---------|---------|
| 輸 出 | 2,208 | 2,123 | 2,005 | 2,179   | 2,131   | 2,173   |
| 輸 入 | 2,570 | 2,549 | 2,699 | 3,412   | 3,616   | 3,871   |
| 收 支 | - 362 | - 426 | - 694 | - 1,233 | - 1,485 | - 1,698 |

資料：美 商務省 統計.

빈 면

世界最大の 債務國으로 轉落하고 있다 <表 2 - 2 >.

특히, 1980 年代 이후 美·日間の 무역마찰은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소위 新興工業國家에게까지 과급되어 日本에 대한 報復意志의 표명과 더불어 韓國을 “第 2 的 日本”으로 인식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실은 1986 年에 시현된 美國의 對日貿易赤字(규모 : 58,575 백만달러, 비율 : 총 무역적자의 34.5 %)와 1986 年의 對韓貿易赤字增加率( 50.1 %)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表 2 - 3 > <表 2 - 4 >.

表 2 - 2 美國의 對外純資産 推移

單位：億弗

|       | 1984 | 1985  | 1986  | 1995 (예측) |
|-------|------|-------|-------|-----------|
| 純 債 權 | 300  | —     | —     | —         |
| 純 債 務 | —    | 1,075 | 2,500 | 3,198     |

資料：WEFA.

表 2 - 3 美國의 對日貿易赤字

單位：百萬弗，%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
| 美國의 全體貿易赤字規模 | 27,566   | 31,677   | 57,510   | 117,288  | 148,480  | 169,778  |
| 對日貿易赤字規模     | 15,789   | 16,778   | 19,289   | 36,796   | 49,749   | 58,575   |
| (對日貿易赤字比重)   | ( 57.2 ) | ( 53.0 ) | ( 33.5 ) | ( 31.4 ) | ( 33.5 ) | ( 34.5 ) |

資料：IMF, IFS, 1987. 3. 美商務省 統計.

表 2 - 4 美國의 10 大 貿易赤字國

單位：百萬弗

| 區 分   | 1984     | 1985     | 增 加 率  | 1986              | 增 加 率  |
|-------|----------|----------|--------|-------------------|--------|
| 日 本   | - 36,766 | - 49,749 | 35.3   | - 58,575 ( 34.5 ) | 17.7   |
| 카 나 다 | - 20,387 | - 22,176 | 8.8    | - 23,330 ( 13.7 ) | 5.2    |
| 臺 灣   | - 11,085 | - 13,061 | 17.8   | - 15,727 ( 9.3 )  | 20.4   |
| 西 獨   | - 8,726  | - 12,182 | 39.6   | - 15,568 ( 9.2 )  | 27.8   |
| 韓 國   | - 4,044  | - 4,757  | 17.6   | - 7,142 ( 4.2 )   | 50.1   |
| 伊 太 利 | - 4,129  | - 5,756  | 39.4   | - 6,473 ( 3.8 )   | 12.5   |
| 홍 콩   | - 5,837  | - 6,208  | 6.4    | - 6,444 ( 3.8 )   | 3.8    |
| 멕시코   | - 6,275  | - 5,757  | - 8.3  | - 5,168 ( 3.0 )   | - 10.3 |
| 英 國   | - 2,834  | - 4,300  | 51.7   | - 4,614 ( 2.7 )   | - 7.3  |
| 브 라 질 | - 5,633  | - 5,007  | - 11.1 | - 3,400 ( 2.0 )   | - 32.1 |

( ) 內의 數値는 美國의 總貿易赤字에 대한 比重임.

資料：美 商務省 統計.

反面에 日本經濟는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産業競爭力을 강화하고 美國 등을 비롯한 世界市場을 석권함으로써 世界 最大의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하였다 (1985년에 460억달러).

EC 經濟는 老齡化段階에 처하여 있어 특히, 製造業分野가 活力을 상실하고, 成長의 정체에 따르는 失業率은 1986年末 現在 11% 水準을 기록한 바 있다.

韓國은 그동안 저렴한 勞動力을 이용, 輸出指向의 産業化를 추구함으로써 高度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先進國市場에의 接近에 努力하고 있다.

#### 나. 國際貿易與件의 惡化

##### ① 新保護主義의 蔓延

대부분의 국가 특히, 美國 등 先進國은 自國의 産業保護를 위하여 종래에 주로 사용하여온 關稅나 數量制限 등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도 輸出自律規制 (VER)<sup>1)</sup>, 市場秩序維持協定 (OMA)<sup>2)</sup>, 덤핑防止關稅 및 相計關稅의 賦課 등 다양한 非關稅障壁을 남용함으로써 세계적인 貿易與件을 점점 惡化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灰色規制措置는 특정국가간의 동등한 機會提供이라는 협의의 相互主義 내지 雙務主義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GATT를 중심으로한 多國間 貿易體制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 1) 國際貿易에서 輸出入規制의 無差別適用의 難點을 회피하여, GATT테두리 밖에서 輸入國이 特定產品의 市場攪亂의 원인이 되는 輸出國에게만 양국간 協定에 의하여 輸出을 自律적으로 規制토록 요구하는 조치이다. 輸出自律規制協定 (Voluntary Export Restraint)은 GATT規定上 不法인 것이지만, 지난 50年代 말부터 綿織物分野에서부터 輸出入國間에 이런 類의 協定이 만연되어 오고있다. 이는 灰色地帶措置의 典型的 形態이다.
- 2) 輸出自律規制 (VER)와 더불어 輸入數量制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灰色地帶措置의 一種으로써, 美國이 纖維類 이외의 品目에 대하여 실시한 輸出國別 선별적인 雙務的 輸入規制措置協定の 形態를 취하고 있으나 GATT의 無差別待遇原則에는 위배되는 것인데 앞으로 각국은 이것을 輸入規制의 方便으로 濫用할 우려가 있다. (但, 美國의 1954 通商法 201 ~ 203 條 등에서 規定하고 있는 OMA는 GATT 13條에 부합하므로 適法한 것으로 보고있다.)

## ② GATT 機能의 弱화

최근에 와서 각국이 취하고 있는 保護貿易主義의 수단으로써 非關稅障壁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GATT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萎縮되고 있으며, 아울러 GATT가 管轄할 貿易關聯措置의 범위는 縮小되고 있다. 예컨대 GATT의 기본원칙인 最惠國待遇原則(MFN<sup>3)</sup>: Most-Favored Nation)은 多者間貿易體制의 核心이 되는 부분임에도 農產物貿易, 纖維類交易, 關稅同盟, 自由貿易協定, 開途國優待條項 등의 분야에서는 이 原則이 사실상 유보되고 있다.

## ③ GATT 機能의 制約性

GATT의 기존체제만으로는 최근에 와서 先進國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 投資, 尖端技術商品 등 새로운 세계무역문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能力에 限界性이 있다.

### 다. 國際貿易上 새로운 問題의 發生

#### ① 서비스 부문에 관한 國際交易規範의 不在

OECD에서 이미 서비스부문의 交易自由化 問題를 제기한 이래 UNCTAD, IBRD 등에서 이 문제를 계속 조사, 검토하고 있으나 一般商品貿易과 달리 客觀的인 關稅評價가 어려워 명확한 規範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은 서비스부문의 무역에 대하여 關稅障壁이 없는 대신 다양한 非關稅障壁이 만연할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

3) GATT의 基本原則의 하나로 通商, 關稅 등의 2國間關係에 있어서 第3國에 賦與하고 있는 諸條件보다도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해야한다는 原則.

GATT 加入國에게는 이 원칙이 自動的으로 적용되며, 第3國과 보다 有利한 最惠國待遇關係를 맺으면 그 效力은 다른 最惠國待遇國에도 적용이 된다. 또한 輸入制限과 같이 不利益을 초래하는 措置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無差別適用原則(Non-Discriminatory)이라고도 한다.

## ② 先進開途國에 대한 一般特惠關稅制度 (GSP)의 卒業概念 (Graduation Concept) 적용문제

先進國은 先發開途國에 대하여 발전의 정도에 따라 關稅上 特惠의 幅을 줄이고 市場開放 등 GATT 體制上의 의무를 종전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主張이 擡頭되고 있다.<sup>4)</sup>

## ③ 農產物交易自由化에 대한 강력한 요구

종래에는 農產物交易이 一般商品과는 달리 GATT의 規範上 그 開放與否를 구속받지 않았으나, 최근에 와서 農產物 輸出國을 중심으로한 일부 國家群에서 農產物交易도 GATT 등과 같은 國際貿易秩序속에 吸收되어 自由化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sup>5)</sup>

## 라. 各國의 새로운 貿易協商 欲求

최근 수년동안에 世界最大의 債務國이 되고있는 美國은 계속되는 國際收支의 惡化現象을 改善하기 위하여 自國의 比較優位分野인 서비스, 무역 관련 直接投資, 知的所有權 등 새로운 商品의 交易등을 GATT 體制內에 수용하여 市場을 開放케 할 것과 農產物交易도 自由化 할것을 協商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으며, EC는 開途國에 대한 市場開放을 요구하면서 日本과의 貿易收支를 改善코자 協商의 추진을 시도하여 왔다.

日本은 自國貿易黑字에 대한 각국으로 부터의 多角的인 市場開放壓力和 自國輸出規制에 대한 外國의 抗議에의 무마책을 多者間 貿易協商을 통하여 摸索하려 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및 其他 農產物輸出開途國은 GATT에서 지금까지 例外

4) 韓國은 先發開途國으로서 이미 GSP 제의 對象國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EC는 1987 年에 韓國產 纖維類와 自動車, 타이어 등 18개品目에 대하여 1988 年부터 GSP 受惠對象에서 제외키로 결정한바 있다.

5) 美國, 호주, 뉴질랜드 및 기타 일부開途國 등 農產物輸出國은 農產物도 他產品과 같이 交易自由化 할 것을 주장하고, 반면 EC, 日本, 韓國 등 農產物輸入國은 農產物의 交易自由化에 대하여 異見과 문제를 제기하는立場이다.

로 인정하여 온 農産物의 交易도 自由化를 協商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며, 韓國 등 先進開途國은 오히려 GATT 원칙에 위배되는 先進國들의 輸入規制措置와 雙務的인 市場開放壓力을 多者間協商에서 해결코자 하고 있다.

## 2. 뉴라운드協商的 推進經緯

### 가. 美國에 의한 南北貿易協商<sup>6)</sup> 推進

1981年 10月, 美國 레이건大統領은 世界 22個國이 參加한 「칸쿤」 南北頂上會談에서 各국이 相互市場開放을 통하여 國際貿易을 증대시킬것을 주장 함.

1982年 4月 제네바駐在 美國 通商代表部는 1986年以後 先發開途國에 대하여 GSP를 終了하고, 그 대신에 先發開途國에 대하여 LDC (Less Developed Countries) 稅率<sup>7)</sup>을 新設할 것을 提議함.

1982年 5月, 제네바駐在 美國 通商代表部는 開途國의 輸入市場開放을 위하여 GATT內에서 南北貿易協商을 개최하고자 提議함.

1982年 9月, 美國의 通商代表部 大使가 韓國, 싱가포르, 홍콩 등을 방문하여 南北貿易協商 개최에 관한 美國側立場을 설명하면서 各국의 支持를 촉구함.

6)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GSP 稅率 適用問題(卒業概念適用)를 論議의 主對象으로 하는 關稅協商 위주의 小規模 貿易協商으로서, 美國은 1981年 이후 “New North-South Negotiations on Market Access”, 또는 “New Round of Negotiations among Developed & Developing Countries” 등으로 主唱해 왔다.

7) 1982 GATT 閣僚會議時 GSP 稅率의 非劃一性和 不豫測性을 改善하고, 先發開途國에 대한 卒業概念 적용 등을 위하여 美國이 構想한 最低開發國 적용 稅率을 지칭. LDC 稅率은 GSP 對象品目과 例外品目に 대하여 LDC 稅率이 GSP 稅率과 같아지는 경우는 모든 開途國에, GSP 例外品目の 경우는 先發開途國에만, GSP 品目の 경우는 制限規定을 초과하는 모든 品目に, 그리고 GSP 品目이기는 하나 卒業概念에 의하여 全體 또는 部分的으로 受惠가 철회된 品目 등에 대하여 각각 LDC 稅率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1982年10月, GATT閣僚會議準備委員會에서 美國과 스위스가 南北貿易協商을 公式的으로 제의함. 그러나 同年 11月, GATT閣僚會議時 美國의 南北貿易協商提議에 대한 開途國의 反對意思가 강경해지자, 美國의 다른 關心事인 서비스의 交易自由化를 추진하기 위하여 결국 南北貿易協商에 對한 自國의 강경 입장을 철회함.

1983年3月, 美國은 南北貿易協商의 필요성을 다시 GATT에서 거론하고, GATT事務局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施行方法을 검토하고자 提議함.

1983年4月, 부루셀에서 개최된 윌리암스버그 經濟頂上會議 준비를 위한 先進國貿易相會議에서 미국은 南北貿易協商에 대한 先進各國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1983年5월의 윌리암스버그 經濟頂上會議에서 參加國들은 앞으로 南北貿易協商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합의함.

#### 나. 日本에 의한 뉴라운드協商 提議

1983年11月, 나카소네 日本首相의 새로운 多者間貿易協商 제의에 대한 美國側의 同意形式으로, 美日頂上會議을 개최하여 新多者間貿易協商을 추진하는데 兩國間 協力の 必要性을 인정함.

1983年11月, GATT第39次總會에서 日本代表가 뉴라운드協商 推進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開途國과 EC는 지극히 소극적인 反應을 나타냄.

1983年11月, 호주의 Hawke首相이 뉴라운드開催에 대비하여 아시아 太平洋地域 國家間에 사전 協力方案을 강구기로 합의하였으며, 1983年12月에는 美日高位實務會議에서 뉴라운드開始 時期를 1985年11월의 GATT總會時로 하기로 합의함.

1983年12月, 美國과 캐나다 등 국가는 서비스交易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報告書를 통하여 GATT에 제시함.

1983年12月, 美國과 日本이 뉴라운드의 필요성을 설득코자 國別接觸을 시작함(1984年1月에는 日本外相補佐官이 韓國을 訪問한바 있고, 1984年2월에는 韓美經濟協議會에서 뉴라운드개시 문제를 논의함).

#### 다. 뉴라운드 開始를 위한 國別協議

1984年3月, 日本外務省은 뉴라운드協商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함(韓國 등 8個國과 GATT 등이 參加하였으나 開途國은 소극적 반응을 나타냄).

1984年4月, 서울국제무역회의에서는 韓國 등 14個國家와 GATT의 貿易擔當閣僚들이 뉴라운드협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을 표시함(단, EC와 開途國은 協商的 초기개시를 우려함).

1984年4月, 뉴라운드開催에 대한 호주안을 檢討기 위하여 한국 등 10개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高位實務者會議를 개최하고, ASEAN 국가 代表들은 Work Programme<sup>8)</sup> 등 기존의 현안문제를 선결안건으로 중시함.

1984年5月, 美國 등 13개국과 GATT, IMF, EC 등으로 구성된 워싱턴 무역장관 非公式會議를 개최하고 뉴라운드協商的 필요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합의함.

1984年5月, GATT의 개도국그룹은 뉴라운드開催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Work Programme의 선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文書를 채택함(GATT 特別理事會에 提出).

1984年5月, OECD 閣僚會議는 뉴라운드의 조속한 준비를 하자는데에 합의하였는바, 그중 일본은 1985年中에 준비를 완료하여 1986년에는 뉴라운드協商을 개시하자는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EC는 開途國 등의 反對를 이유로하여 뉴라운드協商的 초기개시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1984年6月, 서방선진국 經濟頂上會議(London Summit)에서는 5월의 OECD 閣僚會議에서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Work Programme 등 기존의 貿易自由化計劃을 조속히 완료하자는데에 합의함.

---

8) 1982年11月 GATT 閣僚會議에서 貿易의 增大 및 貿易自由化 擴大를 위하여 向後 實踐事業으로 採擇한 國際貿易上의 懸案問題로서 그 主要議題는 緊急輸入制限(GATT 第19條), 開途國貿易, 紛爭解決節次, 農産物貿易, 熱帶産品, 數量規制 및 非關稅措置, 關稅, 東京 MTN 協定 擴大, 産業構造調整, 偽造商品貿易, 國內販禁品の 輸出禁止, 資本財 輸出信用, 纖維類交易, 特定天然資源의 貿易問題, 換率變動, 二重價格 및 原産地規定, 서비스交易 등 17個 項目이다.

1984年6月, 美國, 日本, EC, 캐나다 등 4개국 非公式貿易閣僚會議에서는 12개월이내에 뉴라운드협상 개최의 時期와 議題를 결정하고, 초기 개시를 위한 開途國 說得作業에 들어가기로 합의함 (미국과 캐나다는 中南美諸國에, 日本은 아시아 제국에, 그리고 EC는 아프리카제국 등에 各各 설득하기 시작함).

#### 라. 뉴라운드協商 開始에 관한 公式合議

1984年11月, GATT 제 40 차총회에서 뉴라운드 討議를 위한 GATT特別總會를 개최기로 결정함.

1985年10.14 ~ 11.1, GATT 제 41 차총회에서 뉴라운드협상을 위한 準備委員會를 설치하고, 1986年9월에 뉴라운드개시를 위한 GATT 閣僚會議를 개최기로 결정함.

1986.1 ~ 7月, 뉴라운드協商準備委員會를 개최하여 GATT 閣僚宣言의 草案을 검토하고, 同年9월에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뉴라운드개시를 위한 閣僚會議를 개최, GATT 閣僚宣言을 채택함.

### 3. GATT 閣僚宣言

GATT는 전술한바와 같은 背景과 經緯로 뉴라운드協商을 위한 特別總會(1986.9.15 ~ 9.20)를 열고 총 92개 GATT會員國中 74개국과 15개 옵서버國 및 21개 國際機構 등에서 1,323名이 參席한 가운데 前文을 비롯하여 商品交易에 관한 協商(第1部)과 서비스交易에 관한 協商(第2部)을 골격으로한 宣言을 하였다.

## ▣ 閣僚宣言의 主要骨格

### ① 宣言文 採擇過程

GATT 閣僚宣言文은 1986. 9. 20 오전에 G-47 그룹 및 全體 首席代表會議의 同意를 받아 같은날 오후(1:15 ~ 2:45)에 개최된 總會 및 閣僚會議에서 다음의 3段階로 採擇되었다.

第1段階: GATT 總會가 閣僚宣言 第1部(part I: 商品交易에 관한 協商)를 채택하고,

第2段階: GATT 總會參席을 目的으로 모인 閣僚들이 GATT 總會가 개최되는 機會에 總會와는 별도로 會晤를 갖고 第2部(part II: 서비스交易에 관한 協商)를 채택하였으며,

第3段階: GATT 總會에 참석한 閣僚들이 總會와는 별도로 “우루과이라운드” 開始宣言을 채택하였다.

### ② 宣言文의 構成

#### ○ 前 文

#### ○ 第1部: 商品交易에 대한 協商

##### 一 目 的

##### 一 協商을 위한 一般原則

##### 一 保護主義措置의 凍結과 撤廢

##### • 凍 結

##### • 撤 廢

##### • 凍結과 撤廢의 監視

##### 一 協商의 主題

##### • 關 稅

##### • 熱帶產品

##### • 天然資源產品

##### • 纖維類

##### • 農產物

- GATT 條文
- 緊急輸入制限措置
- 多者間貿易協商(MTN) 協定
- 補助金 및 相計關稅
- 紛爭解決
- 偽造商品交易을 포함한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側面( Trade - related aspects )
- 貿易關聯 投資措置
- GATT 體制의 機能
- 參 加
- 協商機構
- 第 2 部 : 서비스交易에 대한 協商
- 第 1 部 및 第 2 部の 協商結果의 履行

### ③ 宣言文 採擇에 관련된 主要 討議內容

#### 가) 서비스協商問題

GATT의 權限을 확대하여 뉴라운드協商에 서비스 등 新分野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미국, EC 등 선진국(韓國포함 온건개도국 동조)의 주장과, 서비스 등에 대한 GATT의 權能을 부인하고 그것을 협상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強硬開途國의 주장이 계속 대립되어 오다가 先進, 強硬開途國間의 막후접촉을 통해 서비스교역을 뉴라운드협상에는 포함하되, 상품교역과는 달리 GATT 밖에서 별도로 협상한다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 나) 農產物 問題

미국, 호주, 알제틴 등 非補助 農產物輸出國들은 지금까지 GATT規律의 예외로 인정되어 온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주장하고 특히, EC의 共同農業政策을 거냥하여 수출보조금의 時限內 철폐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주장하는 반면, EC(특히 불란서)는 補助金問題 등 특정문제에 중점을 둘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를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조금철폐

제 時限에는 언급을 하지않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타협이 이루어 졌다.

다) 實質的 交易惠擇上의 균형문제

EC는 일본의 市場開放을 목표로 실질적 교역혜택상의 균형 ( balance of benefits)의 원칙을 閣僚宣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 한국 등의 강력한 반대(無差別 原則위배)에 직면해 반영되지 못하였다.

라) 知的所有權, 貿易關聯 投資問題

強硬開途國은 GATT가 동 분야를 취급할 권능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의 협상대상에의 포함을 반대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과의 타협이 이루어져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마) 貿易과 금융간의 連繫問題

아프리카 및 中南美 국가들은 1次產品 가격하락 및 外債累増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협상 의제로는 포함되지 못하고 閣僚宣言 序文 및 目的에만 언급되었다.

### 第 3 章

## 뉴라운드 協商體系와 農業貿易 關聯 GATT 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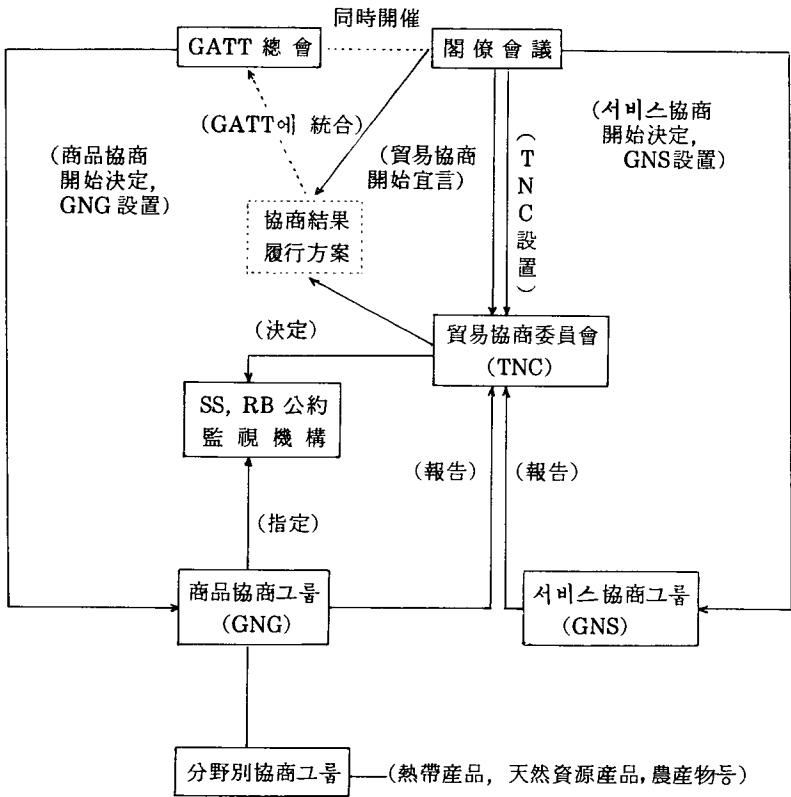
### 1. 協商體系

1986 年 9 月の GATT 閣僚宣言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로 公式命名된 뉴라운드(多者間貿易協商)는 同 宣言에 의거 貿易協商委員會(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設置하고, 商品交易協商(閣僚宣言第 I 部)과 서비스交易協商(閣僚宣言第 II 部)을 分離하여 二元的 協商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圖 3-1>에 나타난 바와같이 商品交易에 관한 協商은 GATT 總會의 결정으로 GATT 體制內에서 이루어지며, 協商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商品協商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 GNG)을 설치 運營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商品協商그룹(GNG)과 서비스協商그룹(GNS)에서 이루어진 協商의 결과는 각각 貿易協商委員會(TNC)에 報告토록 함으로써 GATT 內의 商品그룹과 GATT 外郭의 서비스협상그룹을 間接적으로 연결짓고 있으며, 상품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 등의 協商結果의 履行은 GATT 閣

圖 3-1 뉴라운드 協商體系



僚會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GATT 외곽(서비스협상그룹)에서의 협상결과도 GATT 内部로 吸收 統合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 2. 農林水産物의 分類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서 거론되는 農林水産物을 GATT 貿易 및 開發委員會의 分類方式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農林水産物은 農産物과 熱帶產品 및 天然資源產品의 일부(林産物과

水產物)로서 구성되며, 農產物은 그중에서 熱帶產品과 天然資源產品을 제외한 全品目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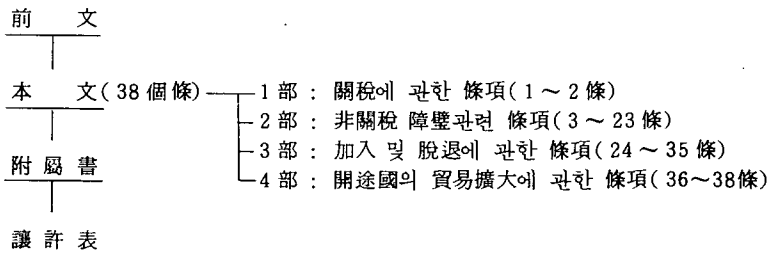
熱帶產品은, 熱帶飲料類(커피, 홍차, 코코아 등), 양념류, 花卉 및 기타 植物類, 種實類와 植物性기름類, 담배, 쌀, 기타 熱帶植物의 뿌리類, 熱帶果實類와 堅果類, 열대木材와 고무류, 黃麻와 硬性섬유류 등 7個產品群으로 分類하고, 天然資源產品은 林產物과 水產物을 포함한다. 그러나 GATT 貿易開發委員會에서의 이러한 分類에 관하여 EC는 우루과이라운드 第2次 農產物協商그룹會議에서 異見을 제시하고, 農產物을 穀類, 果實과 菜蔬, 油脂類, 酪農品, 쌀, 설탕, 肉類, 酒類 등으로 分類할 것을 主張한 바 있다.

### 3. GATT 協定文의 構成과 農業貿易 關聯條項

#### 가. GATT 協定文의 構成

GATT 協定文은 38 個條의 協定本文과 附屬書(Annex A, B, C, D, E, F, G, H) 및 讓許稅率表로 構成되어 있으며, 本文 38 個條는 <圖 3-2>와 같이 1部(關稅에 관한 條項), 2部(非關稅障壁 관련 條項), 3部(加入 및 脫退에 관한 條項) 및 4部(開途國의 貿易擴大에 관한 條項)등으로 나누어 진다.

圖 3-2 GATT 協定文의 構成



## 나. GATT의 農業貿易 關聯條項

### ① 農產物貿易 關聯 固有의 條項

가) GATT 第 11條 2項(數量制限의 一般的 禁止)

GATT 協定文中 農產物貿易과 관련된 固有의 條項으로는 우선 GATT 第 11條 2項의 a와 c節을 들 수 있다.

즉, 同 11條 2項의 a에서는, 食料品과 기타 輸出入締約國에 不可缺한 產品(products)의 극심한 不足을 방지하거나 完化하기 위해서 輸出을 일시적으로 禁止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同條 2項의 c에서는, 國內農產物의 價格下落을 방지하거나 필요할때 政府가 당해 農產物의 輸入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GATT의 貿易關聯條項중 數量制限禁止의 原則(第 12條의, 第 1.2項 등)의 例外條項으로서 農產物의 貿易을 GATT 體制內에 끌어들여 세계 農產物貿易을 自由化하려는 뉴라운드협상의 基本原則에 어긋난다는 主張이 나올 수 있는 條項이다.

나) GATT 第 20條(一般的 例外)

國際貿易에 대한 偽裝된 制限措置도 使用되지 않는 한, 人間과 動植物의 生命이나 健康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輸入을 制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數量制限禁止原則에 대한 例外條項으로서 農產物의 경우, 生命과 健康 등의 保護維持上 輸入을 禁止하거나 제한 할 수 있음을 示唆하며, 구체적으로 動植物檢疫, 食品衛生法適用 등이 있으나, 그 적용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성 때문에 紛爭의 여지가 있다.

다) GATT 第 16條(補助金)

GATT 第 16條에서는, 締約國이 輸出入에 영향을 미치는 補助金의 支給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一般補助金의 경우는 그것을 締約國團에게 그 사실 등을 報告할 의무를 부여하고(第 16條 1項), 輸出補助金의 경우는 그것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第 16條 2項).

그러나 輸出補助金중에서도 1次產品(農產物 등)에는 그 規制의 정도를 完化하고 있는 바, 「締約國이 自國領域으로부터 1次農產品輸出을 증가

시키는 어떤 형태의 補助金を 직접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과거의 代表的인 기간동안 當該產品의 世界輸出額中 自國產의 占有率이 同產品의 세계 총수출에서 自國이 차지해야 할 公正한 占有率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이 있다(第 16 條 3 項) .

이 경우, 補助金의 性格과 範圍, 公正한 占有率(equitable share of world export trade) 등에 관한 細部規則 등이 不明確하여 紛爭의 소지가 있다.

라) GATT 第 36 條 4 項(開途國 1 次產品의 世界市場 改善)

대부분의 開途締約國이 한정된 1 次產品輸出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1 次產品을 보다 有利한 條件으로 세계시장에 進出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最大限의 조치를 취하고 이들 1 次產品에 대한 세계시장조건을 개선함으로써 世界貿易을 擴大하고, 輸出所得을 增大시켜야 한다.

마) GATT 第 37 條 1 項(開途國 關心品目 輸入障壁 撤廢)

첫째, 先進締約國은 開途國의 輸出商品이나 輸出關心品目에 대한 貿易障壁를 緩和 내지 撤廢하고, 둘째, 開途締約國이 生産하는 1 次產品(원료 및 加工品)의 消費増大를 沮害하는 國內 財政措置의 新規採擇을 억제하며 기존조치를 완화 내지 철폐하여야 한다.

## ② 기타 農産物貿易과 관련이 있는 主要條項

가) GATT 第 3 條의 2 項(國內產品 保護를 위한 輸入課徵金 賦課 規制)

締約國의 產品이 다른 相對締約國의 영역내에 輸入되는 경우 相對締約國은 國內產品保護를 目的으로 同種의 內國產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內國稅나 기타 모든 課徵金의 한도를 초과하는 內國稅 및 기타의 內國課徵金을 직접 간접으로 賦課하여서는 안된다.

나) GATT 第 6 條 6 項(덤핑防止關稅와 相計關稅賦課의 規制)

첫째, 締約國은 다른 締約國의 덤핑이나 補助金의 영향이 경우에 따라서 自國의 기존 國內産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自國 國內産業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를 제

의하고는 他締約國領域의 產品輸入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相計關稅를 賦課해서는 안된다.

둘째, 締約國團은 輸入締約國이 自國領域에 관련產品을 輸出하는 第3의 締約國產業에 실질적인 被害를 주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던 덤핑이나 補助金交付 등을 相殺하기 위하여 특정산품의 輸入에 대하여 反덤핑관세나 相計關稅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다) GATT 第11條 1項(數量制限의 一般的 禁止)

締約國은 다른 締約國領域產品의 輸入, 다른 締約國領域에 대한 產品의 輸出 또는 수출을 위한 販賣와 관련하여 割當制나 輸入許可制 또는 其他措置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關稅, 기타 租稅 및 課徵金을 제외한 禁止나 制限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GATT 第12條 1, 2項(國際收支保護를 위한 制限 및 例外)

締約國은 第11條 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自國의 對外狀況改善 및 國際收支의 保護를 위하여 輸入許可產品의 數量이나 價格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數量이나 價格 등에 의한 輸入制限은,

첫째, 自國 通貨準備의 현저한 減少를 저지하거나 급박한 감소위험을 豫防하기 위한 目的

둘째, 通貨準備가 극히 낮은 締約國의 경우 同 通貨準備의 合理的인 증가율을 達成시키기 위한 目的 등에 필요한 限度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GATT 第17條 1項 및 2項(國營貿易에 대한 無差別待遇의 原則적용)

각 締約國은 소재지여하를 불문하고 國營企業을 設立 또는 維持하거나, 어떤 企業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권한을 公式的으로 事實上 부여하는 경우 本 協定에서 규정한 無差別待遇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方法을 적용하여야 한다(1項 a).

그러나 이 규정은 再販賣 또는 販賣用物品의 生産에 사용되지 않고 政府가 직접 또는 最終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產品의 輸入에 대하여는 적용치 않는다(2項).

바) GATT 第19條 1項(特定產品의 輸入에 대한 緊急措置)

첫째, 締約國은 豫測하지 못한 事態의 진전과 本 協定에 의하여 締約國

이 부담하는 義務(關稅讓許 등 포함)를 이행한 결과, 어느 產品이 自國의 同種產品 또는 직접적 경쟁산품의 國內生産業者에 重大한 損害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數量과 狀況에 있어서) 輸入되고 있을때는 同締約國은 同產品에 대한 損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앞의 義務를 停止하거나 讓許 등을 철회 또는 修正할 수 있다 (1項 a).

둘째, 特惠讓許의 對象產品이 締約國의 영역內에서 앞의 a項에 규정된 상황下에 輸入된 결과 同特惠를 받거나 받아온 다른 締約國의 同種產品 또는 직접적 競爭產品의 國內生産者에 대하여 중대한 損害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輸入締約國은 앞의 他締約國의 요청이 있을때 當該產品에 대하여 同 손해를 防止 또는 구제하는데에 필요한 限度 및 期間동안 當該義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하거나 讓許를 철회 또는 修正할 수 있다 (1項 b).

### ③ 農産物貿易과 관련이 있는 一般條項

#### 가) GATT 第1條 1項(一般的 最惠國待遇)

輸出入에 대하여 그리고 輸出入과 관련하여 賦課되거나 輸出入代金の 國제간의 移替에 부과하는 關稅 및 기타 課徵金の 徵收方法, 輸出入과 관련된 모든 規則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한 締約國이 他國의 原產品이나 他國에 積送되는 產品에 대하여 부여하는 便宜, 好意, 特典, 免除 등을 다른 모든 締約國의 同種原產品 및 同國家에 積送되는 同種產品에 대해서도 即時, 無條件으로 賦與되어야 한다.

#### 나) GATT 第2條 1項(讓許表)

各 締約國은 他締約國과의 통상에 있어서 本協定에 부속된 해당 讓許表의 해당부분에 규정된것 보다 不利한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項 a).

만일 一方締約國이 어느 產品에 대하여 本協定 附屬 讓許表에 의하여 받아야 할 待遇를 相對締約國으로부터 못받을 때는 직접 相對締約國에 注意를 환기시켜야 한다 (5項).

#### 다) GATT 第3條 2項(內國稅에 관한 內國民待遇)

한 締約國의 產品이 다른 相對締約國의 領域內에 輸入되는 경우 相對締

約國은 同種의 內國產品에 직접, 간접으로 부과하는 內國稅 또는 기타 모든 課徵金의 限度를 초과하는 內國稅 및 기타 內國稅課徵金을 직접,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라) GATT 第8條 1項(輸出入에 관한 手數料)

성질여하에 불문하고 締約國이 輸入, 輸出 또는 이와 關聯하여 부과하는 모든 手數料와 課徵金(輸入稅, 輸出稅, 기타租稅 등)은 제공된 用役의 概算費用에 그 額數를 限定시켜야 하며, 國內產品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財政上의 目的을 위하여 부과되어서는 안된다(1項 a).

마) GATT 第9條 1項 및 2項(原產地 表示)

각 締約國은 產品表示要件에 관하여 다른 一方 締約國領域의 產品에 대하여 第3國의 同種產品에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1項).

각 締約國은 原產地表示에 관한 法規를 제정, 실시함에 있어서 허위의 표시나 오해의 우려가 있는 表示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는 동시에 同法規가 輸出國의 商業과 產業에 미칠 곤란과 불편을 最小化해야 한다.

바) GATT 第10條 1項과 2項(貿易規則의 公表와 施行)

締約國의 유효한 法規와 行政規則으로서 關稅上의 目的을 위한 產品의 分類와 評價, 關稅率, 租稅와 기타 課徵金, 輸出入과 그 代金決濟要件 등에 관련된 것과 產品의 販賣, 分配, 輸送, 保險, 倉庫保管, 檢査, 展示, 加工 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른 國家와 貿易業者가 잘 알 수 있는 方法으로 신속히 公표되어야 한다(1項).

한편 締約國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로서 확립된 慣行에 따라 輸入에 부과되는 關稅와 기타 課徵金을 증가하거나 輸入과 代金決濟에 대한 새로운 制限이나 禁止를 하는것은 이들 措置의 公式의인 公表 이후에만 可能하다.

사) GATT 第13條 1項 및 2項(數量制限의 無差別 適用)

締約國은 다른 締約國領域產品의 輸入 또는 다른 締約國領域에로의 產品輸出에 대하여 第3國으로부터의 同種產品의 輸入 또는 모든 第3國에

대한 同種產品의 輸出이 類似하게 禁止되거나 制限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禁止나 制限도 할 수 없다 (1 項).

한편, 締約國은 輸入을 制限함에 있어서 各 締約國이 차지할 수 있는 世界市場占有率이 同制限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가급적 類似하도록 同產品의 貿易量을 分配케 하여야 한다 (2 項).

아) GATT 第 14 條 2 項(無差別待遇에 대한 例外)

國際收支의 保護를 위한 制限(第 12 條)과 經濟開發에 대한 政府의 援助 등에 關連하여 輸入을 制限하는 締約國은 自國의 對外貿易을 規制함으로써 當該 締約國 또는 일부의 關聯締約國이 받는 利益이 다른 一部の 締約國에 주는 損害보다 실질적으로 클 경우에는 締約國團의 同意를 얻어 일시적으로 無差別待遇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자) GATT 第 15 條 1 項(外換協約)

締約國團은 IMF의 權限下에 있는 外換問題와 締約國團의 權限下에 있는 數量制限 및 기타 貿易上の 措置에 關하여 相互政策的 調整을 할 수 있도록 IMF와 協力하여야 한다.

차) GATT 第 18 條 7 項 및 9 項(經濟開發에 대한 政府援助)

經濟狀態가 오직 低生活水準에 있고 開發의 初期段階에 있는 締約國이 自國民의 일반 生活水準을 향상시킬 目的으로 特定産業을 촉진코자 本協定上의 當該讓許表를 修正 또는 철회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同締約國은 그 취지를 締約國團에 통고하여야 하며 利害關係에 있는 締約國과 協議하여야 한다 (7 項 a).

한편, 經濟狀態가 低生活水準에 있고, 開發의 初期段階에 있는 締約國은 自國의 財政狀態를 改善하고 經濟開發計劃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一定規定의 범위내 (18 條 10, 11, 12 項)에서 輸入許可產品의 數量이나 價格을 제한함으로써 전반적인 輸入水準을 통제할 수 있다 (9 項).

表 3-1 GATT의 農業貿易 關聯條項

| 農産物 貿易關聯 固有의 條項 |                      | 其他 農産物貿易과 關聯이 있는 主要條項 |                            | 農産物 貿易과 關聯이 있는 一般 條項 |                  |
|-----------------|----------------------|-----------------------|----------------------------|----------------------|------------------|
| 第 11 條 2 項      | • 數量制限의 一般的 禁止       | 第 3 條 2 項             | • 國內產品 保護를 위한 輸入課徵金 賦課의 規制 | 第 1 條 1 項            | • 一般的 最惠國 待遇     |
| 第 20 條          | • 一般的 例外             |                       |                            | 第 2 條 1 項            | • 讓許表            |
| 第 16 條          | • 補助金                | 第 6 條 6 項             | • 덤핑防止關稅, 相計關稅 賦課의 規制      | 第 3 條 2 項            | • 內國稅에 관한 內國民 待遇 |
| 第 36 條 4 項      | • 開途國 1 次產品의 世界 市場改善 | 第 11 條 1 項            | • 數量制限의 一般的 禁止             | 第 8 條 1 項            | • 輸出入에 관한 手數料    |
| 第 37 條 1 項      | • 開途國 關心品目 輸入障壁 撤廢   | 第 12 條 1,2 項          | • 國際收支 保護를 위한 制限 및 例外      | 第 9 條 1,2 項          | • 原產地 表示         |
|                 |                      | 第 17 條 1,2 項          | • 國營貿易에 대한 無差別 待遇의 原則적 適用  | 第 10 條 1,2 項         | • 貿易規制의 公表와 施行   |
|                 |                      | 第 19 條 1 項            | • 特定產品의 輸入에 대한 緊急措置        | 第 13 條 1,2 項         | • 數量制限의 無差別 適用   |
|                 |                      |                       |                            | 第 14 條 2 項           | • 無差別 待遇에 대한 例外  |
|                 |                      |                       |                            | 第 15 條 1 項           | • 外換協約           |
|                 |                      |                       |                            | 第 17 條 7,9 項         | • 經濟開發에 대한 政府援助  |

## 第 4 章

# 農業貿易關聯 國際討議의 뉴라운드 接近

뉴라운드는 GATT 를 中心으로한 딜론라운드<sup>1)</sup>, 케네디라운드<sup>2)</sup>, 도코라운드<sup>3)</sup>,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이어지는 國家間 單一協議體制를 통한 協商의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推進되고 있다.

- 
- 1) 1960年 5月부터 1961年 7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 의 第 5 次에 해당하는 多國間 自由貿易協商이다. 당시 케네디 行政府의 國務次官이었던 Douglas Dillon 氏가 제창하여 開始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서 命名된 協商으로, 23 個國이 參加하였으며, 新讓許品目은 4400 개이다.
  - 2) 1963年 5月부터 1967年 6月까지 제네바 등에서 개최되었던 GATT 의 第 6 次에 해당하는 多國間 自由貿易協商이다. 케네디大統領의 제창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工產品關稅率 平均 35 %引下, 反덤핑코드制定(동경라운드로서 改正), 國際 小麥協定 등의 業績을 남겼는데 56 個國이 參加하였으며, 新讓許品目은 30,000 個이다.
  - 3) 1973年 9月부터 1979年 6月까지 제네바 등에서 개최되었던 GATT 의 第 7 次에 해당하는 多國間 自由貿易協商이다. 도코라운드에서는 과거에 개최되었던 6차례의 貿易協商과는 달리 關稅뿐 아니라 非關稅障壁의 自由化도 주요 協商對象으로 다루어졌고, 그 結果 工產品의 關稅率을 '87 年까지 平均 33 %로 引下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反덤핑, 相計關稅, 技術障壁, 政府購買 등과 같은 非關稅分野에서도 協約 또는 協定을 締結하는 成果를 거두었는바, 99 個國이 參加하였으며, 新讓許品目이 27,000 個이다.

그러나 農業貿易과 關聯한 세계적인 協商은 그보다 훨씬 多樣的 側面에서, 예컨대 UNCTAD, OECD, FAO, GATT 등 主要國際機構 自體內에서도 農產物貿易의 擴大와 自由化問題를 協議, 檢討하여 직접 간접으로 뉴라운드協商에 영향을 주고 있다.

## 1. UNCTAD

### 가. 農產物貿易에 관한 討議의 推移

UNCTAD는 1964年 1次總會를 개최하여 1次產品委員會를 설치, 1次產品 輸入目標을 설정하고, 國際商品協定을 締結하는 등 1次產品의 輸出問題를 중요한 議題로 다루었는데 특히, 開途國이 輸出하는 1次產品에 대한 新規關稅賦課禁止(stand still)와 貿易障壁의 撤廢(Rollback)등을 강조하였다.

1974年의 第4次總會에서는 1次產品의 國際價格의 과도한 變動을 막고, 生産國과 消費國 등 雙方에 고루 유리한 價格水準을 維持함으로써, 원면, 원당, 天然 고무, 커피, 코코아 등 18개의 開途國輸出關心 1次產品의 交易安定을 目標로 하여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sup>4)</sup>

1983年의 第6次總會에서는 個別商品의 緩衝在庫操作을 위한 資金을 融資하고, 1次產品의 生産, 研究 및 開發에 관한 資金融資를 위하여 1次產品共同基金<sup>5)</sup>設置를 촉구하며, 開途國輸出所得 減少에 대응한 IMF의 開途國支援特別措置를 강구토록 요구하였다.

1987年의 第7次總會에서는 1次產品의 價格安定을 위한 國際的 努力을 促求하고 開途國은 先進國의 反對를 무릅쓰고 價格安定共同基金의 조기발

4) 그러나 1次產品 價格安定을 위한 個別商品協定은 國際市場의 침체 및 主要先進國의 不參으로 價格調整機能을 상실하였음.

5) 共同基金의 發效는 1次產品 綜合計劃 및 個別商品協定の 活性化에 기여할 것이나, 직접각출자본(4억7천만 달러)의 2/3 이상을 부담하는 30個國 이상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發足이 지연됨.

효를 강조하면서 先進國의 적극적인 參與를 촉구하였다.

## 나. 第7次 UNCTAD總會 本會議과 委員會別 討議結果

### ① 本會議

現 國際經濟의 不確實性和 不安을 克服하고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통하여 開途國의 開發을 支援하기 위한 多岐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共通),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짐 바브웨), 對開途國 輸入擴大와 負債問題解決(이집트), 貿易黑字의 開途國 開發財源으로의 환류(日本), 軍縮剩餘財源으로 開途國開發에 利用 또는 支援(유고, 소련), 最後進國 支援計劃을 위한 1990年 國際會議 主催(프랑스), UNCTAD 活性化를 위한 小規模 國際會議開催(파키스탄) 등이 提案, 討議되었다.

### ② 4個 委員會 討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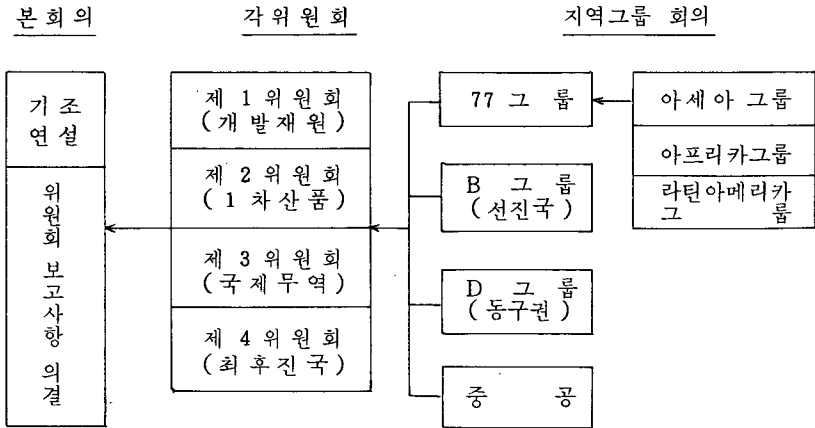
UNCTAD 4個委員會<圖4-1>別 討議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第1委員會인 開發財源委員會에서는 先進國側이 인플레이션은 成長을 目標로 한 緊縮政策의 指向, 開放 및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開途國自體의 효율적인 經濟政策調整, 外債問題에 대한 case by case 接近方式 채택 등을 주장한데 비하여, 國途國은, 成長爲主의 擴大政策을 指向하고, 外債에 대한 償還期間 再調整과 利子率引下 등 包括的인 解決方案과 IMF 改編을 강조하는 한편, 各國의 經濟政策이 各國 固有의 主權事項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開途國의 外債問題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對策이 미흡하다는 데에는 先後進國이 認識을 같이 하였다.

이어서 第2委員會인 1次產品委員會에서는 先進國이 1次產品의 構造的인 供給過剩與件下에서 共同基金이 발효될 경우 실질적인 效果에 대하여 의문을提起한데 반하여, 開途國은 1次產品價格安定을 위한 共同基金의 早期發效와 同基金에 대한 先進國의 積極的인 參與를 促求한다.

그러나 先後進國兩陣營은 1次產品의 價格不安定과 同問題解決을 위한

圖 4-1 UNCTAD의 會議構成



國際的 次元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認識을 같이 한다.

第3委員會인 貿易委員會에서는 先進國이 UNCTAD 討議事項을 우루과이 라운드와 聯關시키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開途國間에도 經濟開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데 반하여, 開途國은 UNCTAD의 討議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開途國權益保護를 위한 方向으로 進展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UNCTAD 에서도 우루과이 라운드의 成功的인 協商妥結이 必要하다는 점에는 先後進國이 認識을 같이 한다.

第4委員會인 最後進國委員會에서는 先進國이 自國內 自體 정책조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반하여, 開途國은 最後進國에 金融 및 經濟支援 擴大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先後進國들은 모두 最後進國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支援을 擴大하여야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다. 農產物國際貿易에 관한 爭點과 認識의 要旨

1次產品을 포함한 모든 商品의 國際貿易과 關連하여, 현재 뉴라운드의 爭點이 되고있는 主要事案의 意思決定을 先進國은 GATT 에서 맡아 실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反하여 開途國은 그것을 UNCTAD에서 擔當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우선 開途國은 첫째, 開途國產의 熱帶產品과 纖維類에 대한 先進國側의 市場開放을 요구하고, 둘째, 先進國의 政治的 理由에 의한 開途國에의 經濟的 制裁를 反對하며, 셋째,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서의 協商指針을 開途國의 利益을 반영토록 채택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反하여, 先進國은 첫째, UNCTAD는 일반적인 世界經濟와 貿易問題만을 토의하는데에 국한할 것을 강조하고, 둘째, UNCTAD에서의 討議結果를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 反映하는 것을 反對한다.

그러나, 先後進國間에도 현재 保護主義의 만연으로 世界貿易秩序의 歪曲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과,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成功的인 妥結이 必要하다는 데에는 認識을 같이 하고 있다.

## 라. 韓國側 提案과 總會의 成果

### ① 韓國側의 提案

韓國 代表團은 1987 年の 第 7 次 UNCTAD 總會에서 對外經濟協力基金의 창설 등을 통한 對開途國 經濟 및 技術協力이라는 南南協力の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開途國立場을 反映하는 先進國保護主義 緩和案을 촉구하였다.

뿐만아니라, 世界 經濟問題 해결의 일차적 책임이 先進國側에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新興工業國(NICs) 責任分擔論과 GSP 卒業概念을 반박하고, 關稅引下 등 貿易障壁除去와 對東歐圈 門戶開放 등 韓國의 貿易自由化政策을 설명하였다.

또 先進國의 對開途國 직접투자와 公共開發援助 및 開發金融擴大 등 開途國의 外債問題解決을 촉구하였으며, 기타 1 次產品의 價格安定과 最後進國支援強化 등을 促求하였다.

## ② 第7次 UNCTAD總會의 成果

UNCTAD 7次總會를 통하여 多者間協力主義와 國際經濟問題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UNCTAD 役割의 重要性이 再認識되었다.

특히, 1次產品 共同基金의 發足展望, 日本의 剩餘財源還流 提案, 外債問題解決을 위한 共同努力, 우루과이라운드協商的 期間內 妥結 및 對最後進國援助 努力의 다짐 등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開途國經濟開發에 대한 先後進國間 責任共有原則에 合意한것과 開途國側이 開發의 必要性에 맞게 經濟構造를 改편해야 한다는 점을 수락한 것은 특기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2. OECD와 FAO

### 가. OECD

OECD는 國際農產物市場이 겪고있는 危機의 原因을 OECD 諸國의 農業保護政策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各國의 共同協力으로 打開해 나갈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農業의 特殊事情을 고려하는 問題도 提起되고 있다.

1987年 OECD 關係會議 共同聲明에 따르면, 그러한 問題에의 對應策으로서, 첫째, 農業補助金을 減縮하고, 補助의 형태를 價格支持에서 所得補助의 形態로 전환하는 것, 둘째, 農產物供給過剩을 加重시키는 措置를 自制하고 在庫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 셋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農業과 其他分野의 貿易障壁을 撤廢토록 努力할것 등이 提示되고 있다.

### 나. FAO

FAO도 1954年에 商品問題委員會(Committee on Commodity Problems CCP)傘下에 剩餘農產物處分 小委員會(CSD)를 設置한 이래, 累積된 農產物在庫로 인하여 심화하고 있는 交易 및 市場의 不確實性을 打開하고

食糧援助 및 剩餘農産物의 支援에 대한 調査活動과 關聯政策 및 推進計劃을 검토하는 등 農産物의 交易을 增大하고 自由化 시킬 수 있는 間接的인 役割을 하여오고 있다.

### 3. GATT

#### 가. GATT 總會(Contracting Parties)

##### ① 1次 및 2次 GATT 總會(1948. 3, 1948. 9)

食料品の 不足狀態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輸出)와, 農産物의 價格下落을 막고 農民所得을 安定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輸入)를 제외하고는 農産物의 輸出入을 억제할 수 없도록 한 GATT協定案을 作成, 통과시켰다.

##### ② 11次 GATT 總會 ( 1956. 11)

農産物交易問題의 해결을 위한 各國共同措置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關聯問題點에 대한 決議案을 採擇하는 한편, 農産物交易委員會를 設置키로 決定하였다.

##### ③ 13次總會( 1958. 11)

농산물교역문제를 「國際貿易擴大計劃」의 일환으로 다루기 위하여 委員會(Committee II)를 설치하고, 農産物交易에 관한 非關稅障壁을 補助金, 國產品과 輸入品比率規定(Mixing regulation), 數量制限, 國營貿易, 國內農業政策 등 5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여 調査키로 하는 동시에 FAO등과의 協力下에 農産物交易問題의 해결방안을 摸索키로 하였다.

##### ④ 24次 및 39次總會( 1967. 11, 1983. 5)

1967년에는 農産物交易委員會를 創設하고, 農産物貿易에 관한 문제점을 GATT의 目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검토토록 하였으며, 1983년에는

이 農產物交易委員會가 各國의 農產物交易關聯 諸措置를 調査키로 하였다

#### ⑤ 40次 總會 (1984. 11)

농산물교역위원회의 報告에 근거하여, GATT 規定의 개정, 農產物補助金問題, 開途國優待問題, 衛生 및 技術上の 規制 등에 관한 勸告案을 결의 하였다. (農產物交易委員會 勸告)

#### ⑥ 41次 및 42次 總會 (1985. 11, 1986. 9)

1985 年에는 農產物交易關聯規範의 定立에 있어서 EC는 현행 GATT規定과 補助金 및 相計關稅規定의 具體化를 요구하는 반면, 美國과 濠洲등은 例外를 인정하는 禁止(prohibition with exception)를 주장함으로써 GATT 11條와 16條에 대한 接近方法에 異見이 提起되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1986 年에는 農產物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措置, 즉, 市場接近의 改善(貿易障壁의 緩和), 補助金의 단계적 撤廢, 保健 및 衛生規定의 緩和등의 제조치가 GATT規定이나 原則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 나. GATT 貿易開發委員會(CTD)

#### ① 貿易開發委員會 創設 (1964. 11, GATT 特別總會)

GATT 第36條에 명시된 開途國의 經濟發展과 生活水準向上을 이루기 위하여 GATT 貿易開發委員會를 創設하였다.

#### ② GATT 의 目的實現을 위한 特別補助機關 創設

1965 年 第2次 GATT 貿易開發委員會는 GATT 規定에 위배되고 開途國의 輸出을 沮害하는 輸出規制措置를 調査分析하고, 그것을 撤廢토록 하기 위한 特別 實務補助機關(Working Group on Residual Restriction)을 창설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③ 輸入規制措置에 대한 合同實務團 構成

1970 年에 農業委員會・工產品委員會, 貿易開發委員會 등의 合同으로 實務團會議를 구성, 先進國과의 개별적 협의를 통하여 輸入制限의 性格과 開途國貿易에 미치는 영향등을 檢討토록 하였다.

### ④ 3 個會長團會議 (The Group of Three) 構成運營

1970 年에 先進國과 開途國의 貿易規制에 관한 協議를 위하여, GATT 締約國團議長, 理事會議長 및 貿易開發委員會議長 등으로 3 機構議長團을 구성, 開途國農產品에 대한 數量制限措置의 완화 내지 撤廢와 기타 非關稅障壁 撤廢등을 촉구토록 하였다.

### ⑤ 40 次 및 43 次 CTD 會議(1980. 3, 1981. 3)

1980 年에는 開途國의 輸出에 영향을 주는 數量制限과 非關稅障壁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主要分野임을 확인하였으며, 1981 年에는 開途國의 輸出에 영향을 주는 數量制限과 기타 輸入制限에 관한 情報를 事務局이 계속 수집하여 검토할 것을 提案하였다.

### ⑥ 45 次 및 52 次會議(1981. 11, 1984. 6)

1981 年에는 入手된 各國의 通商政策과 貿易情報를 근거로 하여 開途國의 輸出에 영향을 미치는 特殊分野로서 農產品과 熱帶產品에 대한 輸入制限의 緩和와 撤廢를 강조하는 한편, 熱帶產品에 대한 雙務協商 및 多者間協商計劃을 討議하였으며, 1984 年에는 도교라운드 以後 熱帶產品 貿易自由化를 위한 開途國의 요구와 이에 대한 先進國의 實踐狀況을 調査, 評價토록 하였다 <表 4-1>.

表 4-1 Tokyo Round 以後 先進國의 貿易自由化 措置

| products group; sub group | 開途國 要求件數 | 先進國 實踐件數   |
|---------------------------|----------|------------|
| 1. 熱帶飲料                   | 73       | 9( 12.3)   |
| 커피                        | 36       | 5( -)      |
| 홍차                        | 10       | 2( -)      |
| 코코아                       | 27       | 2( -)      |
| 2. 양념류 및 花卉類              | 52       | 32( 61.5)  |
| 양념류                       | 34       | 28( -)     |
| 熱帶產切花                     | 15       | 3( -)      |
| 熱帶植物, 菜蔬類                 | 3        | 1( -)      |
| 3. 菜油質, 油菜類               | 64       | 12( 18.8)  |
| 4. 담배, 쌀, 카바사             | 17       | 10( 58.8)  |
| 5. 熱帶과일, 堅果類              | 104      | 53( 51.0)  |
| 6. 熱帶木材와 고무류              | 35       | 19( 54.3)  |
| 7. 黃麻, 경성 섬유類             | 67       | 11( 16.4)  |
| 計                         | 412      | 144( 35.0) |

資料 : GATT 事務局

#### 다. GATT 農產物交易委員會(CTA)

##### ① 農產物交易委員會의 創設

GATT는 1982年 11月, GATT閣僚會議의 결정으로 農產物交易委員會를 창설하여 農產物貿易自由化 擴大를 위한 任務로서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各國의 모든 조치(市場接近, 競爭條件, 補助金 등)를 조사 검토하고, 締約國團에게 필요한 조치를 勸告토록 하였다.

##### ② 農產物交易 關聯措置에 대한 檢討와 勸告

GATT 農產物交易委員會는 第39次 GATT 總會(1983. 11)의 요구에 따라 調査檢討한 結果를 기초로 하여 農產物貿易과 關聯된 각종 조치의 改善을 위한 勸告案을 作成, GATT 第40次總會(1984. 11)에 提出함으로써 GATT 總會가 그것을 採擇토록 하였다.

農產物交易委員會가 總會에 提出하여 채택된 勸告案의 骨格은 다음과

같다.

① GATT 規定의 改正：義務免除(Waivers)나 例外認定을 받은 輸入規制, 國營貿易등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物量規制등을 GATT 規定 對象의 범위내로 포함시킬 것.

② 補助金：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補助金은 現行體制를 改善하거나 例外를 둔 一般的 禁止등의 接近方法으로 GATT 規定의 범위내로 포함시킬 것.

③ 開途國優待問題：開途國의 특별한 需要와 農業의 特殊性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④ 行政規制：保健衛生上の 규제와 기타 技術規制등의 절차를 農產物交易을 阻害하지 않는 方法으로 改善할것 등.

### ③ 뉴라운드 第2次 準備委員會 協議

GATT 第41次 總會(1985. 11)에서의 GATT協定文 第11條(數量制限의 一般的禁止)와 16條(補助金)에 대한 接近方法論議에서 EC는 現행의 GATT 規定과 補助金 및 相計關稅 등을 具體化(elaboration of existing rules) 할것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美國과 濠洲등은 “例外를 인정하는 禁止(Prohibition with exception)”를 주장하는 등과 같이 農產物交易規範의 定立을 위한 合意點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와 관련하여 뉴라운드準備委員會(1986. 2)에서도 問題가 제기되었다.

農產物交易에 관한 事項을 뉴라운드에서 議題로 다룬다는 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意見의 一致를 보였으나, 補助金支給이나 輸入規制措置 등과 같은 個別國家의 農業政策에 직결되는 문제도 뉴라운드協商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GATT 規定의 강화를 통하여 광범한 貿易自由化를 촉진하는 問題에 대하여는 異見을 보였다.

美國, 濠洲, 뉴질랜드 등과 기타 그들 國家와 利害關係가 유사한 대부분의 開途國들은 世界 農產物貿易自由化를 확대하기 위하여 補助金과 輸入規制措置를 뉴라운드協商的 대상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된 GATT 規定을 개선하여 強化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EC등은 기존의 貿易體制와

規定下에서 農產物交易을 自由化하는 接近方法을 택하자고 주장하였다.

〔4〕 뉴라운드協商에의 農產物交易委員會 討議結果 收斂

農產物交易委員會 創設以來 이 委員會에서 討議된 내용은 1986 年 이후  
출범한 뉴라운드協商의 推進過程에서 協商展開의 중요한 資料와 근거로서  
活用되고 收斂되어 왔다.

## 第 5 章

# 뉴라운드協商과 農業部門商品 그룹會議

## 1. 1986 GATT閣僚會議宣言의 內容과 主要爭點

### 가. 宣言文의 細部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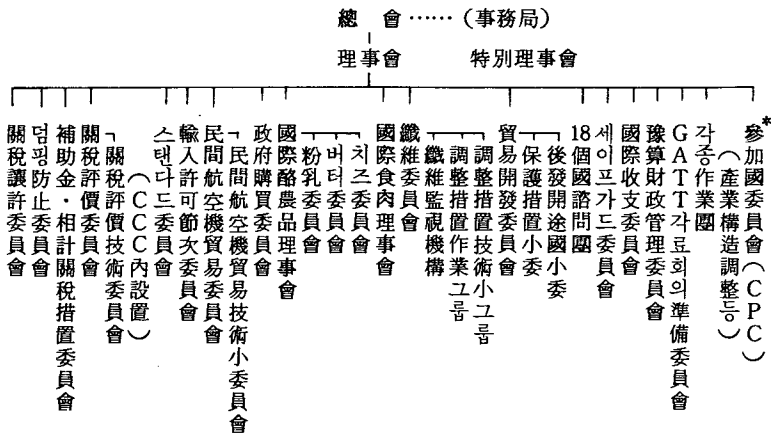
#### ① 前 文

GATT閣僚宣言은 그 前文에서 多者間貿易協商 즉, 우루과이라운드(뉴라운드)協商的 타결을 위하여 協商을 개시할 것을 합의, 결정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이 뉴라운드協商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GATT의 既存組織(表 5-1)以外에 GATT內에 閣僚級 貿易協商委員會(TNC)를 설치할 것과, 뉴라운드는 향후 4年이내에 종결토록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 ② 商品交易에 관한 協商(第1部)

GATT總會는 保護主義를 정지 내지 後退시키고, 貿易歪曲措置를 제거하며, 보다 開放되고 活力있는 지속적인 多者間貿易體制를 발전시킬 것과 세계경제상 통화와 財政의 不安定을 초래하는 否定的 영향과 過重한 外債問題를 검토키 위하여 GATT體制內 또는 GATT의 後援下에 商品交易에

圖 5 - 1 GATT 의 組織



\* Committee of Participating Countries 는 開途國間 貿易協商 議定書의 會員으로 構成된 委員會로 開途國間 貿易擴大 發展을 위해 발족, 現在 會員國은 韓國을 包含하여 18個國임.

대한 多者間貿易協商을 開始기로 決定하였다.

가) 商品交易協商의 目的

商品交易에 관한 協商의 目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關稅, 數量制限, 기타 非關稅障壁 등의 緩和와 撤廢를 통한 市場接近의 改善, 그리고 締約國 특히, 開發途上締約國이 惠澤을 볼 수 있도록 世界貿易을 보다 擴大, 自由化 할것.

둘째, GATT의 역할을 강화하고, GATT原則 및 규정에 근거한 多者間貿易體制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世界交易이 多者間 原則下에 效率의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세째, 尖端技術製品의 交易을 增大시키고, 商品市場上의 難題解消와 外債開途國의 財政能力을 배양하며, 세계무역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構造調整의 촉진 등을 통하여 GATT體制가 국제무역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

네째, 貿易政策과 成長 및 發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經濟政策間의 연계를 강화하고, 國際通貨體制의 機能改善 및 開途國에 대한 財政的인 實

質投資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國內外的 共同協力體制를 강화할 것 등이다.

#### 나) 協商의 一般原則

첫째, 協商은 모든 締約國이 利益을 누리 고, 惠澤을 증대할 수 있도록, 宣言文에서 합의된 目的과 約束 및 GATT原則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協商의 開始, 협상결과와 처리 및 이행 등은 單一約束(single undertaking)의 一部로 다루어져야 하며, 초기에 타결된 協定은 협상의 전체적 균형을 평가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部門間的 不當한 交換要求를 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무역분야 및 협상내에서 균형된 讓許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凍結(Standstill)<sup>1)</sup>과 撤廢(Rollback)<sup>2)</sup>의 施行에 있어서 특히, 開途締約國의 貿易을 沮害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의 緩和와 제거를 위한 貿易協商過程에서 이루어진 約束의 보상으로 相互主義를 기대치 아니한다. 따라서 선진국은 開途締約國의 발전상황, 財政 및 貿易需要 등에 상응치 않는 讓許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開途締約國도 同讓許의 제 공을 要求받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最低開途締約國團(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은 GATT規定이나 절차에 따라 상호합의한 措置를 취할 수 있는 能力이 自國經濟의 점진적 발전과 自國貿易環境의 개선에 따라 增大될 수 있어야 하며, GATT 규정상의 權利義務體制에 보다 깊이 參與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最低開途締約國들이 지니고 있는 特殊한 狀況과 問題點 및 이들 국가의 貿易機會擴大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조장하는데 特別關心을 두어야 한다.

#### 다) 保護主義措置의 凍結과 撤廢

保護措置에 대한 凍結과 撤廢作業은 즉시 施行토록하고, 協商의 公式의 凍結時까지 계속하기로 하면서 각 締約國은 다음의 約束을 적용하는데 合意한다.

1) 뉴라운드協商期間中 GATT規定에 일치하지 않는 貿易制限

2) GATT規定에 맞지 않는 貿易制限措置 또는 歪曲措置

첫째로 保護措置의 凍結이란 ①GATT規定에 부합되지 않거나, GATT體制內 또는 GATT後援下에서 이루어진 協商에 따라 마련된 裝置에 부합하지 않는 여하한 貿易制限措置나 歪曲措置도 취하지 않는 것이며 ②GATT規定상의 權利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GATT規定이나 위의 裝置內에 규정된 特殊狀況에 대처키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여하한 貿易制度나 歪曲措置도 취하지 않는 것이며, ③協商地位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여하한 貿易措置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保護措置의 撤廢란 ①協商目的의 수행에 따라 이루어진 多者間協定이나 約束 및 합의 등에 비추어, GATT規定에 부합되지 않거나, GATT體制內에서, 또는 GATT後援下에 이루어진 협상에 따라 마련된 裝置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貿易制限措置와 歪曲措置들이 協商의 공식적 終結時까지 합의된 日程表에 따라 廢止되거나 GATT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②이러한 措置들을 廢止함에 있어서 여하한 GATT상의 讓許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째, 이상과 같은 保護措置의 凍結과 撤廢에 관하여는 일정한 監視를 要하는 바, 각 締約國은 凍結과 撤廢에 관한 약속의 이행을 確保하기 위하여 多者間監視體를 갖추기로 한다.

貿易委員會는 定期的인 검토와 評價 및 감시를 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各 締約國은 同 約束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사항(作爲와 不作爲)에 대해서도 감시기구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締約國은 이 사실을 GATT事務總長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事務總長은 관련정보를 準備하여야 한다.

#### 라) 協商의 對象

協商의 對象에는, 關稅, 非關稅障壁, 熱帶產品, 天然資源產品, 織物과 衣類, 農產物, GATT條文,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 多國間協商協定, 補助金 및 相計關稅措置, 紛爭의 解決, 偽造商品交易과 知的所有權의 貿易 그리고, 貿易關聯投資 등 13개 사항이다.

그중에서 우선 熱帶產品, 天然資源產品 및 農產物에 관한 宣言文의 내

용을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熱帶產品에 관하여는 協商을 통하여 加工 및 半加工의 形態與否를 불문하고 모든 熱帶產品의 交易을 完全 自由化하고 熱帶產品의 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關稅와 非關稅障壁을 완화, 撤廢하여야 한다.

한편 締約國團은 대부분의 開途締約國에서 熱帶產品의 交易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協商의 時限과 협상결과 이행 등에 관하여 특별히 고려할 것에 동의한다.

둘째, 天然資源產品에 관하여는 協商을 통하여 加工과 半加工 등의 형태여부를 불문하고 天然資源產品의 交易을 完全自由化하는 것과 加工度別 稅率隔差制 등을 비롯하여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완화 내지 철폐하여야 한다.

세째, 農產物分野에 관하여는 締約國團은 세계농산물시장의 不確實性, 不均衡 및 不安定性 등을 줄이기 위하여 농산물의 구조적 供給過剩 등 農產物交易을 制限하거나 歪曲하는 조치를 規制할 필요성에 대하여 共感한다.

農產物交易에 관한 協商의 目的은 다음方法으로 農產物輸出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措置가 GATT의 規定과 原則에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

즉, 輸入障壁의 緩和를 통한 市場接近의 개선, 農產物의 交易에 直接間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간접의 補助金과 기타조치의 원인과악 및 그로 인한 否定的 效果의 점진적 緩和로 農產物交易條件의 改善, 農產物에 대한 衛生 및 植物衛生上の 規制나 障壁이 農產物交易에 미치는 否定的 效果의 최소화 등을 통하여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GATT規定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986年9月の GATT閣僚宣言에 나타난 그밖의 協商對象은 다음과 같이 集約될 수 있다.

첫째, 關稅에 관하여는 協商을 통하여 高關稅와 加工度別 稅率隔差를 완화 내지 廢止하고, 現行關稅도 적절한 方法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모든 締約國間의 關稅讓許範圍를 擴大하여야 한다.

둘째, 非關稅障壁에 관하여는 協商을 통하여 保護主義撤廢 約束의 履行過程에서 취해지는 모든 措置와는 별도로 數量制限을 포함한 각종 非關稅

障壁을 완화 내지 철폐하여야 한다.

세째, GATT條文(GATT Articles)에 관하여는 締約國들은 관련 締約國의 要請에 따라 現행의 GATT條文上的 규정과 원칙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協商을 개시토록 해야 한다.

네째,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에 대한 포괄적인 協定締結은 GA  
TT體制의 機能強化와 多者間貿易體制의 발전에 重要한 역할을 하므로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한 協定은 GATT의 기본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明瞭性, 대상범위, 「심각한 被害 내지 被害憂慮」라는 概念의 客觀的 基準 등을 내포하는 동시에, GATT원칙을 明確하고 強力하게 하되, 그 協定이 모든 締約國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多者間協商協定(MTN Agreements and Arrangement)에 관하여는 協商을 통하여 도교라운드 多者間貿易協商에서 타결된 各種의 協定과 裝置를 적절히 개선하고 明瞭化 및 확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補助金과 相計關稅措置에 관한 協商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補助金 및 相計關稅措置와 相關한 GATT原則을 개선키 위하여 GATT 6條, 16條 및 도교라운드의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sup>3)</sup>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同問題를 다루기 위한 協商그룹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곱째, 紛爭解決에 관한 協商은 보다 效果的이고 준수가능한 GATT規定과 原則이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認識下에 모든 締約國이 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紛爭解決을 위한 절차와 規定을 改善, 強化하는 동시에, 협상에서 채택된 報告書에 대한 당사국의 원만한 승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紛爭解決의 節次를 監視, 監督할 수 있는 裝置를 開發하여야 한다.

여덟째, 偽造商品交易을 포함한 知的所有權의 貿易에 관한 協商은 GA  
TT에서 이미 遂行되어온 作業을 고려하여 偽造商品의 國際交易問題를 취

---

3) 도교라운드 協商에서 工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은 原則적으로 禁止하고, 農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은 國際市場占有率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로 制限하는 한편, 相計關稅의 發動要件으로 material inquiry를 明示하였다.

급할 원칙과 規定에 관한 多國間合意點을 개발하는 것과, 知的所有權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保護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知的所有權의 國際交易上 歪曲과 障礙를 완화하는 동시에, 知的所有權의 保護 그 自體가 정한 무역에 대한 障壁으로 작용치 않도록 GATT의 관련規定을 明瞭化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정과 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홉째, 貿易關聯投資分野에 관하여는 協商을 통하여 貿易制限 및 貿易歪曲效果를 초래하는 각종 投資措置와 관련된 GATT規定의 적용문제를 檢討하고, 필요한 규정을 改善 내지 開發하여야 한다.

열째, 織物과 衣類分野에 관하여는 協商을 통하여 GATT의 규정과 원칙을 강화하고 織物과 衣類分野를 궁극적으로 GATT體制內에 統合시킬수 있는 方法을 강구하며 나아가서 同分野의 交易를 보다 自由化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GATT體制의 機能

前記 GATT閣僚宣言은 GATT體制의 機能에 대하여,

첫째, 締約國의 貿易政策과 貿易慣行 및 이들이 多者間貿易體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GATT體制內에서의 감독을 改善하고,

둘째, 특히 閣僚의 參與를 통하여 한 裝置로서의 GATT意思決定과 전반적인 效果性を 向上시키며,

세째, 通貨와 財政問題를 관장하는 여타 國際機構와의 紐帶를 강화함으로써 世界經濟政策樹立의 긴밀한 연관성을 높이는데 GATT의 寄與度を 提高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바) 協商에의 參與 (participation)

뉴라운드협상에의 參與는 첫째, 모든 締約國, 둘째, 暫定加入國(count-ries having acceded provisionally), 세째, 사실상 GATT規定의 적용국가로서 1987年 4月 30日以前까지 GATT加入 및 協商에 參與할 의사를 밝히는 國家, 네째, 理事會를 통하여 加入條件의 交渉意思를 締約國團에게 통지한 國家, 다섯째, 협상기간 동안 加入條件을 협의할 의도로 1987年 4月 30日까지 GATT加入節次를 밝는 開途國 등에 대하여 개방된다.

단, GATT 規定의 개정 및 적용과 관련한 協商, 또는 새로운 規定을 제정  
키 위한 協商에는 締約國家들에게만 參與가 許容된다.

#### 사) 協商의 組織(Organization of the Negotiation)

GATT 關係宣言은 다음의 協商業務計劃(programme of negotiation)을  
수행하기 위하여 商品協商그룹(GNG)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① 1986 年 12 月 19 日 以前까지 상세한 貿易協商計劃을 樹立 施行, ②保  
護措置의 凍結(standstill)과 撤廢(rollback)의 履行與否를 감시하기 위  
한 적절한 裝置의 確立, ③필요한 경우 餘他 協商그룹의 설치, ④協商進  
行中에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의 포함여부 결정, ⑤各 協商業務그룹업무들  
조정하고, 協商의 進行을 管理, ⑥貿易協商委員會에의 協商結果 報告등.

### ③ 서비스交易에 관한 協商(第 2 部)

同 關係宣言에서는 多者間貿易協商의 일부분으로서 서비스貿易에 대한 協  
商을 개시기로 決定하였다.

① 同 分野에 대한 협상은 서비스무역을 점진적으로 自由化 및 擴大하  
고 교역당사국의 經濟成長과 開途國의 發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서비  
스무역을 다룰 원칙과 규정에 관한 多者間協商計劃을 수립하는 것을 目的  
으로 한다.

② GATT 上的 節次와 慣行은 이러한 서비스協商過程에 적용되어야 하  
며, 同 分野를 다루기 위하여 서비스協商그룹(GNS)을 設置한다.

③ 서비스貿易에 대한 協商에의 參加는 商品協商그룹의 경우와 同一한  
國家에 대하여 開放된다.

④ 서비스協商그룹의 결정에 따라 다른 國際機構의 技術的인 協助와  
더불어 GATT 事務局의 協助도 提供되어야 한다.

⑤ 서비스協商그룹은 貿易協商委員會(TNC)에 協商의 結果를 報告하  
여야 한다.

#### ④ 商品交易協商과 서비스交易協商的 結果 履行

모든 分野에 있어서 多者間貿易協商이 타결될 경우, 關係會議로 개최될 GATT 特別總會에서는 個別結果에 대한 國際間 履行問題를 決定하여야 한다.

#### 나. 協商對象課題別 主要爭點

##### ① 熱帶產品(Tropical products)

GATT '86 閣僚宣言에는 熱帶產品 交易自由化를 優先적으로 고려키로 하고 있으며, 協商對象品目の 범위를 選定하는 問題와 이 分野에 관한 開途國優待條項의 履行與否가 主要爭點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관하여 韓國의 立場에서는 첫째, 協商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때 이 問題가 最貧開途國의 關心議題인 점을 감안하여 立場表明을 가급적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熱帶產品의 協商對象品目の 範圍를 결정할 때는 韓國의 農產物과 競合되는 品目(쌀, 熱帶果實類 등)을 可及的 제외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 ② 天然資源產品

GATT 閣僚宣言에서는 天然資源產品에 대한 協商的 目的이 加工 및 半加工된 天然資源產品의 完全한 交易自由化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主要爭點은 첫째, 林產物, 水產物, 鑛物 등에 관한 協商을 一括推進할 것인가의 與否와 둘째, 林產物에 펄프, 종이 및 종이製品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與否, 세째, 資源開發을 위한 投資環境改善 및 資源開發의 參與制限을 緩和하는 문제 등이다.

韓國은 天然資源產品의 主宗 輸出國이 開發途上國이며, 이 產品이 開途國經濟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그것의 貿易自由化에는 원칙적으로 찬동하나, 協商對象品目の 범위는 가급적 縮小시키도록 하고, 協商過程에서 資源保有國뿐 아니라 資源輸入國의 利益도 적절히 고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農産物 (Agriculture)

GATT 閣僚宣言에 함축된 農産物貿易과 關聯된 主要爭點은 輸出補助金を 撤廢하는 問題와 農産物의 交易을 自由化(市場開放)하는 問題이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은 農産物交易自由化를 積極的으로 支持할 것이 아니라 協商의 推移를 주시하면서 신중히 대처하여야 하며, 마침내 農産物交易自由化 論議가 輸入市場開放要請으로 擴大될 경우 農産物의 特性과 관련 GATT 規定의 開途國에 대한 例外條項이 明文化되도록 努力하여야 할 立場이다.

### [4] 關稅 (Tariffs)

關稅에 관한 協商의 主要爭點은 開途國의 輸出關心品目(섬유류, 革製品 등)에 대한 高關稅率을 引下하는 문제와, 加工度別 稅率隔差(Tariff Escalation)를 完化하는 問題 등이다.

아직도 解消되지 아니한 工產品의 加工度別 關稅隔差 때문에 完製品의 輸出에 의존하는 輸出構造를 지닌 國家에 대하여 不利한 作用을 하므로, 韓國으로서의 加工度別 差等關稅制를 完化할 것을 主張할 필요가 있으며, 섬유류 등의 主宗 輸出關心品目은 여전히 높은 關稅率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韓國도 他 開途國의 경우와 같이 開途國關心品目の 關稅率을 引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 H·S 制度가 確立되어 가고 있으므로 그것이 定着된 다음부터 關稅에 대한 協商을 本格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非關稅障壁 (Non Tariff Measures)

閣僚宣言에 明示된 非關稅障壁에 대한 協商의 目的이 數量制限을 포함한 모든 非關稅障壁<sup>4)</sup>을 完化 내지 撤廢하는데 있으며, 그에 관한 主要爭點은 規制措置의 明確性을 確立하는 問題, 그리고 內面的인 行政的 規制措置와 GATT를 逸脫하는 規制措置를 撤廢하는 問題 등이다 <表 5-1>.

表 5 - 1 非關稅措置의 類型別 主要事例

| 類 型         | 主 要 事 例                                                  |
|-------------|----------------------------------------------------------|
| 數 量 規 制     | 輸入制限等の 各種 쿼타規制, 輸出自律規制(VER), 市場秩序維持(OMA), 多者間 纖維協定(MFA)  |
| 價 格 規 制     | 最低輸入價格制,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 各種 課徵金                            |
| 制度 및 行政的 規制 | 輸入許可制, 通關節次의 複雜化, 補助金 支給 및 國產品優先 購買措置, 通關書類 自國語 使用義務 措置等 |
| 品 質 및 標準規格  | 制度基準, 補填 및 安全基準, 含量基準, 原產地規程 包裝規程 等                      |

資料 : 農林水產部

이와 관련하여 韓國으로서는 '82 GATT Work Programme에 의하여 지금까지 活動하여온 數量制限/多者間協商實務團(QR/MTN Working Group)의 作業을 非關稅障壁協商에서 더욱 發展의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輸出自律規制, 市場秩序 維持協定 등 GATT에 위배되는 灰色措置는 協商의 對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協商參與國의 凍結 / 撤廢義務(SS/RB)의 履行이라는 觀點에서 早速히 撤廢되는것이 바람직하다.

#### ⑥ GATT條文 (GATT Articles)

閣僚宣言에 含蓄된 GATT 條文에 대한 協商의 主要爭點은 첫째, GATT 第 1 條(最惠國待遇), 第 17 條(國營貿易)<sup>5)</sup>, 第 24 條(自由貿易地帶 등), 및

- 4) 關稅 以外의 貿易障壁을 말한다. 非關稅障壁의 定義에 대해서 아직 國際의으로 合意된 것은 없으나 ① 貿易을 直接的으로 制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非關稅障壁(數量制限, 輸入許可制, 各種 輸入課徵金 및 外換割當 등)과 ② 다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措置가 우연히 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副次的 貿易制限效果를 가지는 非關稅障壁(保健衛生規定이나 內國稅制度 等)으로 大別되고 있다.
- 5) 貿易을 國家가 統制함으로써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國家財政, 安保 및 公共衛生上의 目的을 달성하며, 國內消費者나 小規模生産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가 運營하는 企業을 말한다. GATT는 17 條에서 國營貿易企業도 商業의 베이스에 따라 運營해야 함을 規定하고 있다.

第 28 條(讓許表修正) 등을 再檢討하는 問題와, 둘째, GATT에 通報된 品目基準에 관한 問題 등이다 <表 5-2>.

이에 관하여 韓國은 GATT 基本原則이 許容된 特定規定으로 인하여 得보다 失이 많으므로 同規定의 改善 및 明瞭化를 강조하여야 할 立場이다.

#### ⑦ 緊急輸入制限措置 (Safeguards)

緊急輸入制限措置란, 特定產品의 輸入急増으로 인하여 國內 關聯産業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當該 産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輸入制限措置를 取하는 것을 의미한다 <表 5-3>.

緊急輸入制限措置에 대한 協商의 主要爭點으로는 첫째, 이 措置의 選別

表 5-2 主要國의 國營貿易品目

| 國 別   | 品 目                                                                 |
|-------|---------------------------------------------------------------------|
| 일 본   | 연유, 분유, 버터, 밀크파우더, 웨이파우더, 소맥, 메슬린, 대맥, 나맥, 쌀, 생아편, 소금, 생사, 연초, 에틸알콜 |
| 서 독   | 에틸알콜, 브랜디, 성냥                                                       |
| 스 웨 덴 | 맥주, 포도주, 기타, 알콜음료                                                   |
| 놀 웨 이 | 소맥, 대맥, 귀리, 호밀, 소맥분, 알콜음료, 어망, 의약품                                  |
| 핀 란 드 | 소맥, 대맥, 호밀, 귀리, 알콜음료                                                |
| 호 주   | 소맥, 소맥분, 버터, 치즈, 원당, 양육, 우육, 벌꿀, 건조과실, 포도주, 브랜디                     |

資料 : 農林水産部

表 5-3 主要國의 Safeguards 發動事例

| 國 別 | 發動件數<br>1950-1984 | 品 目 別                                  |
|-----|-------------------|----------------------------------------|
| 호 주 | 38                | 의류, 신발류, 니트의류, 냉장고, 자동차, 브랜디, 철관, 램프 등 |
| 미 국 | 27                | 신발류, 특수강, 도자기, 라디오, 피아노, 양송이 등         |
| 캐나다 | 21                | 딸기, 감자, 황색양파, 의류, 신발 등                 |
| E C | 9                 | 양송이, 포도, 녹음기                           |
| 프랑스 | 4                 | 주철 용선철, 마육, 식기류                        |

資料 : 農林水産部

의適用에 관한 문제로서, 이措置의 적용에 있어서 GATT의 最惠國待遇原則(MTN)이 排除되고, 特定國家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EC등 先進國의 주장과 最惠國待遇原則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開途國의 주장이 對立되어 있다.

둘째, 灰色措置(grey area measures)의 取扱問題로서, 최근 GATT범위 밖에서 先進國의 輸入規制手段으로 남용되고 있는 輸出自律規制(VER)와 市場秩序維持協定(OMA) 등 이른바 灰色措置問題를 緊急輸入制限의 對象範圍에 포함시킬 것을 主張하는 先進國과 이를 反對하는 開途國이 對立關係에 있다.

세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發動要件에 있어서 「輸入의 急増」, 「國內産業에 대한 심각한 被害」 등의 概念, 基準과 因果關係의 立證問題, 同措置의 發動期間과 範圍, 補償과 報復措置問題 등이 제기되고 있다.

네째, 多者間監視機構의 性格의 문제로서, 監視機構를 별도로 設置한다는 데에는 意見이 일치하고 있으나 同機構의 決定事項에 대한 羈束力부여 문제에 관하여는 先進國과 開途國間에 反對立場을 주장한다.

다섯째, 産業構造調整과의 連繫問題로서 緊急輸入制限措置 關聯規定에 産業構造調整 義務化規定을 포함시킬것인가의 與否에 관하여 先進國과 開途國間에 意見이 對立되어 있다.

緊急輸入制限措置와 관련하여 韓國은 첫째로 選別適用을 배제하여야 할 立場이다. 그것은 선별적용이 最惠國待遇原則(MFN)에 위배되며, 선별적용이 認定될 경우 자의적인 發動이 용이해질 우려가 있고 規制對象도 韓國과 같은 先發開途國이 될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야 한다.

둘째로, 輸出自律規制나 市場秩序維持協定 등과 같은 灰色措置를 緊急輸入制限의 對象範圍에 포함시키는 問題에 있어서는 이들 灰色措置를 GATT 內에서 合法化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反對하여야 한다.

세째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發動要件을 엄격하고도 客觀的인 기준을 설정토록 하여야 하며, 發動의 期間은 가급적 短期間으로 하되, 同措置의 延長은 原則적으로 許容치 않아야 한다.

비례로, 補償 및 報復措置에 있어서는 關聯 當事國과의 事前協議와, 發動措置에 상응하는 補償 및 協議決裂時의 적절한 補償措置가 保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多者間監視機構에 대하여는 羈束力을 부여하는데 찬동한다.

여섯째로, 緊急輸入制限措置가 産業構造調整의 遲延手段으로 惡用되어서는 안되며, 同措置發動의 前提條件으로 産業構造調整計劃이 提示되어야 한다.

#### ⑧ 多者間協商協定 (MTN)

MTN 協定에 관한 協商의 目的이 東京 라운드 多者間貿易協商에서 妥結된 各種의 協定과 裝置를 적절히 改善하고 明瞭化하여 擴張하는데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에 관한 主要爭點은 開途國의 加入을 擴大하는 것과 MTN 協定을 개선하고 보다 明瞭化하는 문제이다. 특히, 前者는 MTN 協定の 內容이 保護貿易의 撤廢나 産業構造調整 등 先進國의 義務履行에 重點을 두지 않고 오히려 開途國의 義務履行에 치우치고 있어 多數開途國의 參與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表 5-4>.

表 5-4 동경라운드 MTN 協定締結 現況

| 區 分          | 主 要 內 容              | 加 入 國 數           |     | 우리나라<br>加入與否 |
|--------------|----------------------|-------------------|-----|--------------|
|              |                      | 先進國               | 開途國 |              |
| 關稅讓許 議定書     | 關稅讓許協商結果             | 24                | 21  | '80. 1       |
| 補助金·相計關稅協    | 輸出補助金 支給 禁止          | 21                | 9   | '80. 6       |
| 關稅評價 協定      | 恣意的 關稅評價의 禁止         | 22                | 9   | '80. 1       |
| 技術障壁 協定      | 商品標準化의 不當한 檢證排除      | 21                | 16  | '80.10       |
| 輸入許可節次協定     | 輸入許可節次의 簡素化 및 情報의 公開 | 23                | 9   | 未加入          |
| 政府購買 協定      | 政府購買時 公開入札 實施        | 18                | 3   | "            |
| 反 덤핑 協定      | 덤핑의 被害概念등 既存協定 補完    | 22                | 9   | '80. 2       |
| 牛 肉 協定       | 牛肉에 대한 貿易障壁 除去       | 22                | 11  | 未加入          |
| 酪 農 品 協定     | 酪農製品에 대한 需給과 價格安定    | 22                | 5   | "            |
| 民間航空機 協定     | 民間航空機 去來時 關稅 및 諸稅免除  | 17                | 3   | "            |
| Framework 協定 | 開途國 優待 및 卒業概念        | 모든 GATT 加入國에 自動適用 |     |              |

資料 : KIET

따라서 이 MTN 協定에 관한 韓國의 立場은 東京라운드에서 締結된 모든 MTN 協定에 대하여 전반적인 再檢討를 필요로 하는 立場이며, 특히 開途國의 參與範圍를 확대할 수 있도록 保障하는 側面에서 協定이 改善내지 明瞭化될 것을 期待한다.

#### ⑨ 補助金과 相計關稅措置 (Subsidies & Countervailing Measures)

GATT 에서는 補助金에 관하여 一般的인 定義를 내린 規定이 없다. 다만, GATT 規定 16 條에 의하면 補助金은 대략 「自國의 輸出을 增加시키거나 또는 外國으로 부터의 輸入을 減少시키는 結果를 초래할 모든 直接의 獎勵 및 支援措置」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補助金은 國內補助金과 輸出補助金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相計關稅는 產品의 製造, 生産, 輸出에 대하여 直接, 間接으로 支給된 獎勵金이나 補助金を 輸入國에서 相殺하기 위하여 賦課하는 特別關稅로서, GATT 第 6 條에 그것의 發動要件, 發動節次와 範圍 등을 定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世界 主要國들이 그 規定과는 相異한 要件과 節次로 相計關稅를 賦課하고 있어서 紛爭을 야기하고 있다.

이分野에 관한 協商에서의 主要爭點은 1 次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 支給을 禁止하는 問題, 輸入國의 被害를 測定하는 基準의 모호성, 相計關稅 賦課節次를 濫用하는데에서 오는 問題, 同協定에의 開途國 參與를 擴大하는 問題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韓國의 입장에서는 현행의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の 改善이 필요하며, 그 改善을 통한 參與의 幅을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相計關稅 및 덤핑방지협정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한 明瞭性的의 確保와 자의적인 發動을 規制할 필요성을 실감하는 동시에 補助金의 範圍에 있어서도 開途國을 優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農産物交易에 대한 GATT內의 既存 主要論議

앞의 章에서 뉴라운드는 縱的으로 딜론·케네디·도쿄라운드 등과 연속 선상의 맥락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우루과이라운드로 代表되는 뉴라운드協商에서의 農業部門交易에 관한 協商을 論議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GATT內에서의 그러한 歷史的인 既存 論議의 主要 內容을 概觀, 整理할 필요가 있다.

### 가. 多者間 關稅引下協商과 Kennedy Round

1947年4月, 先進 23 個國家의 參加裏에 GATT를 발족시킨 이래, 1964~67年의 Kennedy Round 직전까지는 이 世界貿易을 둘러싼 多者間協商은 거의 全的으로 關稅引下問題를 중심으로 進行되었다 <表 5-5>.

Kennedy Round 부터는 關稅의 引下方式에 있어서 종래의 品目別引下協商方式(Item by item formular)에서 一括引下方式(Linear Reduction)으로 전환하는 등 關稅引下問題 이외에 農産物關稅와 기타 非關稅 障壁을 완화하는 문제도 部分的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表 5-5 國際 關稅引下協商的 成果

| 區 分 | 交渉期間    | 名 稱    | 參加國 | 讓許品目數    | 總 讓 許 額  | 平均引下率 |
|-----|---------|--------|-----|----------|----------|-------|
| 第1次 | 1947    | 一般關稅協商 | 23  | 45,000 個 | 100 億弗   | -     |
| 第2次 | 1949    | "      | 32  | 5,000 個  | -        | -     |
| 第3次 | 1950~51 | "      | 34  | 8,700 個  | -        | -     |
| 第4次 | 1956    | "      | 22  | 3,000 個  | 25 億弗    | -     |
| 第5次 | 1960~61 | 딜론라운드  | 23  | 4,000 個  | 49 億弗    | 7 %   |
| 第6次 | 1964~67 | 케네디라운드 | 46  | 30,300 個 | 400 億弗   | 35 %  |
| 第7次 | 1973~79 | 東京라운드  | 99  | 30,000 個 | 1,250 億弗 | 33 %  |

資料：外務部經濟局, 새로운 多者間貿易協商現況 및 對應方案(1984).  
日本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72.

즉, 1964 ~ 68 年の GATT 第 6 次 關稅引下協商에서 Kennedy 美國大統領의 제창에 따라 GATT 48 個會員國이 合意하여 關稅一括引下方式을 채택하는 등 關稅部分뿐 아니라, 큰 成果는 없었으나 非關稅障壁分野에도 問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Kennedy Round 의 主役은 美國과 EC 및 一部開途國이었으며, 30,000 여 品目の 平均 35 % 關稅引下, ASP(American Selling price) 制度의 廢止, 國際穀物協定締結, 덤핑防止協定締結 등의 成果를 거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關稅一括引下方式의 未治性, 農產物關稅一括引下の 不合理性, 선진국主導의 協商展開 등은 오히려 問題點으로 지적된다.

#### 나. 東京 Round

전술한 바와같이 Kennedy Round 가 世界貿易에서 關稅引下에는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두었으나 國際貿易與件의 變化에 따라 제기되는 非關稅障壁 등 다양한 問題를 해소하는데는 未治하였다.

1970 年代에 들어와 先進國의 保護主義強化 傾向속에서 GATT 는 다시 東京Round( 1973. 9 ~ 1979. 4 )를 통하여 世界貿易의 擴大와 自由化를 촉진코자 시도하였다.

그 協商의 結果, 關稅는 8 ~ 10 年사이에 총 25 萬個品目에 대하여, 先進國은 平均 33 ~ 38 %, 後進國은 平均 26 ~ 27 %씩을 각각 引下시켰으며, Kennedy Round 이전과는 달리 關稅引下 이외에 非關稅障壁을 緩和내지 除去하는 問題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補助金과 相計關稅, 덤핑防止, 技術障壁, 牛肉 및 酪農製品 등 10 여개 部門에 대한 協定(Code)에 관하여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數量制限, 小麥協定, 偽造商品協定 등의 問題는 보류되었다.

東京Round 協商의 結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補助金과 相計關稅(Subsidy and Countervailing Duty)

工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은 원칙적으로 禁止하고, 農產物에 대한 輸出

補助金は 과거 一定期間의 國際市場占有率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內로 制限하는 정도로 합의하였으며, 相計關稅의 發動要件을 「具體的 被害(material injury)」로 明示하였다(補助金の 12 個種類の 設定은 先發開途國에게 不利하며, 相計關稅 發動要件의 制限은 開途國에 有利함).

## ② 덤핑防止(Anti Dumping)

덤핑에 있어서의 「具體的 被害」의 개념과 調査節次 등을 明示하고, 反덤핑관세의 賦課要件을 強化하였다(國內價格이 輸出價格보다 높은 開途國에 有利함).

## ③ 技術障壁(Technical Barrier)

標準化와 認證制度 등의 貿易障壁化를 막고, 가능한한 國際標準制度의 導入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各種의 관련 制度를 채택할 때에는 GATT事務局에 通報토록 하였다. 이는 先進國의 技術障壁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을뿐 아니라 韓國의 標準制度를 國際化하는 계기도 되었다.

## ④ 牛肉과 酪農製品

牛肉 및 酪農製品 등의 價格安定과 需給安定을 위하여 生産國과 消費國간의 協力關係를 強化하는 한편, 酪農品の 最低輸出價格을 規制키로 하였다. 이는 生産國의 利益을 주로 保護하는 것으로서 最高輸出價格도 規制해야 할 것이다.

## ⑤ 關稅引下(Tariff Reduction)

1980. 1. 1 부터 1987. 12. 31 까지(8 年間) 先進國相互間에는 關稅率을 平均 33 % 一括引下하고, 先進國과 開途國間에는 兩者協商을 통하여 關稅率을 品目別로 引下토록 하였다.

## ⑥ 關稅評價

各國의 關稅評價基準을 統一하고 評價의 원칙은 실제 去來價格을 기준

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CIF와 FOB는各國의 政府가 결정토록 하였다.  
韓國은 美國의 ASP 制度의 廢止에 따라 對美進出이 용이하게 되었다.

#### ⑦ 政府購買(Government Procurement)

政府調達部門의 市場을 開放하고 外國供給者와 物品에 대한 內國民待遇 및 無差別原則을 적용토록 하였다.

#### ⑧ 輸入節次(Import Licensing)

輸入節次상의 諸規定을 간소화하고, 諸規定의 公表 및 關聯資料를 GATT 事務局에 備置토록 하였다.

#### ⑨ 貿易規範(Framework)

例外的 양해사항으로서 開途國優待原則을 一部 反映토록 하였으며, 最惠國待遇의 例外原則으로 GSP와 LDC 特惠 등 權能條項을 設定하였다. 한편, 開途國의 개발정도에 따라 GATT 權利義務를 점진적으로 賦課하였다. (卒業概念導入).

#### ⑩ 民間航空機(Civil Aircraft)

航空機와 그 部品에 대한 關稅 및 課徵金을 免除하고, 航空機輸出入에 대한 數量制限과 政府介入을 撤廢토록 하였다.

### 다. '82 GATT 閣僚會議의 Work Programme 採擇

1982年 11月, GATT 閣僚會議에서는 世界貿易의 擴大와 自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國際經濟狀態에 대한 政治的宣言과 함께 GATT 作業計劃 (Work programme)을 채택하고, 17個部門의 貿易懸案에 관하여 구체적인 作業을 실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漸増하는 保護主義趨勢에의 우려와, 貿易自由化에의 세계적 노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緊急輸入制限措置, 紛爭解決節次, 農產物, 產業構造, 섬유류 등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비스나 偽造

商品 등과 같은 분쟁소지가 있는 새로운分野까지 포함하는 등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의 모든 貿易問題가 다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作業計劃은 예상보다 극히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위에 들은 거의 대부분의分野가 협상의 踏歩狀態를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作業計劃의 不振은 마침내 美日을 중심으로 추진된 뉴라운드 개최 논의를 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開途國들은 뉴라운드의 개최에 앞서 同作業計劃의 조속한 完遂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 作業計劃과 뉴라운드協商은 현안과제로 제기되고있는 保護貿易主義의 撤廢와 世界貿易體制의 定着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兩者는 相互補完的인 關係에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GATT는 短期的으로는 우선 同作業計劃을 完遂하는데에 우선하여야 하며, 長期的으로는 이 作業計劃의 未洽點이나 불합리성 등을 뉴라운드協商으로 연결시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實踐되어야 할 것이다.

'82 GATT의 Work programme의 內容과 主要爭點은 다음과 같다.

#### ㉠ 緊急輸入制限(Safeguards, GATT 19條)

국제적인 保護貿易主義를 撤廢하고 貿易의 擴大 및 自由化를 위하여 多者間協商을 早速히 개최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에 關한 中間報告書를 1983年 7月까지 提出하여야 하며, 各國은 '82 閣僚宣言에서 言及된 原則과 內容을 遵守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主要爭點은 첫째, 緊急輸入制限의 發動要件으로서 先進國은 「1國 또는 數個國으로부터의 輸入이 國內産業에 대하여 심각한 被害나 威脅을 야기하는 경우」로 하자는 立場이고, 開途國(韓國포함)은 「發動의 基準이 되는 輸入品の 市場占有率」을 明示하자는 立場이었다.

둘째, 緊急輸入制限의 選別的適用問題로서, 이에 관하여 先進國은 「輸入國의 임의판단 또는 輸出國과의 合意에 의한 選別適用」을, 開途國은 「GATT의 MTN(多者間貿易協商) 原則에 의한 無差別適用」을 주장하였다.

셋째,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動期間으로서, 先進國은 「必要한 期間」을

開途國은 「最短期間」을 각각 주장하였다.

네째는, 輸出自律規制(VER), 市場秩序維持協定(OMA) 등 灰色措置를 協商對象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與否問題로서 이에 대하여 先進國은 協商對象에 포함시킬 것을, 開途國은 그것을 協商對象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別途의 協商을 가하도록 하자는 것을 주장하였다.

## ② 開途國貿易(GATT 第 4 部 및 東京多者間貿易協商的 Frame work Code 上의 卒業概念)

開途國優待條項의 履行을 效率化하는 方案을 研究하여 1984 年 GATT 總會에서 綜合的으로 검토키로하고, 先進國과 開途國의 貿易擴大可能性을 GATT 貿易開發委員會(CTD)에서 研究토록 하였다.

이에 관한 主要爭點은, 先發開途國에 대한 卒業概念(Graduation Concept) 적용문제로서, 先進國은 先發開途國이 發展程度에 따라 市場開放 등 GATT 內에서의 制限義務를 負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開途國은 東京MTN 卒業概念이 그것의 基本前提인 GATT 第 4 部に 위배된다고 보고, 開途國에 대한 先進國의 開途國 優待義務가 선행되어야 한다고主張하였다.

## ③ 紛爭解決節次

紛爭의 調整節次를 改善하고, Pannel 을 構成, 活用하며, Pannel에 대한 豫算支援과 權限을 擴大키로 하였으며, 紛爭當事國이 自發的으로 解決할 수 있도록 措置方案을 提示하되, 그것이 效果를 거두지 못할 경우 GATT 理事會의 勸告를 받도록하고, 勸告에 따른 當事國의 조치결과가 不實한 경우에는 補償을 요구하거나 讓許適用을 除外하는 등의 報復措置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爭點은 紛爭處理期間의 短縮, GATT 理事會決定의 效力強化 Pannel 活動의 強化問題 등으로서, 先進國은 그러한 問題點을 인정하면서도 消極的인 자세였고, 反對로 開途國은 紛爭節次의 改善에 積極적이었다

#### ④ 農產物交易

農業委員會를 설치하여 農產物輸出에 대한 補助金 등을 검토한後, 그 結果를 1984 年 總會에서 검토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主要爭點은 農產物交易에 대하여도 一般商品과 같은 國際貿易秩序를 確立하자는 것으로서, 우선 先進國의 경우는 美國이 對EC 農產物交易과 관련하여 積極인 자세임에 비하여 EC는 農產物交易의 自由化에 적극적으로 反對하는 立場을 취하였다. 그에 비하여 開途國의 경우는 農業國이 조속한 시일내에 規範을 定立할 것을 강조함에 비하여, 其他國(韓國 등)은 農業與件이 他國에 比하여 不利하며, 농업문제가 社會問題로 직결되는 特殊性 때문에 즉각적인 貿易自由化가 困難하다고 주장하였다.

#### ⑤ 熱帶產品

열대산품에 대한 貿易障壁을 완화, 철폐키 위한 GATT貿易開發委員會 事業을 계속 추진하여 그 結果를 1984 年 GATT總會에서 검토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主要爭點은 熱帶農產物交易上の 國際貿易秩序를 確立하는 문제로서, 先進國은 이에 消極적이었으며, 開途國은 最後進國과 先發開途國으로 구분되어 前者가 극히 적극적임에 비하여 後者는 비교적 傍觀的立場을 취하였다.

#### ⑥ 數量制限과 非關稅障壁

特別作業班을 구성하여 非關稅障壁의 완화可能性을 검토한 後 그 結果를 1984 年の 總會에 報告토록 하였다.

이에 관한 主要爭點은 非關稅障壁의 緩和可能性問題로서, 先進國은 특히, 先發開途國의 非關稅障壁 緩和에 적극적인 攻勢를 취하였으며, 開途國은 선진국의 非關稅障壁에 적극적인 反對를 하였다.

## ⑦ 關 稅

加工度別稅率隔差(Tariff Escalation)를 완화하고, 調和制度(Harmonized System) 導入에 따른 讓許水準을 유지하면서 開途國을 支援토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先進國은 加工度別稅率隔差 緩和에는 소극적인 반면 商品品目分類上 調和制度(H.S)를 導入하는 問題에 관하여는 그것의 早期定立論에 적극 찬동하였다. 開途國은 加工度別稅率隔差의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H.S의 早期定立에도 찬성하나 技術的與件의 未備로 消極的이었다.

## ⑧ 東京MTN 協定 擴大

東京多者間貿易協商을 계기로하여 多者間貿易協定에의 加入을 촉진하는 方案을 강구키로 하였는바, 이에 관련하여 先進國은 開途國의 MTN 加入을 촉구하는 반면, 開途國은 對開途國優待를 선행하여 保障할것을 요구하면서 MTN 加入論에는 소극적이었다.

## ⑨ 産業構造調整

産業構造의 調整과 貿易政策의 相互關聯性을 계속 검토하여 1983 年 總會에 報告키로 하였다.

여기서는 輸入規制 보다는 比較劣位産業의 構造的 調整을 하는 問題가 主要 爭點이었는바, 先進國은 이에 관하여 原則的으로 異見이 없으나 現存 政治經濟與件下에서는 積極推進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開途國은 先進國의 産業構造調整이 開途國뿐 아니라 先進國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⑩ 偽造商品貿易

이에 관하여는 GATT 理事會가 偽造商品問題取扱의 적절성 여부를 檢討하고, GATT 事務總長과 WIPO 事務總長이 協議토록 하였는바, 偽造商品의 交易問題를 GATT에서 다루는것이 바람직한가 하는점과 偽造商品

交易을 貿易協定化 하는것이 爭點이었다.

先進國은 GATT의 偽造商品取扱이 國際貿易秩序의 確立에 寄與的이라 하였고, 이에 反하여 開途國은 그러한 協定이 새로운 非關稅障壁으로 惡用될 수 있다는 우려를 表示했다.

### ㉑ 國內 販禁品 輸出禁止

GATT 會員國은 國內에서의 販賣禁止商品을 輸出하는 事例를 GATT에 通報하도록 하고, 1984 年 總會에서 檢討하기로 하였다.

道德, 保健 등을 理由로한 國內販賣禁止品の 輸出을 禁止하는 問題가 爭點이었으며, 이에 關하여 先進國은 傍觀的態度임에 비하여 開途國은 積極的인 입장을 취하였다(韓國은 反對하지 않는다는 中途的立場).

### ㉒ 資本財의 輸出信用

開途國의 資本財 外上輸入時에 적용되는 利子問題를 GATT 事務總長이 關聯된 國家와 協議하여 1983 年 GATT 總會(第 39 次)에 報告토록 하였다

여기서는 적용 利子率을 引下하는 問題가 爭點이었으며, 先後進國間の 立場이 相反되었으나(先進國은 消極的, 開途國은 積極的) 韓國은 中立的인 立場이었다.

### ㉓ 纖維類交易

纖維類貿易에 대한 規制가 미치는 영향과 同規制의 撤廢方案을 研究하여 1984 年の 總會에서 검토기로 하였다. 여기서 섬유류교역상의 規制를 撤廢한다는 것은 同 問題의 GATT 內 運用化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先進國은 既存體制대로 그것을 MFA 體制下에 두기를 원했고, 開途國은 MFA 效力終了時에는 GATT 內로 환원할 것을 主張하였다(韓國은 MFA 終結에 유보적立場을 취하였다).

### ㉔ 特定天然資源의 貿易問題

GATT 理事會가 特定天然資源의 貿易障壁을 緩和하는 問題를 검토키 위

한 절차와 時間, 計劃 등을 決定토록 하였으며, 對象範圍는 水産物, 林産物, 鑛物 및 非鐵金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主要爭點은 當該品目の 交易을 自由化하는데 있었으며, 先進國이 消極的인 立場에 비하여 開途國(특히 最後進國)은 積極的인 立場을 취하였다(韓國은 中立的立場).

#### Ⅾ 換率變動

GATT 事務總長이 IMF 側과 協議하여, 급격한 換率變動이 貿易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의 改善策을 理事會에 提示토록 하였다.

主要爭點은 換率變動이 貿易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에 관하여 先進國은 GATT 內에서 研究할 것을, 開途國은 IMF에서 專擔할 것을 各各 主張하였다.

#### Ⅿ 二重價格 및 原產地 規定

GATT 理事會가 二重價格 및 原產地規定問題를 研究키로 하였으며, 主要爭點은 原資材供給의 自由化를 위한 GATT 役割을 強化하는 문제였다. 이에 관하여 先進國은 二重價格制를 廢止하자는 데에 적극적인 반면 原產地規定을 強化하자는 데에는 소극적이었으며, 開途國은 二重價格을 撤廢하는 데에 消極的인 반면, 原產地規定을 強化하는 데에는 積極的인 자세였다.

#### Ⅿ 서비스交易

서비스交易問題에 관심이 있는 國家는 그 문제를 各國別로 검토하는 한편, GATT 등의 國際機構를 통하여, 關聯情報을 交換, 整理한 후 그 결과를 1984 年 總會에서 검토토록하는 동시에 多者間措置(Multilateral Action)를 取할 必要性도 검토키로 하였다.

主要爭點은 서비스交易을 自由化하는 問題였으며, 이에 관하여 先進國은 서비스交易의 比重이 커짐에 따라 이를 GATT 內에 受容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는 反面에 開途國은 商品交易의 自由化를 먼저 推進할 것을 強調하면서, 서비스交易問題는 先後進國間의 서비스産業隔差 및 서비스産業

의 公共性 등으로 인하여 그것의 즉각적인 開放에는 難點이 있다고 主張하였다.

### 3. 우루과이라운드 農業部門協商

#### 가. 小序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農業部門이라 함은 農產物, 熱帶產品 및 天然資源產品중의 水產物과 林產物 등을 포함하는 概念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 研究는 序頭에서 밝힌바와 같이 農產物과 熱帶產品에 限定하여 協商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前述한바 있는 1986 GATT 閣僚會議宣言을 비롯하여 數次의 우루과이라운드協商 過程을 통해서 밝혀진 農產物과 熱帶產品의 貿易과 관련하여 國家間의 共通認識과 協商의 目的, 範圍와 方法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農 產 物

##### 가) 國家間 共通認識

GATT 締約國團은 世界 農產物市場이 不確實性, 不安定性 및 不均衡性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農產物貿易에 관한 規制와 歪曲措置를 禁止하거나 校正함으로써 世界 農產物貿易에 대하여 規律과 豫測可能性을 더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認識을 같이하고 있다.

##### 나) 協商의 目的

同協商은 農產物貿易 自由化를 擴大하고 農產物輸入 接近과 輸出競爭에 영향을 미치는 諸措置를 GATT의 規定과 規律下에 두도록함에 主된 目的이 있다.

##### 다) 協商의 目的達成을 위한 方法

協商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輸入障壁을 완화하여 市場接近을 개

선하고, 직접 간접의 補助金과 農產物貿易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諸措置에 대한 規律을 강화하여 그들 措置로 인한 惡影響을 緩和하고, 그들 措置의 原因을 分析하여 農產物貿易競爭條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衛生 및 植物衛生上の 規制的 장벽이 農產物貿易에 미치는 惡影響을 最小化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 라) 協商에서의 主要爭點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서 農產物에 관련한 主要爭點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첫째, 協商의 早期妥結問題로서 이에 관하여 美國과 CAIRNS 그룹<sup>6)</sup>은 農產物貿易의 歪曲과 自由化不振의 問題點 및 그 問題의 原因分析過程에 대해서는 論議를 간단히 마치고 早期 實務協商에 들어갈것을 促求하는 반면에 EC, 스위스, 北歐 등 諸國은 그러한 問題點과 原因分析過程을 重視하면서 그것을 계속 검토 논의하되, 實質協商은 보다 慎重히 진행시킬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問題點 檢討와 實質討議가 併行되고 있다.

둘째, 協商의 優先分野는 農產物輸出國(美國과 CAIRNS 國家)이 農產物 輸入障壁을 撤廢하고, 직접 간접의 補助金支給制度를 撤廢하는 동시에 農產物과 工產品의 差等制를 철폐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것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EC 및 기타 輸入國들은 農產物의 過剩生産을 견제하고 輸出補助金の支給을 減縮하는 문제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것을 강조한다.

세째, 農產物小群別(Sub-group) 接近方式을 채택하는 문제로서, EC가 農產物을 8個의 小群으로 分類하여 그 小群別로 世界貿易上の 問題點과 原因 등을 檢討하자고 提議하였으나, 美國과 CAIRNS 諸國은 EC案에 反對하고 있다. 여기서 EC가 提案한 農產物의 8個小群은 穀類, 果實과 菜蔬, 油脂類, 酪農品, 쌀, 설탕, 肉類 및 酒類 등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分類하고 있는 熱帶產品(例: 쌀등)의 一部가 포함된다.

6) 濠洲, 뉴질랜드, 캐나다, 알제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泰國,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퍼지, 항가리

네째, 開途國優待問題로서 泰國, 브라질 등 農產物輸出 開途國이 協商에서 開途國優待原則을 反映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韓國, 에집트 등多數의 農產物輸入 開途國은 農產物輸入 開途國에 대한 特別考慮를 要求한다.

다섯째, 食糧安保 등 農產物의 特殊性에 관한 問題로서 韓國, 日本, 스위스 등은 食糧安保 등 農業의 特殊性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데 反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 主要 農產物輸出 先進國과 開途國은 그것을 反對하고 있다.

여섯째, 既存의 Waiver 措置<sup>7)</sup>에 대한 檢討問題로서 美國등은 各국이 부여받은 既存의 農業關係 Waiver 措置도 協商의 對象에 포함시킬것을 주장함에 반하여 스위스등은 이에 反對하고 있다.

## ② 熱帶產品

### 가) 各國間 共通認識

締約國團은多數의 開途締約國에 있어서 熱帶產品交易이 차지하는 重要性을 인정하며, 同分野의 협상에 특별히 留意하기로 合意하였다.

### 나) 協商의 目的과 範圍

加工 및 半加工形態의 製品을 포함한 熱帶產品貿易의 完全自由化를 목적으로 하되 熱帶產品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關稅와 모든 非關稅障壁을 協商範圍로 한다.

### 다) 協商에서의 主要爭點

熱帶產品 協商에서의 主要爭點은 協商의 早期妥結與否를 결정하는 문제, 協商의 對象範圍에 關稅와 非關稅障壁을 포함한 것인가의 與否問題, 協商의 方法에 있어서는 關稅引下를 Request / Offer 方式을 取할 것인가, 一括引下方式을 택할 것인가 하는 問題, 그리고 開途國優待問題 등으로 集약된다.

7) GATT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例外的狀況下에서, GATT 締約國團이 投票의 2/3 贊成(全體投票의 過半數이어야 함)으로써 範圍 및 基準을 定하여 어떤 加入國의 特定 GATT 規定遵守義務를 免除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의 農業部門協商은 금년에 들어와서 5 次에 걸친 商品그룹회의를 開催하였다. 農產物貿易協商그룹과 熱帶產品貿易協商그룹이 거의 同時的으로 모두 2月, 5月, 7月, 9月과 11月 및 12月 등에 GATT 本部가 所在하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韓國도 물론 現地大使를 비롯한 代表團을 파견, 每 會議마다 參席하여 韓國의 立場을 밝히고, 外國의 立場을 청취, 파악하여 왔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農產物貿易協商그룹會議에서는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問題와 原因의 分析을 비롯하여 農業의 特殊性 考慮問題와 開途國優待에 관한 問題, 協商의 早期妥結問題와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 등이 토의되었으며, 熱帶產品貿易協商그룹會議에서는 同協商에 임하는 各國의 基本立場을 밝힌데 이어, 熱帶產品貿易에 관련한 GATT 作業成果의 評價問題, 熱帶產品貿易協商을 위한 背景文書의 범위 및 協商의 方法과 開途國優待原則問題 등에 관하여 討議되었다<表 5-6>.

## 나. 農產物協商 그룹會議

### ① 1 次會議(1987.2)

우루과이라운드 農產物協商그룹 1 次會議에서는 協商의 早期妥結 問題, 農業의 特殊性을 考慮하는 問題 및 開途國優待原則을 決定하는 問題 등 3 大案件을 主要議題로 討議하였다.

#### 가) 協商의 早期妥結 問題

우루과이라운드 農產物協商에서 論議된 早期妥結 問題는 農產物貿易의 主要問題와 그 原因의 分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귀착된다. 즉, 協商初期段階에서 農產物貿易의 主要問題와 原因을 檢討하는데에 所要되는 期間이 길면 그만큼 實質協商이 늦어지고 그것을 短縮하면 協商의 早期妥結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하여 1 次會議에서는 대체로 農產物輸出國 내지 非補助輸出國과 農業保護國 등으로 二大別하여 立場을 달리 하였다.

우선 農產物輸出國은 農產物貿易에 관한 主要 問題點과 原因의 검토는

表 5 - 6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 協商經過 概要

| 農産物 貿易 協商 그룹會議                                                                                                                                                                | 熱帶産物 貿易 協商 그룹會議                                                                                                                                        |
|-------------------------------------------------------------------------------------------------------------------------------------------------------------------------------|--------------------------------------------------------------------------------------------------------------------------------------------------------|
| <p>1 次會議 (87. 2. 16 ~ 18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産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 問題와 원인 (농산물 비보조수출국, 농업보호국)</li> <li>農産物의 特殊性과 開途國優待原則</li> <li>協商의 早期 妥結問題</li> </ul> | <p>1 次會議 (87. 2. 26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熱帶産物 貿易協商에 관한 各國의 基本立場</li> <li>熱帶産物 關聯, GATT 의 作業 評價</li> </ul>                      |
| <p>2 次會議 (87. 5. 5 ~ 6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産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 問題와 원인 (EC 案 등)</li> <li>農産物貿易을 規律할 基本原則 (美國, 호주, EC 案 등)</li> </ul>                    | <p>2 次會議 (87. 5. 1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熱帶産物 貿易協商 背景文書의 범위</li> <li>協商方法과 開途國 優待原則</li> </ul>                                 |
| <p>3 次會議 (87. 7. 6 ~ 7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産物貿易協商을 위한 美國案 討議</li> <li>農産物貿易을 規律할 基本原則 (日本案)</li> </ul>                                              | <p>3 次會議 (87. 7. 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協商背景文書의 범위 및 協商方法 (계속)</li> </ul>                                                      |
| <p>4 次會議 (87. 10. 26 ~ 27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産物貿易協商을 위한 各國의 提案 討議 (EC, 스위스, CAIRNS)</li> <li>農産物輸入國 非公式會合 (共同試案 作成키로 합의)</li> </ul>                | <p>4 次會議 (87. 10. 4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協商背景文書의 대상범위 및 方法 (계속)</li> <li>EC 案 檢討 (關稅, 非關稅障壁, 부대조건 등)</li> </ul>                |
| <p>5 次會議 (87. 12. 7 ~ 8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産物輸入國 共同試案 討議</li> <li>EC 案과 스위스案 討議 (계속)</li> </ul>                                                    | <p>5 次會議 (87. 11. 12 ~ 1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協商背景文書의 대상범위 및 方法 (계속)</li> <li>農産物熱帶産物의 早期貿易 歪曲撤廢 (關稅引下 및 非關稅障壁 撤廢)</li> </ul> |

資料 : 農林水産部

그동안 各種 國際機構에서 充分히 검토되었으므로 GATT 事務局이 OECD, IBRD 및 農業委員會 등의 報告書를 綜合하는 次元에서 그치고, 이제부터는 그들問題에 대한 解決策을 찾는 實質的인 協商段階로 넘어갈것을 추구하는 反面에,<sup>8)</sup> 農業保護國들은 먼저 이 問題確認 및 原因分析의 단계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農產物貿易協商에 있어서 이 問題確認段階를 短縮하여 協商을 早期妥結하려는 農業輸出國의 試圖에 反對意見을 提示하였다.<sup>9)</sup>

韓國은 물론 農業保護國의 立場에서 各國의 當面한 農業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問題點, 그리고 開途國優待原則과 특히 農產物輸入開途國과 食糧不足國의 事情에 對해 檢討가 未洽하다는 觀點에서 이에 對한 보다 充分한 검토가 있는 後에 實質協商에 들어가야 할것임을 강조하고 農產物輸出國의 利益에 편중한 協商의 早期妥結에는 反對하는 立場을 表明하였다.

#### 나) 農業의 特殊性 考慮問題

國際貿易에서 各國別 農業의 特殊性을 고려하는 問題에 關하여는 美國, 호주, 아르헨티나等 農產物輸出國이 그것을 크게 부각시키는것을 留保하는 立場에 있는 反面, EC, 스위스, 日本 등은 農產物問題가 需給不均衡 등 경제적요인 以外에 食糧安保 社會 및 政治的要因과 환경要因等 경제의

8) 農產物輸入國은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우루과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 CAIRNS Group 國家와 美國 및 파키스탄 등을 포함하며, 그중에서 특히, 美國은 農產物貿易上の 問題와 原因의 검토, 확인은 생략하고 本格的인 實質的協商段階로 들어갈 것을 促求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補助金支給을 통한 國內 農產物市場과 世界市場間의 乖離를 問題點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칠레는 輸出補助金과 生産補助金 및 消費者補助金, 그리고 輸入課徵金, 輸出還給制度, 高關稅, 輸出入割當制, 農地利用規制, 衛生基準등을 主要 問題點으로 지적하였다.

9) 農業保護國의 立場에 있는 國家는 EC, 日本, 韓國, 에집트, 브라질, 中共, 등으로서, 그중에서 특히 共同農業政策을 채택하는 EC는, 問題와 原因의 確認 및 分析하는 段階를 重視하고, 農業과 관련한 모든 問題를 農產物全般과 產品群別에 따라 確認하되, 그 원인 규명도 충분히 反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하여 統計數値의 整理, 產品群別 問題點 確認, 원인 규명등 3 단계 작업을 提案하면서 協商의 早期妥結을 反對하였다. 日本은 農產物問題가 需要를 고려치 않은 過剩生産에서 야기하며, 食糧自給의 필요성 등과 같은 農業의 特殊性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點을 강조하였고, 스위스는 農產物 問題가 단순히 市場接近이나 市場自由化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需給不均衡과 같은 經濟的 要因과 國家安保 및 環境要因 등 經濟外的 要因도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다.

적인 要因이 同時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韓國은 農業(農產物)이 需給不均衡 및 價格의 不安定性和 낮은 生産性 등의 경제적 特性 이외에 構造調整에 많은 投資費用과 장기의 期間이 所要될뿐아니라 農業의 환경보존기능 등의 特殊性이 있다는 點과, 農業이 食糧의 長期安定的 供給保障을 爲한 最小限의 自給능력유지가 必要하며 農民의 所得保障과 農村生活여건의 개선이 重要한 課題이라는 點, 그리고 이와같은 農業의 特殊性和 重要性에 비추어 農產物貿易은 경제적 측면뿐아니라 政治, 社會, 環境等 要素인 要素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表明하였다.

#### 다) 開途國優待原則을 認定하는 問題

開途國에 對한 優待原則을 認定하는 問題에 關하여는 開途輸出國과 開途輸入國이 共히 開途國優待原則을 主張하였다.

특히 中共, 에집트, 브라질等 開途輸出國은 農產物貿易上 開途輸出國의 難點을 지적하면서 開途國優待原則遵守를 要望하였다. 韓國은 農業部門에서의 構造的脆弱性이 農產物의 國內外 價格差를 크게 할뿐 아니라 國內農業과 農家保護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農產物貿易協商에서 輸入開途國으로서의 立場이 考慮되어야 한다.

#### 라)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와 政策에 關한 補完資料提出 및 읍서버 參加問題

그밖에 農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各國의 諸措置와 政策에 關한 資料를 補完할 問題와 UR 협상에서의 읍서버참가問題가 다루어졌는데 補完提出 問題에 關하여 事務局은 參加國들이 最新資料로 補完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EC, 스위스等は 關聯措置의 必要성과 法的근거, 영향의 計量化 等を 追加할것을 主張하였으나 作業의 반대성과 主觀介入의 可能性 等を 고려하여 結局 事務局의 提案을 채택하되 追加 說明資料를 첨부키로하였다.<sup>10)</sup>

10) 國別資料補完 提出 요청에 따라 韓國은 CCCN 4 單位基準 22 個品目에 대하여 韓國이 취하고 있는 措置事項을 提示하였는바, 農安基金은 收買備蓄用으로 마늘, 양파, 무우, 배추,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땅콩, 참깨, 진멸치, 건오징어, 김 등 15 個品目에, 畜産基金은 價格支持用으로 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4 個品目에, 그리고 農協資金은 收買備蓄用으로 팔, 녹두, 大豆 등 3 個品目에 各各 支援되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읍서버참가문제는 UN, UNCTAD, IMF, IBRD, WIPO, FAO, ESLA(Economic System of Latin America), 聯邦事務局(Common Wealth Secretariat) 등 8 個機關이 읍서버資格을 신청하였으며, 그중에서 FAO가 農產物그룹에의 읍서버資格을 신청하였는 바, 아르헨티나 제의에 따라 FAO, UNCTAD, IBRD 등이 후보로 선정되었다. 특히, 문제 確認段階에 未盡感を 表明했던 EC는 次期會議에 自體案을 提示할 것을 示唆하였다.

## ② 2次會議(1987.5)

UR 農產物協商그룹 2次會議에는 農產物貿易의 主要 問題와 原因(계속), 그리고 農產物貿易을 規律할 基本原則 등이 主要 의제로 다루어졌다. 1次會議時와 마찬가지로 EC, 北歐, 스위스, 日本 등은 問題의 診斷을 강조하는 반면에, 호주를 비롯한 農產物輸出國들은 農產物交易原則 등 實質協商을 早期에 착수하자는 立場이었다.

### 가) 農產物貿易의 主要 問題와 原因(EC案)

EC는 進술한 바와 같이 農產物을 穀物, 果菜類, 植物性油脂類, 酪農製品, 쌀, 설탕, 肉類 및 酒類와 飲料 등 8 個分野로 區分하여 각 문제와 問題別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1) 穀 物

農產物中 穀物の 貿易에 관한 問題點으로는, 첫째, 1980 年 이후 農產物 輸入國과 수출국의 生産量이 동시에 증가하여 世界穀物市場에서의 供給過剩狀態를 招來하고 있다는 點과,

둘째, 供給過剩으로 인한 波及效果로서 輸出信用, 輸出補助金 등에 의하여 수출국간의 수출경쟁을 유발하고, 價格下落과 在庫增加를 招來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두 問題의 原因으로는, ① 國家安保와 貿易收支均衡을 위한 開途國의 食糧自給度 向上(印度, 中共 등), ② 1970 年代의 食糧을 의식한 主要 輸出國(EC, 美國, 호주, 캐나다 등)의 生産支援政策으로 인한 生産國

增加, ③ 아프리카地域 開途國의 外貨不足과 貯藏 및 運送上의 構造的 問題로 인한 世界 穀物輸入(交易)의 不安定性, ④ 穀物の 生産, 價格, 市場 政策 등에 대한 國際間的 걱정수준에 관한 合意와 基準不在, ⑤ 國營貿易 獨占慣行 및 輸出入禁止政策 등을 제시한다.

#### (2) 果 菜 類(과일 및 채소)

果菜類貿易上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果菜類는 季節的 特性으로 인한 季節的輸入制限, 補助金支給에 따른 相計關稅賦課, 기타 植物檢疫規制 등으로 當該 品目の 무역이 곤란해지고 있으며, 둘째, 사과, 감귤류 등은 生産의 계속적인 增加와 過剩生産이 當該 品目の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果菜類貿易上 問題點의 原因으로는 ① 保護措置로 인한 季節的 및 地域的인 過剩生産, ② 一部供給者側의 供給 등을 제시한다.

#### (3) 植物性油脂類

植物性油脂類의 貿易에서는 構造的供給過剩 현상이 아닌데도 數年間(1984~86年) 價格이 현저히 下落한 點이 문제이며, 東南亞地域의 淸油增産, 大豆의 價格下落 등을 그 原因으로 지적한다.

#### (4) 酪農製品

酪農製品의 貿易에서는 세계 酪農國家의 供給市場이 長期的인 需給不均 衡狀態에 있으며, 在庫가 크게 누적되고 市場이 不安定한 點 및 換率變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原因으로는 ① 遺傳工學의 發展과 構造改善 등으로 供給이 현저히 증가한 점, ② 牛乳生産에 영향을 미치는 飼料穀物の 價格下落, ③ 生産支持政策, ④ 버터, 치즈 供給過剩國의 消費性向 減少, ⑤ 一部國家의 輸入制限과 產油國의 景氣後退로 關聯製品의 輸入減少 등이 지적되었다.

#### (5) 쌀

쌀은 최근 수년동안 世界 쌀價格의 下落勢, 生産량과 輸出可能量의 증가에 反하는 需要의 減少勢, 輸出國間的 경쟁심화로 인한 價格의 下落 등이 문제이며, 그에 대하여 ① 과거에는 쌀을 輸入하던 開途國의 自給達成 ② 生産增加와 消費減少로 인한 價格의 下落, ③ 一部 국가의 外換不足으로 인한 輸入減少, ④ 外換市場에서의 달러價値 下落 등이 原因으로 分析

되었다.

#### (6) 雪 糖

설탕의 무역에 있어서는 첫째, 6~7年 周期의 과잉공급과 品貴現象 間의 순환유형(1987年 品貴豫想年度로 보고 있음) 둘째, 開發途上輸出國의 財政難과 長期間의 價格下落 등의 문제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① 1973~74年과 1980~81年의 品貴現象 傾向에 영향을 받아 모든 輸出國과 一部 輸入國의 生産增加, ② 代替商品類 사용의 增加, ③ 外換不足으로 인한 開途國의 輸入減少, ④ 生産 및 貿易政策에 대한 國家間的 協助 體制未洽 등이 지적되었다.

#### (7) 肉 類

世界 肉類貿易에서는 牛肉등 肉類의 과잉供給으로 인한 價格下落이 문제점으로 論議되었으며, 그 原因은 ① 生産 cycle, ② 질병발생지역과 其他地域間的 品質隔差 問題, ③ 牧草飼育 畜種과 穀類飼育 畜種間的 生産 期間 격차, ④ 飼料곡물의 價格下落 등으로 지적되었다.

#### (8) 酒類와 飲料

酒類의 貿易은 輸入國別 差別待遇와 原產地規定 不考慮 등이 問題點으로, 飲料의 貿易은 輸入國差別待遇 등이 問題點으로 各各 舉論되고, 그 원인은 酒類가 ① 消費減少, ② 健康 및 宗教上的 消費制約, ③ 高級酒의 과잉생산과 下公正 경쟁 등으로, 飲料가 ① 國內市場 保護, ② 貿易收支保護 등으로 지적되었다.

위의 提案과 더불어 EC는 農業의 特殊性을 무시하고 工產品과 農產物을 같은 次元에서 취급하는것이 非現實的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이러한 지적을 경시하고, 兩者를 同一視할 경우 緊急措置가 만연함으로써 世界貿易秩序는 현재보다도 더 後退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EC가 쌀을 穀物과 區分 分類하여 각각 따로 다루고 있다는 點과, 그와 같은 分野別接近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異見이 제시되었다.

農產物輸入國의 立場에 있는 日本은 쌀과 穀物의 區分 分類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하였으며, 分野別接近方式에 대해서도 農產物 各分野에 적용하

고 있는 各種規制措置가 쉽사리 노출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에서 주저의 뜻을 보였다. 한편, 農產物輸出國의 立場에 있는 파키스탄도 위의 두가지 점에 대하여 反對 意思를 表明하였다.

農產物貿易에 있어서의 主要 問題點과 原因에 관하여는 그밖에 北歐와 아르헨티나 등도 意見을 提示, GATT 事務局이 各國의 見解를 두루 망라하는 범위내에서 종합하였다.

우선 北歐는 農產物需給의 不均衡 즉, 農產物의 供給過剩이 問題點이며, 그 原因은 技術進步와 生産性向上, 多數國家의 自給率向上, 農產物輸入國의 自給達成, 潛在的 輸入國의 外換不足, 그리고 農業勞動力을 他産業으로 移轉하는데에 대한 社會的, 構造的인 制約要因의 存在등이라고 지적하였고, 아르헨티나는 農產物貿易上의 問題點을 需給不均衡, 在庫增加, 價格沈滯 등과 그에 따르는 成長率과 投資率의 減少, 外債增加 및 資源配分の 歪曲 등으로 보고, 그 原因을 價格支持政策, 要素費用과 無關한 生産增加, 效果的인 多者間規範의 未治 및 國內 構造調整體系의 弱化 등에서 찾고 있다.

한편 GATT 事務局은 以上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그동안 入手된 情報과 資料를 근거로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問題와 原因을 다음과 같이 集約하고 있다. 즉, ① 農產物의 需給不均衡과 價格下落 및 過剩供給 ② 國內生産을 國際價格메카니즘에서 분리시키는 政府의 補助政策 및 保護主義的措置 ③ 效果的인 GATT 規定의 결여와 效果的 規定 確立을 위한 各國의 意志 微弱 ④ 農業의 特殊性問題 ⑤ 開途國優待原則의 效果的運用 失敗 등으로 보고있다.

나)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

農產物協商그룹會議에 提示된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案은 美國案, 濠洲案 등이나 2次會議에서는 미국과 호주가 提案을 하였고, 日本은 3次會議時에 提案하였다.

#### 美國案

##### (1) 一般原則

美國은 農產物交易의 一般原則을 農產物의 生産, 消費 및 輸出入 등에

영향을 미치는 政府政策은 農產物貿易이 市場經濟原理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하며, GATT의 規定가 原則에 따라서 한다고 제안한다.

## (2) 國內政策

各國은 國內 農業政策이 國際貿易에 미치는 惡影響을 除去하여야 하며, 國內農業政策은 農產物의 需給이 市場經濟原理에 의하여 決定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農業部門의 所得支持는 市場價格이나 生産量의 決定에 대한 政府介入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3) 市場接近

各國은 農產物輸入량을 줄이는 直接, 間接의 政策을 廢止하고 農產物輸入에 대한 最惠國待遇原則과 內國民待遇原則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4) 輸出支援

各國은 農產物輸出량을 늘리는 直接, 間接의 政策을 廢止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健康 및 衛生規定

食糧, 動植物 및 農業環境의 衛生과 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은 無差別의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同規定은 可能한 한 國際의으로 승인된 기준에 부합하고, 供給國에서 同規定의 동등한 效力을 인정하는 方法으로 輸入品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美國案에 관하여 호주와 캐나다 등은 호주안과 유사하다는 認識下에 호의적시각에서 받아들였으며, 泰國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輸出補助項目과 관련하여, 援助등과 같은 非商業的인 農產物供給으로 市場을 교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㉔ 濠洲案

호주안에서는 먼저 基本原則을 설정한 후에 이 기본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 基本原則

- 국제농업무역은 各國에서 比較 優位論에 입각해야 하며,
- 長期的으로 農業貿易은 다음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一 政府政策은 국제농업무역에 대한 政府介入으로 인하여 야기하는 歪

- 曲과 惡影響을 제거하여야 하며(農產物 輸出補助金撤廢, 國內市場을 開放하여 安定的이고 예측가능한 市場接近과 競爭機會를 提供)
- 國內農產物市場을 國際市場價格水準에서 완전히 開放하는 동시에
  - 農業과 他部門間에 GATT 規定 및 關聯裝置(Instruments)의 差別適用禁止 및 現行農業에 대한 特別條項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2) 履行方案

호주안에서는 上記 基本原則의 履行을 위하여 1 次的으로 保護主義를 철폐하는 방안과, 기타 關連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 第 1 次的 方案으로는

- 農業貿易에 대한 市場接近障壁의 廢止와
- 補助金 및 世界農業貿易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廢止등을 통하여 基本원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 ○ 第 2 次的 方案으로는

- 生産者價格과 無關한(分離된) 所得支持措置
- 國內管理價格과 國際市場價格間의 격차감축
- 衛生 및 植物衛生規定의 위장적 貿易障壁機能禁止
- 모든 協商對象措置의 漸進的 自由化
- 貿易의 自由化와 農業政策의 調整은 多者間協商을 통하여 全 品目の 農產物에 걸쳐 실시
- 構造的 供給過剩國家는 世界市場을 곤란하거나 世界市場에 미치는 악影響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表 5 - 7 農産物 貿易을 規律할 基本原則

|                     | 濠 洲 案                                                                                                               | 美 國 案                                                                                                      | 日 本 案                                                                                                            |
|---------------------|---------------------------------------------------------------------------------------------------------------------|------------------------------------------------------------------------------------------------------------|------------------------------------------------------------------------------------------------------------------|
| 1. 農産物 交易<br>의 一般原則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比較優位論</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場經濟原理</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效果的인 市場機能保障(시장경제원리)</li> <li>- 단, 食糧安保, 環境保存, 雇傭 등 사회적 요인 고려</li> </ul> |
| 2. 市 場 接 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內市場開放, 안정적이고 豫測可能한 시장접근 제공</li> <li>• 국내 농산물시장의 國際價格 영향에의 完全露出</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入에 直·間接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政策廢止</li> <li>• 最惠國待遇 및 內國民待遇原則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장벽 緩和</li> <li>• 농업의 特殊性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통한 輸入制限</li> </ul>               |
| 3. 補 助 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補助金 기타 지원 조치 廢止</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國內政策廢止</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보조금 原則的禁止</li> <li>•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 均衡있고 彈力的인 방법으로 농업보조 減縮</li> </ul>   |
| 4. 所得支持 措置의 分離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지지조치의 生産者 價格으로부터의 分離</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價格 및 生産量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방법으로 所得支持(시장메카니즘과 農民所得 水準分離)</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衛生 基準에 의한 貿易障礙 效果를 最小化</li> </ul>                                       |
| 5. 衛 生 規 定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衛生 및 植物衛生 規定의 무역장벽기능의 禁止</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無差別的의 適用</li> <li>• 國際的으로 承認된 기준에 附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偽裝의 무역장벽 除去</li> </ul>                                                  |
| 6. 其 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 規定上 農산물무역과 他部門 무역간의 差別禁止</li> </ul>                                   |                                                                                                            |                                                                                                                  |

表 5 - 8 미국, EC의 農産物貿易 關聯措置 通報內譯

| 항 목                     | 미 국                                                                                                                                                                                                                                                              | E C                                                                          | 비고(한국)           |
|-------------------------|------------------------------------------------------------------------------------------------------------------------------------------------------------------------------------------------------------------------------------------------------------------|------------------------------------------------------------------------------|------------------|
| 生産 및 貿易<br>에 미치는 措<br>置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價格支持 (price support) 13 개 (우유, 밀, 보리, 옥수수, 땅콩)</li> <li>• 所得支持 (income support) 6 개 (밀, 보리, 옥수수 등)</li> <li>• 供給調節事業 (supply management programme) 9 개 (우유, 밀, 보리, 옥수수, 땅콩 등)</li> <li>• 補助(subsidy) 1 개 (쌀)</li> </ul> | 25 (밀, 옥수수, 보리, 귀리, 수수 등)<br>6 (옥, 식용설육, 신선우유 등)<br>5 (우유, 채소, 밀, 옥수수, 보리 등) | 5<br>—<br>2<br>— |
| 輸入에 미치는<br>措置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賦課金(levy) 6 개 (포도주, 담배 등)</li> <li>• 輸入制限 (import restriction) 12 개 (우유, 버터, 치즈 등)</li> <li>• 衛生規制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 2 개 (생축, 우유)</li> </ul>                                                      | 61 (밀, 옥수수, 콩, 쇠고기, 치즈 등)<br>5 (포도, 냉동과실 등)<br>12 (소, 돼지 등)                  | —<br>95<br>55    |
| 輸出에 미치<br>는 措置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融支援 (credit) 1 개 (생축)</li> <li>• 補助 (subsidies) 9 개 (가금류, 밀, 보리 등)</li> <li>• 其他支援 (other assistance) 13 개 (밀크, 밀, 옥수수 등)</li> </ul>                                                                                   | 2 (밀크, 버터)<br>61 (곡물, 유제품, 설탕, 쇠고기, 과일 등)<br>—                               | —<br>—<br>—      |

資料 : 農林水産部.

前述한 바와 같이 農産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에 關하여는 第3次 會議에서 제시된 日本案을 포함하여 3個國案이 있는데 이들 3 개 국안은 다음표의 내용과 같이 集約될 수 있다.하다.

다만, 이들 3 개안中 호주案과 美國案은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해야 한다는 點에서 類似한 내용이지만 美國案이 보다 完全한 自由化를 指向하고 있

으며, 또 日本이 제안하는 部分的 市場經濟原理論은 食糧安保 등 社會的 要因과 農業의 特性을 반영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完全한 市場經濟原理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示唆하고 있다 <表 5-7 參照>.

#### 다. 農業의 特殊性을 인정하는 問題와 開途國을 優待하는 問題

農產物協商그룹 2次會議에서는, 그밖에 農業의 特殊性 認定問題와 開途國優待問題가 다루어졌는 바, 農業의 特殊性을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美國, 호주 등 農產物輸出國은 이것을 가급적 부각시키지 않으려 하였으며, EC, 스위스 등 農產物輸入國은 需給不均衡 등 經濟的 要因과 그 밖에 食糧安保, 社會政治的 要因 및 環境的 要因 등 經濟外的 要因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農業의 特殊性을 인정하여야 하는 主張이었다.

開途國優待問題에 관하여는, 그동안 開途國優待原則이 GATT 體制內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開途國들의 立場이고, 先進國의 立場에서는 이 原則을 인정은 하나 前記 一般原則이 먼저 定立된 후에 구체적인 開途國優待問題를 다루는 것이 合理的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 라. 옵서버 推薦問題와 農產物交易關聯 各國 資料補完 提出件

農產物協商회의 옵서버 추천문제는 UNCTAD, IBRD, IMF, FAO 및 UN(事務局)등을 옵서버로 推薦키로 하였으며, 各國의 農產物貿易關聯資料 補完提出問題와 관련하여는 美國이 生産 및 貿易에 대한 措置 29件, 輸入에만 영향을 미치는 措置 20件, 輸出에만 영향을 미치는 措置 23件 등을 제시하였고, EC는 生産 및 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 45件, 輸入에만 영향을 미치는 措置 78件 및 輸出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치 63件등을 提示하였다<表 5-8 參照>.

韓國은 生産 및 貿易關聯 조치가 소, 돼지, 닭, 마늘, 양파, 고추, 쌀, 보리 등 8個件과, 輸入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185個件, 輸出에만 영향을 미치는 措置가 42個件 등에게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通報하였다 <表 5-9 參照>.

表 5-9 韓國의 農産物交易制度 補完資料 提出 通報內譯, 1987. 5

| 항 목                                                                      | 통 보 내 역                                                                                       | 비 고                                                                                            |
|--------------------------------------------------------------------------|-----------------------------------------------------------------------------------------------|------------------------------------------------------------------------------------------------|
| 1. 生産 및 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br>○ 價格支持<br><br>○ 供給調節事業                         | - 소(0102), 돼지(0103), 닭(0105)<br>- 마늘, 양파(0701), 고추(0904)<br>- 쌀(1006), 보리(1003)               | - 畜振基金에 <sup>o</sup> 의한 收買 備蓄 사업을 통한 價格下落 防止<br>- 農安基金에 의한 價格 安定事業<br>- 비상시 食糧安保의 側面에서 備蓄事業 실시 |
| 2. 輸入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br>○ 輸入制限<br><br>○ 총량쿼터<br>○ 衛生 및 植物衛生規制<br><br>○ 國營貿易 | - 95개 품목<br><br>- 23개 품목<br>- 55개 품목<br><br>- 연초(2401), 제조연초(2402)                            | - 輸出入公告 및 통합공고상 輸入推薦 및 禁止品目<br><br>- 植物防疫法, 家畜傳染病 豫防法, 食品衛生法                                   |
| 3. 輸出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br>○ 輸出制限<br><br>○ 國營貿易                                | - 37개 품목(CCCN 4단 위 기준)<br><br>- 인삼(1207), 홍삼(1303) 인삼 및 홍삼조제품(2107)<br>- 연초(2401), 제조연초(2402) | -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상 輸出推薦 및 禁止品目                                                                    |

### Ⅱ 3次會議(1987. 7)

UR農產物貿易協商그룹 3次會議에서는 農產物補助金 및 貿易障壁 撤廢에 관한 美國案과,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에 관한 日本案이 主要議題로 다루어졌다.

#### ☐ 美國案

##### (1) 基本目標

- 農產物貿易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補助金制度는 向後 10年以內에 完全히 철폐할 것(輸出補助金を 받아 輸出하는 輸出物量의 凍結 및 漸進的 減縮)
- 기타 모든 輸入障壁을 向後 10年以內에 단계적으로 合意된 基準과 國內規定과의 一致, 加工 및 生産方法의 導入 등

##### (2) 履行方案

- 第1段階(補助水準의 測定裝置와 減縮計劃에 대한 合意) ;
  - － 生産者補助等價値(PSE) 概念을 導入하여 各國이 실시하고 있는 農產物支援總量(Aggregate Support)을 測定하고,
  - － 撤廢 내지 緩和對象措置로는 生産 및 販賣가 無用(decoupled) 한 直接所得支援 등 國內外 및 기타 措置를 포함하며,<sup>11)</sup>
  - － 同 措置의 對象品目は 農產物, 食料品, 林產物 및 水產物과 同 加工品을 포함한다.
- 第2段階(補助金 減縮計劃 實踐을 위한 구체적인 政策變化에 대한 他締約國의 同意)
  - － 各國의 支援減縮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은 10個年計劃을 樹立하여 검토토록 하고,
  - － 過渡期에는 各國의 每年度別 履行狀態를 검토하며,

11) 其他措置란 輸入割當制, 可變賦課金制, 最低輸入價格制, 關稅, 國營貿易, 輸出補助金, 輸出信用, 金利支援, 安定基金에 의한 財政負擔, 政府備蓄, 缺損補填, 수송, 가공, 검사 등 流通事業, 기타 研究 및 諮問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概念이다.

- '86年 GATT關係宣言 이후에 취한 措置를 우선적으로 撤廢 (Rollback)케 하고,
- 過渡期間中에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의 節次를 導入하여 紛爭解決에 관한 特別規則을 제정하고 監視節次를 確立하게 한다.
- 過渡期間 經過以後에 적용할 GATT規定의 변경내용에 관한 協商을 開始키로 하였다.

### (3) 美國案에 대한 各國의 反應

① CAIRNS Group 國家를 포함한 農產物輸出國은 美國案이 意慾의이며, 포괄적인 提案이라고 評價하고 支持意思를 表明하였다.

② 호주는 農產物支援의 總量測定과 對象品目の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환기하고, 美國이 제안한 保健 및 衛生基準의 調和論은 閣僚宣言의 委任限界를 벗어난다고 지적하였으며, 1988年末까지의 早期妥結을 위한 잠정조치에의 合意可能性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ASEAN 국가도 早期妥結의 重要性을 강조).

③ 캐나다는 包括的인 接近方式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各國의 Waiver<sup>12)</sup>, 可變課徵金, 輸出自律規制, 關稅讓許도 동시에 검토할 것과 現行 紛爭解決節次 및 補助金規定의 未洽를 지적하였다.

④ 칠레는 美國案이 SS/RB 등 短期措置, 對象品目の 加工度別稅率隔差制, Waiver 등에 관한 具體的인 言及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⑤ 스위스는 美國案이 農產物과 工產品과의 區別을 없애는 등 지나치게 야심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지적하고, 補助金問題와 관련하여 세계市場의 公平한 占有率과 輸出에 미치는 직접, 간접의 영향을 측정하는 方法과 주체에 대하여 의문(PSE의 非現實性 등)을 제기하였다.

⑥ EC는 美國案이 農產物에 관한 문제를 工產品이나 서비스交易分野보다 앞서가고 있는 등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食糧安保 등 現實與件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12) GATT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例外的 狀況下에서, GATT 締約國團이 投票의 2/3 贊成(全體投票의 過半數이어야 함)으로써 範圍 및 基準을 定하여 어떤 加入國의 特定 GATT 規定遵守 義務를 免除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⑦ 日本은 美國案이 지나치게 혁신적이라고 지적하고, 農産物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어느정도의 國內補助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美國案의 모든 補助金의 撤廢主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⑧ 韓國은 美國案이 전반적 개혁을 상징하고 있으나, 食糧安保 등 農産物의 特殊性, 各國의 相異한 與件, 개도국의 構造調整上的 難點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 日本案

日本案에서도 協商의 一般原則과 市場接近, 補助金 및 衛生基準 등을 주로 다루었다.

### (1) 一般原則

食糧安保, 環境保護, 전반적인 雇傭水準 등 非經濟的인 要因도 고려되어야 하며, 農業政策의 長期目標은 보다 효과적인 市場機能을 保障하여야 한다.

### (2) 市場接近

輸入障壁緩和에 의한 市場接近改善을 摸索하고, 農産物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條件下에 輸入規制를 허용하도록 한다.

### (3) 補助金

農産物輸出補助金은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農産物에 대한 國內補助金은 農産物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均衡있게 緩和한다.

### (4) 衛生基準

衛生基準에 의한 貿易障壁效果를 最小化한다.

## ▣ 熱帶產品協商 그룹會議

'86年 GATT閣僚宣言에서 알 수 있듯이 熱帶產品分野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의 目的은 加工 및 半加工 등의 形態를 不問하고 熱帶產品貿易의 完全自由化를 이루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熱帶產品의 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關稅와 모든 非關稅障壁을 완화 내지 철폐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GATT締約國團은 대부분의 開途締約國에 있어서 熱帶產品交易이 占하는 重要性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의 時限과 協商結果의 履行問題에 있어서 이 分野協商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에 同意하였다.

同 分野의 協商은 初期段階에서는 協商開始直前까지 GATT에서 실시한 熱帶產品 貿易自由化 關聯作業內容을 討議하고 協商에 필요한 背景資料를 수집 정리하며, 參加國의 提案을 접수하고 協商의 方法 등에 관하여 討議기로 하였다.

일단 初期段階를 지나면 後續的인 協商을 진행하되 初期段階에서 이루어진 作業을 기초로 하여 1988 年에는 協商을 조속히 진행키로 하였다.

#### (1) 1 次會議 (1987. 2)

'86 年 GATT 閣僚宣言의 內容대로 UR 熱帶產品協商 1次會議에서는 各國의 基本立場과 GATT의 熱帶產品關聯作業內容, 協商資料整備 등에 관하여 討議하였다.

1 次會議에서 表明된 主要國의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다.

ASEAN 諸國과 스리랑카, 멕시코, 브라질 등 開途國은 閣僚宣言에 明示된 協商의 早期妥結 및 早期履行과 相互主義排除原則을 강조하고 關稅와 數量制限, 衛生規制, 內國稅, 補助金 등 모든 分野에서 熱帶產品의 貿易自由化를 達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노르딕국가와 뉴질랜드, 호주 등이 開途國立場을 支持하였음).

이에 반하여 美國, EC, 日本, 스위스 등 先進國은 熱帶產品의 貿易自由化가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에서의 優先分野임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오직 協商의 一部로만 인식되어야 하며, 開途國의 開發程度에 相應하는 制度上의 혜택만이 주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日本은 특히 熱帶產品의 定義와 需要供給問題를 다루고자 제의하였다.

한편, 美國과 日本은 熱帶商品 背景文書의 범위를 開途國 등 모든 國家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하여 말레이지아는 開途國 자료포함요구는 지금까지의 作業慣行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韓國은 GATT 貿易開發委員會에서 협의된 熱帶產品 7個產品群 중에는 쌀, 담배, 양념류 및 花卉類 등 韓國의 農產物과 重複되는 品目이 있으므로 우선 熱帶產品에 대한 明確한 개념의 정립과 協商對象品目の 선정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重複品目は 쌀 등과 같이 韓國의 主要戰略品目이거나 國際競爭力

이 없는 품목이 있으며, 따라서 協商의 對象品目은 最低開途國의 共通生産熱帶產品을 중심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同分野 協商의 早期妥結도 自意的으로는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 (2) 2次會議(1987.5)

UR 熱帶產品그룹 第2次會議에서는 協商背景文書處理(資料配付와 範圍擴大) 協商方法論 및 開途國優待原則問題 등이 討議되었다.

### ① 協商背景文書の 範圍擴大問題

EC는 同背景文書の 대상범위를 開途國의 既存 및 主要 潛在市場(Potential greater market)뿐 아니라 消費側面도 擴大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反하여 멕시코, 브라질, 파키스탄, 에집트 등은 이 對象範圍擴大問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協商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北歐와 캐나다는 對象範圍의 擴大는 찬성하나 그로 인하여 協商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별도의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 ② 協商方法

ASEAN은 品目別 關稅率은 先進國의 最低稅率水準으로 인하하고 各 熱帶產品 輸出國이 自國의 關心品目리스트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사무국이 분류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미국, 일본, 北歐 등은 關稅引下와 관련하여 品目別 Request / Offer方式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EC는 특별관심분야에 대하여 關心國 모두가 참여하는 多者間協商에 의한 Offer/Negotiation方式을 제시하면서 추후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③ 開途國優待原則

熱帶產品協商에 있어서는 開途國優待原則과 관련하여 스위스와 EC등은 讓許의 交換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에집트, 브라질, 파키스탄, 쿠바 등은 열대산품이 開途國의 特別關心品目인 바, 우루과이 閣僚宣言(B項)에 따라 先·開途國間의 非相互主義原則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옵서버國際機構추천

미국은 옵서버국제기구초청을 위한 지침으로서 關聯協商그룹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에 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UN, UNCTAD, IMF, IBRD 및 FAO등을 초창기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ASEAN, 멕시코, 캐나다 등이 옵서버국제기구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UN, UNCTAD, IMF, IBRD 등에서의 자격부여문제를 유보하자고 제의하였다.

결국 의장직권으로 FAO에만 옵서버자격을 주고 기타기구에는 계속 論議기로 결정하였다.

#### (3) 3次會議 (1987.7)

3次會議에서의 主要議題로 事務局의 背景文書對象範圍擴大問題(繼續)와 協商關係 各國의 立場 및 協商方法 등이 討議되었다.

##### ① 背景文書 對象範圍 擴大

EC, 미국, 뉴질랜드, 日本, 캐나다 등은 熱帶產品輸入市場의 全體 狀況 把握을 위하여 현재 11個先進國에 국한되어 있는 事務局背景文書의 對象範圍를 擴大하여 主要 開途國까지를 포함토록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北歐와 호주가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리랑카, 인도, 에집트 등은 同 對象範圍를 先進國市場으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범위확대시도는 協商의 지연작전이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의장은 非公式會議를 거쳐 次期會議까지 타협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 ② 協商에 관한 各國의 立場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쿠바, 에집트,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은 先進 11個國을 대상으로 輸出關心 熱帶產品의 잠정리스트를 作成 提出하고 이들 品目에 대한 貿易自由化를 요청하였다.

○ 말레이시아는 ASEAN을 대표하여, 각국이 輸出關心熱帶產品

品目리스트를 제출하고, 사무국이 同리스트를 綜合 分類하며, 사무국이 關稅 및 非關稅措置等 關聯資料를 작성하여, 협상그룹에서 이를 品目別로 檢討, 先進國이 關稅率을 現行 最低水準으로 引下하고 非關稅障壁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종래의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뉴질랜드는 次期總會時까지 書面提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非加工 熱帶產品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加工熱帶產品에 대해서는 加工度別 差等關稅制를 완화하며, 非關稅障壁을 緩和 내지 제거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EC는 BRUSSELS에서 熱帶產品協商에 관한 지침을 작성중이라고 밝히고 熱帶產品 協商分野에서의 負擔과 혜택이 참가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며 모든 참가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 콜롬비아, 멕시코는 UR 個別協商 그룹내에서 균형이 유지될 필요는 없으며, 開途國의 特別關心分野인 熱帶產品分野에서는 開途國의 利害關係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UR 협상의 전체적인 均衡을 강조하였다.

### ③ 協商方法

○ 협상방법과 관련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이 一般適用方式(Formula)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日本, 美國 등이 각국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R/O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 北歐(노르웨이)는 2次會議時 EC가 제시한 Offer/Negotiation 방식에 관심을 표명하고 복수의 협상방식을 융통성있게 運用하자고 제의하였다.

## 4. UR協商的 主要 中間結果 要旨 및 對韓示唆

전술한 바와 같이 UR는 今年에 協商的 테이블을 열고 年末까지 5차례의 農業部門會議를 가졌으나 역시 初期段階로서 현황을 개관하고 相關問題와 그 要因을 찾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 協商은 앞으로도 數年동안 계속될 것이며, 協商的 主要

案件이 妥結될때까지 協商內容은 점점 구체화해 갈 것이다.

이 研究에서는 관련자료 등 制約性 때문에 農產物貿易協商과 熱帶產品貿易協商에 관한 3次會議 結果까지만을 다루었으나, 그때까지의 協商結果만이라도 정리해 봄으로써 우리의 對應方案을 찾는 데 참고코자 한다.

## 가. 主要 中間結果

協商的 中間結果는 대략 協商的 焦點,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問題와 原因,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 등으로 大別하여 정리될 수 있다.

### ① 協商的 焦點

지금까지 우루과이라운드 각 品目別 그룹會議에서 進행된 協商的 焦點은 協商的 接近方法과 協商的 早期妥結問題 및 協商에서 다루어야 할 分野別 優先順位 등에 맞추어 왔다.

協商的 接近方法으로는 各國이 제출한 農產物 및 熱帶產品貿易 關聯背景文書를 근거로 GATT事務局이 分析한 結果를 參照하고, 分野別 協商그룹會議에서의 討議를 통하여 各國의 意見을 收斂하면서 妥結點의 摸索을 시도하여 왔다.

協商的 早期妥結與否에 관하여는 美國, 호주 등 先進農產物輸出國과 輸出開途國의 대부분이 農林水產物 貿易協商을 早期에 妥結하고, 輸入自由化를 조속히 擴大할 것을 주장하는 反面, EC 등 大部分의 農產物輸入 先·開途國은 同協商的 早期妥結을 反對하고 輸入開放擴大를 주저하는 立場을 취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進행된 協商에서 다루어진 優先分野로는 輸出國이 輸入障壁과 補助金制度 및 農工產品間의 差等化를 撤廢할 것 등을 強調하였으며, 輸入國은 農產物需給不均衡을 是正하는 문제와 食糧安保 및 農業의 特殊性을 考慮할 것 등을 強調하였다.

## ②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問題와 原因

지금까지 國別背景文書의 分析結果와 協商그룹별 會議結果를 근거로 하여 導出된 바로는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問題와 그 原因을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다.

### 가) 主要 農產物의 需給不均衡

GATT事務局에 提出된 各國의 背景文書와 農產物協商그룹會議 및 熱帶產品協商그룹會議에서의 討議를 통하여 主要 農產物의 國際的 需給不均衡이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 原因의 하나로 指摘되고 있다. 또한, 그 需給不均衡의 原因은 農產物의 過剩供給에 있으며, 그 과잉공급의 원인은 다시 生産國이 需要를 무시한채 生産만을 促進한 點 즉, 지난날 이들 農產物이 不足하여 輸入을 하던 國家에서는 技術開發 등을 통하여 增産을 시도함으로써 自給度を 向上하는 한편, 종래의 輸出國은 그들대로 계속 生産支援政策을 실시하여 온 점에서 찾고 있다.

### 나) 國際價格機構(price mechanism)로부터의 國內生産者 隔離

一國의 國內農產物生産者가 그 農產物의 國際價格水準에 관계없이 生産을 계속할 때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農業에 대한 政府介入 등 農業保護主義는 國內農業生産者를 國際價格機構로부터 隔離시키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農產物貿易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 다) 農產物交易을 媒介로 한 國內外市場間の 乖離

農產物交易을 媒介로 하여 國內市場과 國際市場이 乖離될때 農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러한 國內外市場間の 乖離는 補助金支給과 같은 農業補助政策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 라) 농업관련 GATT의 規定과 原則의 缺如

協商에서는 農業部門에 적용하는 GATT의 規定과 原則이 非效果的이고 未洽한데에도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은 各國이 農產物貿易自由化를 위한 規律을 定立하려는 意志가 결여된데 있다고 分析하고 있다.

마) 農業支援에 의한 國際農產物貿易에의 歪曲效果

協商에서는 또 農業에 대한 支援政策이 不公正去來를 招來하고, 그 不公正去來가 原因이 되어 國際農產物貿易에 歪曲效果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바) 保健 및 衛生規制

保健과 衛生上の 保護를 위하여 취하는 規制措置도 偽裝된 輸入障壁으로 작용할 경우가 있어 農產物貿易에 惡影響을 준다고指摘한다.

이들 3個提案中 濠洲案과 美國案은 農產物貿易의 一般原則을, 前者가 比較優位論, 後者は 市場經濟原理에 두고 있으나 共히 農產物輸出國의 立場을 代辯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日本案은 비록 修正된 市場經濟原理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市場接近에 있어서 農業의 特殊性을 고려한 輸入制限案을 제안하고, 補助金에 관해서도 輸出補助金은 원칙적으로 廢止하되 農業補助金에限해서는 역시 農業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補助金を 彈力的으로 減縮하자는 提案을 함으로써 一定 범위내에서 農業을 保護해야 하는 韓國의 立場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3]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

가) 美國, 濠洲 및 日本 등 3國의 提案

農產物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協商에 提示된 意見은 대체로 濠洲案, 美國案 및 日本案 등으로 大別된다.

또 이들 國家가 提案한 基本原則의 骨格은 農產物交易의 一般原則, 市場接近에 관한 原則, 補助金에 관한 原則, 所得支援에 관한 原則 및 衛生規定에 관한 原則 등으로 集約되는데, 위의 3個國이 提案한 內容을 要約하면 <表5-10>과 같다.

나) 韓國의 立場

農產物交易의 一般原則에 관한 韓國의 立場은 食糧安保, 開途國優待 및 雇傭增大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市場機能保障을 원칙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表 5-10 農產物 貿易을 規律하는 基本原則案

| 區 分                  | 濠 洲 案                                    | 美 國 案                                             | 日 本 案                                                   |
|----------------------|------------------------------------------|---------------------------------------------------|---------------------------------------------------------|
| 1) 農產物交<br>易의<br>般原則 | • 比較優位論                                  | • 市場經濟原理                                          | • 市場經濟原理<br>(단, 食糧安保, 環境<br>保存, 고용등 社會的<br>要因 고려)       |
| 2) 市場接近              | • 國內市場 開放                                | • 輸入에 영향을 주는<br>政策제치<br>• 最惠國 待遇와 內國<br>民 待遇原則 적용 | • 輸入障壁의 緩和<br>• 農業特殊性을 고려한<br>輸入制限                      |
| 3) 補 助 金             | • 補助金과 其他 支援<br>措置 제치                    | • 貿易에 영향을 미치<br>는 國內政策 제치                         | • 輸出補助金의 原則의<br>제치<br>• 農業의 特殊性을 고려<br>彈力的으로 農業補助<br>減縮 |
| 4) 所得支持              | • 生産者價格으로 부터<br>所得支持 分離                  | • 價格과 生産量에 영<br>향을 미치지 않도록<br>所得支持                | —                                                       |
| 5) 衛生規定              | • 保健 및 植物衛生規<br>定の 貿易障壁機能<br>금지          | • 國際基準에 부합하도<br>록 無差別的 適用                         | • 衛生規定에 의한 貿易<br>障害效果 最小化                               |
| 6) 其 他               | • GATT 規定上 農產<br>物貿易과 其他 部門<br>貿易間의 差別금지 | —                                                 | —                                                       |

資料：農林水産部.

市場接近에 있어서는 農業의 特殊性和 食糧安保를 고려한 輸入制限과, 기존 輸入障壁을 점진적으로 緩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補助金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輸出補助金에 대하여는 아직 韓國의 立場表明을 留保하는 한편, 其他의 補助金에 대하여는 農業經濟의 發展과 社會安定을 위하여 開途國에 대한 優待를 인정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所得支援은 原則的으로 開途國의 特殊事情이 감안되도록함이 바람직하고, 衛生規定은 可及의 貿易障害效果를 최소화하도록 하되 交易相對國과의 相互協力關係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要컨대, 현재 韓國의 農業與件을 감안하면, 위의 3個國提案중에서 食糧 安保와 農業의 特殊性을 고려하겠다는 日本側提案에 近接하고 있으며, 철저한 市場經濟原理나 比較優位論에 입각한 美國案이나 濠洲案 등에는 同調 내지 支持하기가 어려운 立場이다.

## 나. 協商中間結果의 對韓示唆

### ① 協商對象의 二大主流 : 非關稅障壁과 補助金 論爭

현재까지 進行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 반영된 바로는 農產物, 熱帶 產品 및 天然資源產品 등 農林水產物의 무역에 관한 協商이 궁극적으로 이들 產品의 貿易을 최대한으로 擴大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協商이 對象으로 하는 主要事案은 각종 非關稅障壁의 철폐와 農業補助金의 철폐 등의 二大主流를 이루어 왔다.

### ② 農產物輸出 先進國 主導型 協商

우루과이라운드 農產物貿易協商이 輸出國과 輸入國, 先進國과 開途國 先進輸出國과 開途輸出國, 先進輸入國과 開途輸入國 그리고 農業非補助輸出國과 農業補助輸出國 등 다양한 締約國에 의하여 展開되고 있으나 協商의 進展은 결국 農產物輸出先進國 主導型으로 유도되어 왔다.

### ③ 韓國등 輸入開途國에 不利한 傾向

뿐만 아니라 協商의 진척은 그들 農產物輸出先進國에 有利하게 그들이 主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農產物 등의 輸入開途國의 立場은 韓國 등 該當國家들의 강력한 輸入開途國優待原則 主張에도 불구하고 점점 不利해져 왔다.

### ④ 韓國의 輸入開放 不可避性

그 동안의 協商이 진행되는 동안 農產物輸入國의 立場을 강력히 固守해 오던 EC, 日本 등 先進輸入國의 태도가 점점 누그러지고, 특히 先進輸出

國으로서 대다수 輸入開途國에 대하여 무역뿐만 아니라 外交와 安保등 다양한 方面에 影響을 미쳐오고 있는 美國의 主張에 同調하는 경향의 國家가 늘어남에 따라 韓國도 그들이 주장하거나 同調하고 있는 그들 農產物 輸入開放擴大提案을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 만은 없게 되었다.

보다 具體的으로 그동안 韓國이 國內農業保護를 위하여 실시해 온 각종 非關稅障壁을 可及的 緩和하여 輸入의 開放擴大 實態를 外國에 대하여 可視的으로 表出하는 한편, 農業部門에 대한 補助金政策도 撤廢하는 方向으로 接近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할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第 6 章

### 뉴라운드對應 農産物 輸出入政策 方向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그동안 協商案件의 二大主流인 輸入開放擴大問題와 農業補助金 撤廢問題에 대하여 食糧安保와 農業의 特殊性 考慮 등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開途國優待原則 적용문제를 主張하는 등 韓國의 立場反映을 위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協商進展大勢는 美國등 輸出強國의 提案과 EC, 日本 등 農産物先進輸入國의 提案間의 調和된 범위 내에서 풀려나갈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協商이 아직 실질적으로 本格化하기도 前에 讓步만을 할 수도 없는것이 또한 우리의 立場이다.

그러한 複雜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계속될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 對應해 나가는데에는 우선 지금까지의 協商을 통하여 파악된 상황을 참고하여 現時點에서 생각할 수 있는 農産物貿易協商의 몇가지 接近方案을 정리해보고, 韓國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農産物輸出入關聯政策 및 制度중에서 뉴라운드協商議題와 관련있는 部分을 概觀한 다음에, 필요한 政策方案을 찾는것이 바람직하다.

#### 1. 우루과이라운드 農業部門 貿易協商 對應接近

우루과이라운드에서 向後 農業部門貿易協商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첫째, 協商의 進展過程에서 直接間接으로 對應策을 찾아야 한다. 즉, 協商데이بل에서 직접 理論的으로 對應할 戰略을 강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國內農業의 構造調整등 實踐的인 對應策을 併行하여야 한다.

둘째, 協商에는 經濟的 側面과 非經濟的 側面을 同時에 兩面的으로 考慮하면서 臨해야 한다. 農産物의 貿易利益, 資源의 效率的配分 등 經濟的目的에서의 對應策과, 社會安定, 食糧安保 및 國防外交 등 非經濟的(社會的, 政治的)인 目的에서의 對應策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農業에 대한 保護主義와 開放政策間의 적절한 選擇的인 對應接近이 不可能하다. 즉, 변화하고 있는 國際經濟與件속에서 農産物貿易을 어느 정도나 比較優位論 내지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하여 開放肯定的으로 對應할 것인가 하는 問題와 幼稚産業保護, 小農經濟의 特殊性 考慮 등 保護主義의 立場을 어느 정도나 堅持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선택적으로 併行하여 對處하여야 하겠기 때문이다.

네째, 지금까지 진척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中間結果가 示唆하듯이 韓國으로서도 이제 머지않아 農産物貿易의 開放을 大幅 擴大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向後 뉴라운드協商에서 갖추어야 할 우리의 立場은 時期의 早晚이 문제일뿐 극히 特殊品目を 제외하고는 차라리 開放의 擴大를 前提로한 協商에의 接近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前提라면 당연히 協商의 마지막 堡壘는 어쩔수 없이 工産品의 輸出増大를 감안한 水準에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낮추고, 國際競爭力 向上을 감안한 農業補助金의 減縮 등을 豫想하지 않을 수 없다.

## 2. 韓國의 뉴라운드關聯 農産物 輸出入制度 概要

### 가. 農林水産物 輸出入現況과 推移

1986 年末현재 農林水産物의 輸出은 金額基準으로 農畜産物이 196 百萬

달러, 水産物이 1,350 百萬달러 등으로서 總 1,859 百萬달러 였으며, 輸入은 農畜産物이 1,488 百萬달러, 林産物이 620 百萬달러, 水産物이 111 百萬달러로서 總 2,219 百萬달러에 달함으로써 約 360 百萬달러가 貿易赤字 였다<表 6-1>.

이는 1980 年 실적대비 輸出은 約 7.8 %가 增加하고, 輸入은 約 12.4%가 증가하였으며, 貿易赤字는 448 百萬달러(124.4 %)가 증가하였음을 示唆한다.

한편 韓國의 總輸出額中에서 農林水産物輸出額이 占하는 比率은 1980年의 9.9 %에서 1986 年에는 5.5 %로 約 4.4 포인트가 줄었으며, 輸出入中에서 農林水産物 輸入額이 占하는 比率은 같은기간에 11.3 %에서 6.9 %로 역시 約 4.4 %포인트가 줄었다<表 6-2>. 이는 韓國이 産業 全體的으로는 최근에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으나 農業部門은 貿易赤字가 계속됨으로써 農産物貿易分野에서 輸入開放의 擴大를 강조하는 우루과이라운드協商 議題와는 相反된 실정임을 示唆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産物의 輸入을 擴大開放해야 하는 韓國의 立場이 어렵지 않을 수 없다.

表 6-1 農林水産物 輸出入 推移

單位: 百萬弗

| 區 分<br>年 度 | 輸 出       |           |             | 輸 入         |           |          |
|------------|-----------|-----------|-------------|-------------|-----------|----------|
|            | 農畜産物      | 林 産 物     | 畜 産 物       | 農畜産物        | 林 産 物     | 水 産 物    |
| 1980       | 225(13.0) | 629(36.5) | 871(50.5)   | 1,575(62.4) | 912(36.1) | 37(1.5)  |
| 1981       | 182(9.8)  | 631(33.9) | 1,051(56.3) | 2,587(77.2) | 706(21.1) | 58(1.7)  |
| 1982       | 154(10.3) | 401(26.7) | 947(63.0)   | 1,622(68.2) | 698(29.4) | 57(2.4)  |
| 1983       | 155(11.0) | 353(24.9) | 907(64.1)   | 1,840(71.2) | 692(26.8) | 53(2.0)  |
| 1984       | 217(14.7) | 300(20.4) | 955(64.9)   | 1,808(70.1) | 705(27.3) | 65(2.6)  |
| 1985       | 164(11.7) | 264(18.9) | 970(69.4)   | 1,652(70.2) | 616(26.2) | 84(3.6)  |
| 1986       | 196(10.5) | 313(16.8) | 1,350(72.6) | 1,488(67.1) | 620(27.9) | 111(5.0) |

\* ( ) 內는 全體 農林水産物 輸出入額에 대한 構成比임.

資料: 農林水産部 國際協力課.

表 6-2 農林水産物 輸出入 現況과 推移

單位: 百萬弗

| 區分<br>年度 | 輸 出      |             |              |          | 輸 入      |             |              |          |
|----------|----------|-------------|--------------|----------|----------|-------------|--------------|----------|
|          | 總輸出<br>A | 農林水<br>産物 B | 對比B/A<br>(%) | 1975=100 | 總輸入<br>C | 農林水<br>産物 D | 對比D/C<br>(%) | 1975=100 |
| 1962     | 54.8     | 35.9        | 65.5         | 3.3      | 415.2    | 119.7       | 28.8         | 6.8      |
| 1975     | 5,081.0  | 1,100.6     | 21.7         | 100.0    | 7,274.4  | 1,759.9     | 24.2         | 100.0    |
| 1980     | 17,504.9 | 1,725.0     | 9.9          | 156.7    | 22,291.7 | 2,524.0     | 11.3         | 143.4    |
| 1981     | 20,993.0 | 1,864.0     | 8.9          | 169.4    | 26,131.0 | 3,351.0     | 12.8         | 190.4    |
| 1982     | 21,616.0 | 1,502.0     | 6.9          | 136.5    | 24,251.0 | 2,377.0     | 9.8          | 135.1    |
| 1983     | 24,223.0 | 1,415.0     | 5.8          | 128.6    | 26,192.0 | 2,585.0     | 9.9          | 146.9    |
| 1984     | 29,245.0 | 1,472.0     | 5.0          | 133.7    | 30,631.0 | 2,578.0     | 8.4          | 146.5    |
| 1985     | 30,283.0 | 1,398.0     | 4.6          | 127.0    | 31,136.0 | 2,352.0     | 7.6          | 133.6    |
| 1986     | 34,700.0 | 1,859.0     | 5.5          | 168.9    | 32,116.0 | 2,219.0     | 6.9          | 126.1    |

資料: 關稅廳「貿易統計年報」, 各年度.  
農林水産部 國際協力課.

#### 나. 農林水産物の 輸出入 管理制度

現行 韓國의 農林水産物の 輸出入管理는 貿易去來法에 의한 管理,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管理, 關稅法에 의한 管理 및 特別法에 의한 管理 등으로 大別된다.

貿易去來法에 의한 管理는 첫째, 輸出入主體를 管理하기 위하여 輸出入의 開始(第3條), 輸出入의 許可, 取消 및 其他 制裁事項(第30條) 등에 관한 規程을 두고 있으며,

둘째, 輸出入對象地域을 管理하기 위하여 特定國家나 地域에 대한 輸出入禁止 및 制限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세째, 輸出入物品의 管理를 위하여 輸出入期別公告에 의하여, ①禁止品目과 制限承認品目으로 區分 表示하고, ②輸出入物品의 品目別 數量 또는 金額의 限度, 規格, 地域 등의 制限에 관한 事項, ③推薦 또는 確認 등에 관한 사항등을 策定하여 規制하고 있다.

네째, 輸出入去來形態의 管理를 위하여, 輸出入行政의 원활화를 위하여 貨換輸出信用狀에 의한 輸出 등 18 가지 去來方式의 規定을 두고 있다.

다섯째, 輸出物品 價格管理을 위하여, 부당한 덤핑과 不正去來防止를 위한 物品의 基準價格 또는 最低・最高價格을 査定, 公告하여야 한다.

다음에,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管理는 國際收支의 均衡, 通貨價値의 安定, 外貨資金의 효율적인 運用을 위하여 換率의 公正을 期하고, 外換의 集中, 對外支給의 制限, 資金去來의 制限 등을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 한편, 關稅法에 의한 輸出入의 管理는 關稅의 賦課, 徵收로 적정한 수출입물품의 通關, 關稅收入確保 등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財政收入의 확보, 國內産業保護, 消費抑制, 輸入代替 및 國際收支改善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끝으로 輸出의 管理에 적용되는 特別法에는 輸出檢査法, 수출보험법, 수출조합법, 輸出自由地域設置法 등이 있다.

이상의 輸出管理制度에 있어서도 예컨대 貿易去來法에 의한 수출입허가제, 수출금지 및 제한규정, 수출입기별공고, 최저최고가가격제 등과, 外換管理法에 의한 對外支給의 制限, 關稅法에 의한 關稅賦課, 國內産業保護 및 기타 特別法에 의한 수출입제한조치 등과 같이 대부분의 관련규정이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의 무역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 다. 農林水産物貿易에 대한 非關稅障壁

위에서 고찰한 韓國의 輸出入管理制度를 비롯하여 기타의 각종 輸出入政策을 종합해보면, 현행 韓國의 農林水産物輸入에 관한 非關稅障壁에는, 數量制限, 輸入許可制, 國營貿易, 國產品購買獎勵, 국산품사용의무 및 輸出制限, 輸入賦課金, 輸入預置金, 덤핑방지관세 및 相計關稅, 輸入競爭産業에 대한 補助金支給, 國境調整稅, 規格化 및 保健衛生基準, 通關 및 行政節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韓國이 農林水産物貿易에 관련하여 직접 간접으로 取하고 있는 非關稅障壁중에서 현재 뉴라운드協商에서 提議되고 있는 이른바 농림수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는 95 個品目に 대한 輸入制限, 23 個品目に 대한 總量쿼터, 55 個品目に 대한 衛生 및 植物衛生規制 그리고

煙草 및 製造煙草 등의 國營貿易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輸出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로는 37 個品目에 대한 輸出制限, 人蔘, 紅蔘 및 同製品과 煙草 및 製造煙草 등의 國營貿易을 들 수 있으며,

세째, 그 밖에 生産 및 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로는 소, 돼지, 닭 등에 대한 價格支持, 쌀과 보리등에 대한 供給調整 등을 들 수 있다<表 6-3>

## 라. 農業部門關稅體系와 關稅率 推移

### ① 關稅體系

農林水産物の 輸入關稅는 基本稅率, 暫定稅率, 協定稅率 및 彈力稅率 등으로 區分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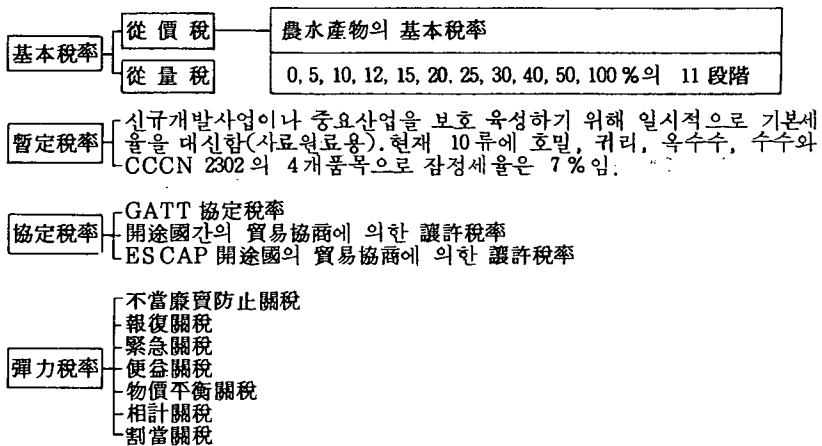
농림수산물물의 기본세율은 주로 從價稅로서 0, 5, 10, 12, 15, 20, 25, 30, 40, 50, 100 %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表 6-3 農林水産物 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

| 政 策 措 置                                                          | 品 目 (CCCN 4 單位)                                                                         | 備 考                                                                      |
|------------------------------------------------------------------|-----------------------------------------------------------------------------------------|--------------------------------------------------------------------------|
| ① 輸入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br>○ 輸入制限<br>○ 總量쿼터<br>○ 衛生 및 植物衛生 規制<br>○ 國營貿易 | 95 個品目<br>23 個品目<br>55 個品目<br><br>煙草(2401)製造煙草(2402)                                    | 輸出入公告 및 統合公告上 輸入추천 및 禁止品目<br><br>植物防疫法, 家畜傳染病豫防法, 食品衛生法                  |
| ② 輸出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br>○ 輸出制限<br><br>○ 國營貿易                         | 37 個品目(CCCN 4 單位 기준)<br>人蔘(1207), 紅蔘(1303)<br>人蔘 및 紅蔘 製造品(2107)<br>煙草(2401), 製造煙草(2402) | 輸出入公告 및 統合公告上 輸出추천 및 禁止品目                                                |
| ③ 生産 및 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br>○ 價格支持<br><br>○ 供給調節事業                  | 소(0102), 돼지(0103), 닭(0105)<br>마늘, 양파(0701), 고추(0904)<br>쌀(1006), 보리(1003)               | 畜振基金에 의한 收買備蓄事業을 통한 價格下落 防止<br>農安基金에 의한 價格安定事業<br>非常時 食糧安保의 側面에서 備蓄事業 실시 |

資料: 農林水産部.

圖 6-1 關 稅 體 系



잠정세율은 해당품목분야를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대신 하는 것으로서 호밀, 귀리, 옥수수, 수수와 CCCN 2302의 4개 품목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7%씩 부과하고 있다.

협정세율에는 GATT 協定稅率, 開途國間的 貿易協商에 의한 讓許稅率 및 ESCAP 開途國의 무역협상에 의한 讓許稅率 등이 포함된다. 彈力稅率에는 덤핑 방지관세(反 덤핑關稅, 不當廉賣防止關稅), 報復關稅, 緊急關稅, 便益關稅, 物價平衡關稅, 相計關稅 및 割當關稅 등이 포함된다<圖 6-1>.

## ② 關稅率推移

농축산물 수입관세율은 1970년도 이후 다소의 起伏은 있었으나 대체로 쌀, 밀, 보리 등 主穀類와 옥수수 등 飼料穀 및 콩 등은 계속하여 引下하여 왔으며, 마늘과 돼지고기 등 특별히 保護하여야 할 品目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維持하거나 오히려 上向調整을 하여왔다. 예컨대, 밀은 1970~75년의 10%에서 1976년에는 5%로 내려서 그 수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쌀과 보리는 1975년까지 25%였으나 1976년에는 20%로 낮추고, 1979년부터는 5%까지 대폭 引下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表 6-4 主要 農畜産物 基本關稅率 推移

單位 : %

| 區 分    | 1970 | 1975 | 1976 | 1979 | 1980 | 1985 | 1986 | 1987 |
|--------|------|------|------|------|------|------|------|------|
| 밀      | 10   | 10   | 20   | 5    | 5    | 5    | 5    | 5    |
| 쌀 · 보리 | 25   | 25   | 20   | 5    | 5    | 5    | 5    | 5    |
| 옥수수    | 50   | 50   | 20   | 20   | 20   | 10   | 10   | 10   |
| 마늘     | 40   | 40   | 40   | 30   | 30   | 50   | 50   | 50   |
| 땅콩     | 60   | 60   | 60   | 20   | 20   | 40   | 40   | 40   |
| 콩      | 25   | 25   | 30   | 20   | 20   | 10   | 10   | 10   |
| 쇠고기    | 35   | 35   | 30   | 25   | 25   | 30   | 30   | 30   |
| 돼지고기   | 35   | 35   | 30   | 25   | 25   | 50   | 50   | 50   |

資料 : 財務部, 「大韓民國 關稅率表」.

땅콩은 1976 年까지 60 %선을 유지해 오다가 1979 ~ 80 年에는 20 %로 낮추었으며, 1985 年부터는 40 %로 인상하여 왔다.

돼지고기는 1970 年의 35 %에서 1985 年에는 50 %로 인상하였고, 마늘은 같은 期間에 40 %에서 50 %로 인상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表 6-4>

요컨대, 韓國의 農産物輸入關稅는 特定品目を 除外하고는 農民의 不滿에도 불구하고 下向調整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國際水準에서는 상당히 높은水準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 進行중인 뉴라운드協商에서 논의되고 있는 關稅等 引下提案에 의하여 틀림없이 공박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 마. 農林水産物の 輸入自由化 進展

商工部關聯資料에 의하면, 1987 年末 현재 韓國의 農畜水産物 輸入自由化品目は CCCN 4 단위 기준으로 總 1050 個品目중 돼지고기통조림, 그레이프푸르트주스 등 1987 年 當年에 開放된 8 個品目<sup>1)</sup>을 합하여 모두 780 여 개 品目으로서 自由化率은 約 74 % 수준이다.

이는 全體分野 總品目の 自由化率 94 %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앞에서 누차 지적한바와 같이 특히 開途國에서 두드러진 農産物の 特殊性

1) 가금고기통조림, 돼지고기통조림, 감(단감제외), 방광, 소시지 유사조제식료품, 그레이프푸르트주스, 레몬주스, 크랜베리혼합주스.

表 6-5 農畜水産物 輸入自由化率

| 區 分 \ 年 度     | 1986     | 1987  | 1988* |
|---------------|----------|-------|-------|
| 總品目           | 1,050 ** | 1,050 | 1,050 |
| 輸入制限品目        | 278      | 273   | 268   |
| 輸入自由化率(農水産物)  | 73.5     | 74.0  | 74.5  |
| 全體分野 總品目 自由化率 | 91.5     | 93.6  | 95.4  |

\* 計劃値

\*\* 農林水産部 取扱品目(717 개) + 他部處取扱品目

資料: 商工部.

때문에 農産物輸入自由化率을 높이는 데는 많은 難點이 있다. 뉴라운드協商에서는 바로 이들 農産物의 輸入을 擴大 開放할 것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協商戰略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 3. 우루과이라운드對應 農林水産物 輸出入政策 方向

#### 가. 狀況과 前提

앞에서 검토한 우루과이라운드貿易協商 進陟의 中間결과와 韓國의 關聯制度 및 與件등에 비추어 농업부문 輸出入政策의 第1課題는 保護主義와 開放主義를 어떻게 調和있게 採擇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集約된다.

그런데 앞의 第5章4節의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主要 中間結果가 示唆하듯이 그리고 이 章의 1節에 提示된 우루과이라운드 貿易協商에의 接近 代案別 對應可能性과 第2節에서 개관한 그동안의 農林水産物 輸出入制度和 輸入自由化 現況을 동시에 감안할 때, 韓國의 農林水産物 輸出入政策은 이미 對外 開放擴大化 方向으로 상당히 進陟되어 왔음을 알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農業에 대하여 그러한 保護와 開放이라는 相反된 側面에서의 代案別 特性을 비교하여 현재 進행중이고 앞으로 일정기간

계속될 뉴라운드에 對應할 輸出入政策의 方向을 設定해야 할 것이라는 前提下에 關聯政策의 方向과 協商에의 基本카드를 정리 提示해 본다.

#### 나. 農業에 대한 保護와 開放의 政策代案別 比較

農業에 대한 保護政策과 開放政策의 理論的背景과 期待效果 및 豫想되는 政策反應 등은 <表 6-6>과 같이 集約될 수 있다.

즉 農業保護政策(代案Ⅰ)의 理論的背景은 原論의으로 幼稚產業의 保護

表 6-6 代案別 政策比較

| 區 分         | <代案Ⅰ><br>農 業 保 護 政 策                                                                                                                                                  | <代案Ⅱ><br>農 業 開 放 政 策                                                                                                                                   | <代案Ⅲ><br>保護・開放兼政策                                                                                |
|-------------|-----------------------------------------------------------------------------------------------------------------------------------------------------------------------|--------------------------------------------------------------------------------------------------------------------------------------------------------|--------------------------------------------------------------------------------------------------|
| ① 理論的背景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幼稚產業 保護論</li> <li>• 小農經濟의 特殊性</li> <li>• 產業間의 均衡發展</li> <li>• 食糧安保論</li> <li>• 政治的(非經濟的)意思 決定 原理</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比較優位에 입각한 國際分業論</li> <li>• 不均衡 經濟發展論 (開發戰略)</li> <li>• 資源의 國際的 均衡 配分</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保護主義와 開放政策의 長短點 取舍 선택</li> </ul>                        |
| ② 期待效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產物 自給度 向上</li> <li>• 農產物 價格上昇</li> <li>• 資源配分の 非效率化</li> <li>• 對外貿易 斷絶</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技術導入으로 品質 向上</li> <li>• 國內產品의 國際競爭 力 強化(價格下落)</li> <li>• 工產品 輸出增大에 寄與</li> <li>• 農產物 輸出國과의 貿易紛爭 緩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家經濟의 持續的 擴大</li> <li>• 資源配分の 合理化 促進</li> </ul>         |
| ③ 豫想되는 政策反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內 非農業部門으로 부터의 否定的 反應 (對農業部門補助 增加)</li> <li>• 農產物 輸出國으로 부터의 否定的 反應 (韓國產 工產品 輸出制約)</li> <li>• New Round 協商 基調에의 逆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內 非農業部門으로 부터의 否定的 反應 (對農業部門補助增加)</li> <li>• 農家所得減少로 社會, 政治問題化 우려</li> <li>• 食糧安保에 대한 執念 強化</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農業分野의 擴大로 農業輕視 우려</li> <li>• 農產物의 交易自由化의 制限</li> </ul> |

資料: KDI

와 食糧安保論, 小農經濟의인 특수성 고려 및 政治的 意思決定原理에 두고 있다.

그로부터는 農産物의 自給度向上과 農産物價格上昇에 의한 農家所得増大등 肯定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反面에 資源配分の 非效率化와 對外 貿易의 斷絶이라는 부정적인 效果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農業保護政策에 대하여 豫想되는 受容反應으로는 우선 農業部門 補助增加에 대한 國內 非農業部門으로 부터의 심한 抵抗意識과 나라 밖으로 부터의 農産物輸出國에 의한 韓國工産品輸入 抑制라는 강한 否定的 反應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農業開放政策(代案Ⅱ)의 理論은 比較優位에 입각한 國際分業論, 不均衡經濟發展論 및 資源의 國際的均衡配分이라는 등의 論理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先進技術의 導入에 의한 製品의 品質向上, 國內商品의 國際競爭力 強化, 工産品輸出増大 및 農産物수출국과의 貿易紛爭의 緩和 내지 해소 등 肯定的인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國內農業部門으로부터는 農家所得減少와 食糧安保 등의 측면에서 社會 및 政治的인 문제가 제기되는 등 否定的인 反應을 면하기가 어렵다.

代案Ⅲ으로 假定해 본 第3의 政策方向은 궁극적으로 保護와 開放의 折衷案으로 接近하자는 것이다. 즉, 理論的으로는 前述한 保護主義와 開放政策의 長短點을 取捨選擇한다는 合理主義的 試圖이며, 國家經濟의 지속적인 擴大와 資源配分の 合理化를 촉진한다는 效果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는 남아있다. 非農業分野를 擴大하면서 農業을 輕視할 것이라는 憂慮를 비롯하여 農産物交易自由化의 遲延 可能性 등이 당장에 안고 있는 要解消, 重課題로 제기된다.

따라서 이 課題를 보다 現實的으로 풀어나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현재 參與하고 있는 뉴라운드協商에서의 農産物 貿易協商과, 거기에 대처하는 國內農業政策의 調整이라는데로 歸着하게 된다.

## 다. 政策의 方向과 協商카드

### ① 政策의 方向

韓國이 처해있는 현재의 복잡한 國內外 經濟 및 政治的 與件下에서 농림수산물의 輸入開放問題가 직면하고 있는 難點과 憂慮를 해소할 수 있는 最善의 方策이란 어느 누구도 提示할 수 없다.

다만, 앞에 열거한(第3節의 “가”) 前提下에서라면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대략 다음과 같은 政策의 方向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이제는 지금까지, 채택하여온 保護主義政策 내지 消極的인 中途折衷政策에서 벗어나 대폭적인 開放擴大政策으로 과감히 接近하는 길이다.

둘째, 이와 같은 農業部門의 大幅的인 開放擴大로 인하여 초래되는 농업부문 특히, 農民의 損失 내지 不利益分은 國內의 綜合的인 社會經濟政策的 次元에서 충분히 補償할 수 있도록 適當한 農業補償政策을 새로이 構想하여 조속히 實現하는 길이다.

셋째, 그와 同時に 農業開放으로 인하여 발생할 國內農業에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國內農業 및 産業構造의 調整政策을 併行推進하는 길이다.

물론 理想的으로는 國內의 農業 및 産業構造를 먼저 조정한 연후에 그에 맞추어 開放擴大 등 對外貿易政策을 樹立하는 것이 順理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의 協商進展狀況과 그 裏面に 깔려있는 農產物輸出國과 輸出擴大經濟強國들의 강력한 開放壓力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유있는 接近을 허용치 않고 있다.

네째, 앞에 열거한 農業補償政策이나 農業 및 産業構造調整政策 등을 動員하고도, 開放해서는 아니될 部分은 부득이 協商을 통하여 積極的으로 防禦할 수 있는 方案을 研究하여 對應해 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② 協商에의 基本카드

만일 農產物貿易을 完全開放하는 것이 國家政策의 基本的인 方向이라면, 뉴라운드協商에 對應하는데 있어서 별로 큰 問題가 없을 것이다. 問題는 어

더까지나 農產物貿易을 어느 時點에 가서 거의 完全에 가까울 정도까지 開放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時期에 이르기까지는 國家利益과 關聯하여 그 開放의 幅과 規模 및 時期등을 가급적 緩和 내지 늦추어가면서 對處해 나가려 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같이 農業을 대폭적으로 開放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서 輸入開放으로 인하여 발생한 農業部門에의 不利益을 補償하고, 産業構造를 調整한다는 前提下에서도 未洽하거나 不完全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부득이 뉴라운드라는 協商테이블을 통하여 지혜롭게 對處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國際貿易의 大勢가 이미 農產物의 輸入을 完全히 開放하도록 기울고 있는 限, 그리고 그것이 國際間貿易의 大原則으로 確立이 되는 이상, 農產物貿易을 開放하지 않겠다는 여하한 論理도 일단, 自國의 利益을 利己의으로 옹호하려는 詭辯에 不過하다는 攻擊과 비난을 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協商相對國도 그러한 立場을 취하고 있고, 國際的으로도 輸入開放과 關聯하여 부단히 심각한 문제가 비등하고 있는 한, 論理的으로는 다소 脆弱性이 있고, 또 다소 진부한 감이 있더라도 協商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그 協商에 임하는 기본적인 카드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 農產物의 輸入開放擴大案에는 원칙상 同調하되, 신중을 期하는 方便으로 多數國家가 경험한 農業 및 農林水產物의 特殊性 등을 열거 想起시키면서, 農產物輸入을 例外的으로 開放要求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실을 GATT 關聯規定 등을 들어서 再強調하고,

둘째, 쌀, 쇠고기등 韓國의 戰略品目에 對하여는 一定限度內에서 輸入自由化를 留保할 수 있도록 하자는 提議를 거듭하는 동시에,

세째, 長期的 觀點에서 農林水產物의 輸入自由化에 相應하는 農業構造의 調整에의 所要期間內에 各國이 輸入自由化 擴大에 의한 충격과 損失을 最小化할 수 있는 「農林水產物 輸入自由化 15 個年計劃 등과 같은 長期計劃을 권고토록 提議한다.

끝으로, 未久에 경험하게 될 農業補助金 撤廢論의 壓力과 그로인한 마찰

을 줄이기 위하여 소위 PSE Ratio (生産者補助등가액 比率) 公正算出委員會(假稱) 設置를 提案(UR事務局 및 各國別 委員會 등)해 놓을 필요가 있다.

## 附錄 1

우루과이라운드 補助金 및 相計措置  
協商議題 및 檢討意見 \*

## 1. UR/補助金 및 相計措置關聯 協商議題 檢討要旨

## 가. GATT 規定(第 16 條 2 項 및 3 項)

☐ 第 16 條 2 項

輸出補助金を支給하면 他 締約國의 輸出入에 害를 주며 他 締約國의 正當의 商業利益을 侵害하고 GATT 目的達成을 侵害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第 16 條 3 項

① 앞의 2 項에 근거하여 締約國들은 일차산품 수출에 대한 輸出補助金を支給해서는 안된다.

② 輸出補助金を支給해서는 안될뿐 아니라 自國의 일차산품 輸出을 증가시키는 직접·간접의 여하한 형태의 補助金도 해당산품이 世界總輸出에

---

\*) UR/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商그룹의 協商議題로 1 次産品에 대한 輸出補助金支給規制를 강화하는 問題가 舉論됨에 따라 同協商에서의 韓國의 立場을 定立키 위한 參考資料로서 關聯 GATT 條項들에 대한 檢討意見을 農林水産部에 作成 提出한 것임.

서 占하는 공정한 점유율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支給되어서는 안된다.

□ 第 16 條 B 및 第 16 條 3 項에 대한 註釋

① 第 16 條 B의 목적상 “1 次產品”이란 農林水産業 및 鑛業이 未加工 상태의 產品, 혹은 그것이 국제시장에서의 交易用으로 상당량이 加工되고 있는 產品을 지칭한다 (B 절).

② 締約國團이 과거에 어떤 產品을 수출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은 앞으로 수출할(시장점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項).

③ 締約國이 1 次產品의 국내가격 安定化와 1 次產品 국내 생산자의 수익안정화 등을 위한 補助金制度를 도입하고 있을 경우라도 다음 사실이 판명되면 第 16 條 3 項에 규정한 輸出補助金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看做한다.

○ 그 制度가 생산자가 수출을 부당하게 촉진하지 않고 他 締約國團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도록 운영되거나 운영되도록 計劃되어 있을때 등(3 項)

□ 輸出補助金에 대한 締約國團의 決定

① 貿易障壁에 대한 實務團報告書 : 세계교역상 “公正한 占有率” 판별 상 유의 사항으로

○ 당해 產品의 世界市場需要를 가장 效果的, 經濟的 方法으로 충족시킬 것과

○ 輸出補助金이 他 輸出國家의 世界市場占有率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인정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1955. 3. 3. BISD).

② 프랑스의 밀과 밀가루 輸出補助金에 관한 패널 보고서

○ GATT 第 16 條 3 項등에 명시된 “公正한 占有率(equitable share)”의 개념은 개별시장에서의 특정산품 거래의 占有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世界市場에서의 輸出交易중에서의 占有率을 의미한다.

○ 世界市場에서의 공정한 占有率에 대한 통계상의 定義는 내려져 있지 않으나 조사결과 프랑스는 補助金制度가 밀과 밀가루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당시 프랑스의 世界市場 占有率은 公正한 占有率을 초과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1985. 11. 21).

③ EC 설탕수출 還給에 대한 패널 보고서

○ 호주등이 주장하는 “自由市場” 개념보다는 GATT 第 16 條 3 項에 제시된 世界輸出交易 개념에 입각하여 조사할것을 강조하였다. (市場占有率 이 공정한 점유율인가의 여부를 판정함에는 自由市場의 占有率을 파악하는 것이 方法論上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世界總輸出量중의 市場占有率을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 公正한 占有率에 대한 概念 定義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개념화에 합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1979. 11. 6. BISD, 26 D/ 290 ).

○ 개별 시장에서의 狀況變化( developments )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價格과 市場變化를 검토하여 그것을 근거로 公正한 占有率 여부를 판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나.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 ①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第 10 條 : 特定 1 次產品에 대한 輸出 補助金

① GATT 第 16 條 규정에 따르면 締約國團은 締約國이 과거 대표적 기간 동안 그들 국가의 관련상품의 國際貿易市場 占有率과 그 產品의 貿易에 영향을 주거나 그 產品의 貿易에서 영향을 받을 어떤 特別한 要素등을 참작하여 公正한 市場占有率 이상을 占有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方式의 그러한 特定 1 次產品에 대한 직접, 간접의 輸出補助金を 지급하지 않을것에 동의한다.

② GATT 第 16 條 3 項과 위의 ①項(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第 10 條 1 項)의 目的을 위하여,

○ 세계무역수출의 “公正한 占有率以上( more than an equitable share )”의 범위 (개념)에는 締約國이 지급하는 輸出補助金の 영향으로 他 締約國의 수출을 감축시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世界輸出貿易의 公正한 占有率”을 결정하는 데에는 세계시장에 대한 관련상품의 전통적 공급형태와 새로운 市場이 열리고 있는 지역이나 국

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a previous respective period)”은 보통 정상적인 市場條件이 존재한 최근 3 개년으로 하여야 한다.

③ 締約國團은 동일 시장에 대하여 다른 공급자가 공급하는 實質價格이하의 價格으로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特定市場에 대한 特定產品의 輸出補助金を 지급하지 않을것에 동의한다.

④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第 10 條에 대한 註釋 :

이 協定の 목적에 부합하는 特定の 1 次產品(certain primary products)”은 GATT 부속서 第 16 條 2 項의 註釋(notes ad Article XVI of the General Agreement)에 명시된 產品중에서 “…… or and mineral” 을 삭제한 概念의 것이다.

## ②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第 14 條 10 項( Article 14 ; 10 )

締約國團은 特定 1 次產品에의 輸出補助金에 대한 이 協定상의 의무는 모든 締約國에게 적용할 것을 인정한다.

### 다. 補助金 및 相計措置 관련문제점

첫째, GATT 第 16 條 3 項의 “公正한 占有率以上(more than an equitable share)”이라는 용어의 概念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있다.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Article 10 )은 GATT 第 16 條 3 項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概念을 定義코자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모호하다.

둘째, 補助金과 市場占有率 증가간의 因果關係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調査團마다 이 因果關係에 대한 견해가 相異하기 때문에 調査團의 결정 사항을 근거로하여 일관된 判例를 도출할 수가 없다.

세째, GATT 第 16 條 3 項과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第 16 條의 정확한 범위와 價格引下問題( price undercutting), 新規加入國家問題, 非商業的去來의 역할등에 대하여도 모호한 점이있다.

## 라. 農産物交易委員會와 보조금 및 相計委員會가 제시한 해결 방안

### ㉑ 현행규정 체제내에서의 개선 : (의장과 사무국이 마련한 勸告案)

① 직접 간접으로 補助金을 지급하는 모든 주요 輸出者에 대하여 公正한 占有率을 미리 결정해 놓는 方法(복잡한 制度에 맡겨둘지 않을 수 있고, GATT 第 16 條 3 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補助金을 支給하는 수출국이 정해진 公正한 占有率을 미리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국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게 함).

② 他締約國의 보통 商業的利益에 특정의 중대한 損害를 입힌 경우는 GATT 第 16 條 1 項의 규정을 강력히 적용하여 처리하는 방법

③ “公正한 占有率以上”의 원칙은 輸出補助金 사용과 동 보조금의 世界市場交易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效果에 대해서까지도 緊急輸入制限措置나 禁止規範( preventive discipline )을 적용하여 운용하는 方法(이상은 AG/w/ 9 / Rev. 1 )

④ 현행 GATT 第 16 條 1 項 2 節의 토의( discuss ) 의무는 개별 시장에 있어서 市場代替를 초래하는 경우, 적절한 救濟措置를 취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는 方法

⑤ 公正한 占有率을 규정하는 指標를 도입하여 補助金支給으로 인한 占有率이 GATT 第 16 條 3 項에 규정한 공정한 점유율이상의 占有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輸出補助金支給 國家들이 參考指標로 이용하는 방법(이상 AG/w/ 9 / Rev. 3 )

⑥ 第 3 國 市場에서의 競爭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중대한 피해(Serious Prejudice )”에 대한 세부기준을 개발하는 방법 ( Annex B - III to AG/w / 9 / Rev. 3 )

⑦ GATT 第 16 條 3 項에 다음과 같은 註釋을 붙이는 방법 ( Annex B - VI to AG/w/ 9 / Rev. 3 )

세계 교역에서의 市場占有率은 다음의 경우에 公正한 수준 이상의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그 占有率이 補助金이 없을때에 存續하여 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合理的인) 占有率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그 占有率이 문제의 產品에 대하여 가장 效果의이고 經濟的인 방법으로 세계시장의 需要를 充足 시킨다는 目的에 부합치 않을 경우,

세째, 그 占有率로 인하여 GATT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締約國들의 보통의 商業的利益을 저해하고 他 締約國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등.

② 輸出補助金 사용과 輸出補助金의 惡影響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체제의 구축 (AG/w/9/Rev. 3.)

가) 一般的禁止의 範圍

① 원칙적으로 일반적금지의 범위는 모든 관련 수출보조금 慣行을 포함 하도록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즉, 農業 1次產品 輸出補助金등과 같은 직접 輸出補助金支給에 대하여 일반적 금지규정을 둔다. 그렇게 함으로써 輸出에 影響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애매한(미칠 수도 있고 안미칠수도 있는) 기타 間接補助金이나 國內補助金, 나아가서 所得支持制度까지 금지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② GATT 第 16 條 4 項의 금지 조항은 1次農產品에도 확대 적용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國內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이루어지는 農產物輸出에 관한 직접, 간접의 모든 補助金支給을 금지할 수 있으며, 특히 禁止範圍의 한계를 정하고 監視目的에 부합하는 價格에 관한 合理的基準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GATT 第 16 條 1 項과 同 3 項의 규정에 근거하여 1次農產品 輸出을 증대시키는 직접, 간접의 보조금제공(價格, 所得支持制度 포함)을 금지한다.

④ 食糧援助를 제외하고는 현행의 모든 輸出補助金(직접적인 수출융자 및 기타 輸出支援 포함)이 원칙적으로 禁止되어야 한다. 단, (輸出補助金이라도) 減縮計劃이 확립되고 輸出量이 점차 감소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 輸出補助金 사용자격은 특별한 경우의 순수한 輸出者(Occasional net exporter)와 계속적인 순수한 輸出者(Consistent net exporters)를 구분하는 단계적 체제화 방식에 입각하여 추가적 수입접근 기회를 創出하는

경우에 주어져야 한다.

⑥ 農產物 輸出補助金を支給하는 국가는 國內需要에 직접 연결된 物量에 限定하여 수출보조금 使用權과 더불어 自給率을 협상하여야 한다.

⑦ 정부가 제공하는 公益事業이나 서비스업무, 食糧援助, 非商業的 去來, 輸出信用 및 기타 관련편익, 그리고 구체화된 產品에 대한 補助金, 제 3국 시장에서의 競爭 및 過渡的調整등과 관련하여 協商을 해야하는 規律과 例外條項등이 GATT 第 16 條 3 項註釋 2에 입각하여 開發되어야 한다.

나) 기타 例外 條項과 諸條件(other suggested exception/condition)의  
설정

① 소규모의 일시적 수출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國內政策과 貿易措置와를 연관시켜 農產物 특유의 問題點과 특성을 고려한다.

③ 國內生産을 효과적으로 制限하는 國內政策과 일반적 금지의 例外(exceptions to a general prohibition)간의 平均的 범위를 설정한다.

④ 1次產品形態의 農產物에 적용되는 예외사항은 加工品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문제의 產品 또는 競爭產品이나 代替產品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일시적 잉여분을 해소하는 경우는 例外로 한다.

⑥ 國內生産이 촉진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生産에 의존되며(그것의) 輸入이 상당히 증가한, 動物을 원료로 한 상품(products of animal origin)의 잉여분을 해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종래의 輸入된것과 同一物量產品의 加工 또는 未加工 형태로 再輸出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國內生産을 制限하거나 支持價格을 制限하는 政策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競爭財나 代替財에 적용된 例外).

⑨ 경제적 난점이나 기타 특별한 問題가 있어서 國際市場이나 供給國家에 대한 정상적인 接近이 어려운 需要國 需要充足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⑩ 다음의 價格과 條件下에서의 판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締約國團에 제출된 基準과 일치하는 양국간 雙務協定에 의한 약속

○ 農産品에 적용될 수 있고, 일정수 이상의 締約國이 개입된 多者間 國際協定

다) 例外的인 輸出補助金 사용에 관한 規制

일반적으로 적절히 補強된 GATT 第 16 條 1 項 2 節이 최소한 과도적 이행단계 이후에는 國內補助金과 例外的 輸出補助金 사용에 따른 第 3 國 市場에서의 惡影響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③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第 10 條에 관한 解析의 통일과 효과적 적용(補助金 및 相計措置 委員會議長 報告書 : SCM/ 53, para. 12 ~ 20 )**

① 同 協定 第 10 條에 명시된 특별한 요소(special factors)의 概念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公正한 市場占有率 以上」의 概念을 적용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그 한가지 方法으로 예컨데, 그 「特別한 要素」를 예외적인것, 또는 일시적이고 被提訴國의 統制를 벗어나는것( 정상시장 조건하에서는 存在치 않는것) 등과 같은 要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것등을 들 수 있다.

② 「正常的 市場條件」이라는 概念은 「과거의 대표적 기간」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주어진 기간에 特別한 要素에 의하여 世界市場條件이 중대하게 영향을 받았다면 正常的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표적 기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同期間의 輸出補助金이 他 輸出國이 차지한 交易占有率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③ 특수한 거래나 讓許去來(concessional transaction)는 명백히 非商業的인 성격이지만 「正常市場 條件」에 영향을 미치며 補助金を 받은 판매와 같은 效果를 가질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第 10 條 1 項의 「國際貿易」에 非商業的 去來가 포함되지 않는다.

○ 문제의 市場에 대하여 非商業的 去來 이외에는(同一國家에 의한) 商業的 판매가 없을것.

○ 문제의 非商業的 去來가 잉여분 해소에 관한 FAO 諮問小委員會에 통보되고 輸入國의 추가적 需要에 의하여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정 되었

음을 輸出國이 증명할 수 있을것.

④ 補助金이 「公正한 占有率以上」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主觀性이 개입되는바, 그러한 主觀性을 줄이고 「公正한 占有率 以上」의 概念과 관련하여 과거에 나타난 여러가지 난점을 피하려면 「特別한 要素」, 「正常市場 條件」, 「非商業的 去來의 役割」등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第 10 條 1 項의 적용상, 締約國間에는 GATT 第 16 條 1 項과 3 項의 「輸出의 增加」란, 補助金이 없었을 경우의 輸出보다 높은 수준의 輸出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第 10 條 1 項과 10 條 2 項(a)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公正한 占有率以上」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개별 市場에서 發生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⑦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第 10 條 2 項(b)가 同協定 第 10 條의 기타 규정(other Provision of Article 10)에 相馳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同 第 10 條 2 項(b)의 발동은 同 第 10 條의 기타규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⑧ 세계시장에의 新規參與國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締約國이 문제의 商品을 과거 대표적 기간동안 輸出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同 締約國이 交易의 일정 占有率을 점유할 權利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⑨ 價格引下問題(question of price undercutting)는 보다 技術的인 追加調査를 要하며 일정한 技術指針(technical guidelines) (예컨대 수출가격을 기초로하여)을 작성해야 한다.

## 2. UR農産物그룹 및 GATT農産物交易委員會 補助金관련 主要討議內容

### 가. UR / GNG 農産物그룹의 討議內容의 経향

#### ① 1次會議 (1987. 2. 16 ~ 18)

- ① 補助金支給을 통한 國內農産物市場과 세계市場간의 乖離問題
- ② 輸出補助金, 生産補助金 및 消費者補助金を 규제하는 문제.

#### ② 2次會議 (1987. 5. 5 ~ 6)

- ① 農産物の 生産, 消費 및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政府政策을 市場經濟原理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
- ② 農산물무역에의 比較優位論 적용문제
- ③ 農産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農産物生産과 消費간의 不均衡 문제

#### ③ 3次會議 (1987. 7. 6 ~ 7)

- ① 農産物貿易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補助金制度를 완전 철폐하는 문제
- ② 農業補助金制度 철폐의 實踐方案으로서의 PSE (생산자보조금등가치) 등과 같은 보조금수준의 측정장치와 補助金減縮計劃문제
- ③ 補助金減縮 약속이행을 위한 각국의 政策變化 확인 문제
- ④ 農業補助金과 관련하여, 세계시장의 공평한 占有率 및 輸出에 미치는 직접, 간접의 영향을 측정하는 方法과 그 측정 주체에 관한 문제
- ⑤ 農産物貿易의 근본문제가 農業補助金보다 過剩生産에 있다는 견해와 국별 농업의 特殊性을 무시한 일률적 원칙의 적용이 가지는 문제
- ⑥ 國內補助金은 農産物の 特殊性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農産物輸出補助金은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문제

## 나. GATT 農産物交易委員會의 討議內容

### ㉑ 개 요

수출보조금 및 기타형태의 輸出支援 등 農産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補助金은 GATT의 규정과 원칙의 범위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㉒ 세부대안

#### ▣ 대안 1 : 현행체제내에서의 개선

○ GATT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締約國의 利益과 貿易에 심각한 歪曲을 초래하는 補助金制度를 철폐한다.

○ “公正한 市場占有率”의 설정 및 “중대한 침해”에 관한 運用기준을 開發한다. (AG/w/ 9 /Rev. 3 참조)

#### ▣ 대안 2 : 輸出補助金の 사용 및 수출보조금 사용의 惡影響減縮

○ 일반적 금지의 범위, 예외로 인정된 補助金支給基準에 관한 규정과 원칙의 개선

○ 1次農産品輸出 補助金에 대한 통일된 概念의 정립(AG/w/ 9 /Rev. 3 참조)

## 3. 農産物補助金 및 相計措置關聯 協商에서의 韓國의 對應方案에 관한 意見

### 가. 관련 問題點 要旨

① GATT 第 16 條 2 節에는, 補助金이 해당상품의 世界總輸出에서 占하는 “공정한 점유율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기위한 手段으로 支給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정한 점유율이상”이라는 용어의 概念이나 統計的인 定義가 애매모호하여 相關문제의 判別이나 해석상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② 실제 경험적으로 輸出補助金이 他 輸出國家의 世界市場占有率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명된 바가 있음에도 補助金과 市場占有率 증가간의 因果關係를 명백히 導出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

③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第 10 條는 GATT 第 16 條 3 項에 규정하고 있는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a previous representative period)”을 “보통 정상적인 市場條件이 存在한 최근 3 개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의 현실적 및 統計學的인 근거에는 의문이 있다.

④ 農產物交易委員會와 補助金 및 相計措置委員會가 제시한 해결책중에는 직접 간접으로 補助金を 支給하는 모든 주요 輸出者에 대하여 공정한 점유율을 미리 정해놓을 것을 提案하고 있으나 이 경우 “公正한 占有率”에 대한 概念과 산출방식의 명백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 한, 이 提案은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다.

⑤ 農產物交易委員會와 補助金 및 相計措置委員會는 GATT 第 16 條 4 項의 禁止條項을 1 次農產品에도 확대적용시킬 것과, 1 次農產品輸出을 증대시키는 직접, 간접의 보조금 허용을 禁止할 것 등을 提案하고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개별국가 특히 韓國과 같은 開途國의 국내여건과 農業의 特殊性에 대한 고려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⑥ 현재 국내적으로 農業補助水準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國內補助實情을 총괄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나아가서 對外協商에서 이론적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 나. 對外協商 方案에 관한 意見

① GATT 第 16 條 3 項 2 節에 규정한 “공정한 점유율”의 概念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定立하고 그것의 統計學的인 產出方式을 研究開發, 확립할 것을 강조한다.

② GATT 第 16 條와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市場占有率이 문제의 補助金支給에 대하여 지니는 兩者間的 因果關係를 증명할 수 있는 논거를 확립하지 못하는 한, 他國의 輸出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간접의 補助金支給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GATT 第 16 條 3 項에 규정한 “과거의 대표적 기간”을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第 10 條에서는 “보통 정상적인 市場條件이 存在한 최근 3 개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도, 예컨대 “최근 2 개년” “최근 5 개년”, “최근 7 개년” 등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함에 따라 관련國家의 이해관계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GATT 第 16 條 4 項의 補助金支給禁止 條項을 1 次農產品에도 확대적용할 경우, 開途國의 國內與件과 農業의 特殊性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장치를 갖추도록 提案한다.

⑤ 각국이 農業에 提供하는 補助水準을 보다 객관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產出方式(예 : PSE)을 開發, 보급토록 강조한다.

⑥ 補助金 및 相計措置關聯 協商에서 農業補助金에 관한 우리의 意見을 개선하려면, 우리나라의 客觀的인 農業補助水準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바, 예컨대 生産者補助金等價值(PSE)등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기초 作業으로는 最近 수년동안의 補助金支給 실적을 綜合的으로 分析評價할 필요가 있다.

## 附錄 2

# 우루과이 라운드 農産物貿易協商에 관한 主要提案 要旨 및 檢討意見\*

## 1. 農産物貿易協商을 위한 主要提案

### 가. EC 案

#### ① 協商의 前提와 方向

① 需要와 供給의 不均衡 등 세계 農産物市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근본문제는 農産物貿易協商을 通하여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農業部門의 構造的 不均衡의 해소는 국제적인 農産物市場접근과 수출 경쟁에 對한 規定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國際農産物市場의 不均衡과 不安定 및 不確實性を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農業政策的 改革을 요한다.

○ 農산물무역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원의 감축 등 적절

---

\* 1987. 12. 7 ~ 8 제네바에서 개최된 UR 農産物그룹 5次會議에 對備 韓國의 立場定立에 참고토록 農林水産부에 作成·提出한 EC 案, 스위스案 및 CAIRNS 案의 內容要旨와 檢討意見을 要約한 것임.

한 수단에 의한 生産管理의 改善

○ 시장신호( market signal )에 대한 農業의 感應性 제고

○ 生産과 관련없이 直接支援方式을 통한 農民의 所得補助

④ 農產物 需給不均衡의 相互主義의이고 협정에 의한 개선은 國際農產物 市場의 歪曲을 줄이고 生産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⑤ 農產物 需給不均衡의 減縮은 世界貿易에서 수입장벽을 완화하고 GATT 規定 범위내에서 건전한 競爭條件의 조성을 가능케 할 것이며, 동시에 GATT 規定의 보완과 강화를 요한다.

⑥ GATT 規定은 農產物貿易에 관한 動植物 衛生規定의 否定的 效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② 協商的 接近에 관한 事項

### 가) 協商範圍

구조적인 過剩狀態와 심각한 無秩序가 예상되는 부문에 優先順位를 두어 原料農產物과 加工農產物을 협상의 대상범위로 한다.

### 나) 協商方法

① offer/request 방식은 次期協商 단계로 미루고, 農產物 國際貿易市場에 미치는 補助政策의 부정적 效果를 단계적으로 減縮시키는 문제를 토의토록 한다.

② 補助政策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否定的 效果는 제 1 단계로 기존정책에 근거하여 최악의 영향을 받는 市場狀況을 완화하고, 제 2 단계로는 구조적 不均衡과 永續的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計劃을 세워야 한다.

③ 제 1 단계는 特定市場에서의 歪曲을 완화하는 緊急措置와 需給不均衡을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등 유사한 두개의 補完的 단거조치이며, 제 2 단계는 世界市場의 歪曲現象을 제거하기 위하여 保護主義와 補助政策을 減縮내지 撤廢하는 것이다.

④ 구조적 不均衡과 영속적 不安定을 해소키 위한 계획은 農產物 貿易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과 원칙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실천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細部的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모든 補助金의 適用條件(加工品으로 구체화된 農産物에 대한 補助金を 포함)

○ 農産物 需要를 증가시키는 諸措置의 처리

○ 國家機關( state agencies )과 流通委員會( marketing board ) 등이 존재함으로 인한 市場接近과 競爭條件( conditions of access and competition )

○ 여러 締約國團( various parties )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해온 諸措置에 대한 엄격한 監視 등

⑤ 動植物 健康規定에는 국제간의 調和를 이룰 基本原則과 基準( basic principles criteria ) 및 生産과 加工등에 관련된 원칙의 骨格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③ 協定을 위한 制度的 裝置( Instruments )

GATT가 補助金에 관련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締約國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農業補助金を 測定하는 방법에 관한 協定이 필요하다. OECD가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창안해낸 PSE는 그것이 協商手段으로 잘 조정될 경우, 보조금 측정의 基本單位로 인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調整( adjustment )에는 기본적으로 貿易에 관한 주요범위의 測定, 生産制限의 제량화 방법, 세계의 價格 및 通貨變動 등에 관련된 調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開發國 問題( Developing Countries )

農産物の 國際貿易條件을 개선하려는 締約國團의 노력은 그들 국가의 開發水準과 開發需要에 맞추어야 하는바, 개도국은 그들의 開發需要에 따라 특별히 그리고 그 나라 형편에 따라 差別的으로 取扱되어야 한다.

### ⑤ 協商의 運營과 實行( Conduct and Implementation )

協商의 제 1 단계와 제 2 단계는 전반적인 윤곽속에서 單一包括案( a single package )의 일부로서 추진하되, 제 1 단계는 비교적 짧고, 제 2 단계는

實行日程(time-table for the implementation)을 適定期間 내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스위스案

### ㉠ 狀況과 前提

① 農產物 國際貿易의 國別割當 狀況(assessment of state)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多者間 協商體制의 취약성과 國際貿易運營의 否定的 效果를 改善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그 分野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制度를 마련하고 그것을 履行키 위하여 협상을 통한 모든 參加國의 협력을 요한다.

② 세계의 모든국가는 食糧需要充當을 外國에 의존하면 政治적으로 취약점을 지니게 되므로 國內農業生産을 통하여 食糧供給의 일부 또는 전부를 確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③ 각국이 경제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온 社會發展(social progress)은 農業所得増大를 위한 生産者 價格支持政策등 農工間의 생활隔差를 좁히는 조치를 誘導하였다.

④ 多者間 協商體制은 다음의 두가지 목적을 調整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國際農產物 市場機能 改善의 保障. 둘째, 각국이 自國의 農業을 合理的 水準(비율)으로 유지 시킬 수 있는 可能性 保障 등.

⑤ 협상그룹(Negotiating Group)은 이론적으로 다음 4 가지중의 하나를 考察하여야 하는바, 이들 4 가지 접근중 특히, ③, ④가 국내농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Punta del Este 선언의 목적에 부합하는 解決方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國際市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補助金과 모든 輸入統制(import control)의 撤廢

○ 農產物市場에 대한 總括規定(total regulation)의 용인

○ 國內農業政策과 農產物國際貿易을 분리하여 前者가 後者에게 미치는 否定的 影響(negative effects)의 解消

○ 國際農產市場 機能強化를 위하여 國內農業支援政策의 유지와 國內農業支援政策이 農產物國際貿易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간의 調和

## ㉒ 提案內容

스위스는 그러한 觀點에서 협상그룹이 하는 評價를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提案한다.

### 가) 緊急措置

제 1 단계에서 협상參與國은 세계에서 供給過剩을 일으키고 있는 被補助農產物의 수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被補助農產物의 생산을 줄이고 그 市場을 현 수준으로 維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協 商

제 2 단계에서 협상은 國內農業政策의 國際的影響을 최소화할 수 있는 規定을 마련해야 하며, 이 規定은 過剩供給되는 被補助農產物이 수출국의 국내시장에는 접근하지 않으면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保障해야 한다. 특히 開途國을 포함한 輸出指向國家의 輸出可能性을 향상 시켜야 한다.

### 다) 스위스의 立場

스위스는 첫째, 國內農業政策과 農產物國際貿易을 분리하여 國內農業政策이 農產物貿易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는 接近과 國內農業支持政策을 유지하는 접근을 調和시키는 방향을 추구한다.

## 다. CAIRNS GROUP 案

### ㉓ 序 言

① 이 提案의 기본 目的은 農產物貿易의 自由化를 이루고 歪曲된 農產物政策을 근절하며 협상을 지배하는 一般原則을 GATT의 規定과 原則의 범위내에 기속할 수 있는 方法을 강구하는데 있다.

② 최근 世界農產物市場은 市場接近에의 諸障壁, 정부의 廣範한 價格 및 所得支持政策, 일부 지역은 大量生産과 需要沈滯 상태인데 다른 일부 지

역은 需要未充足 상태에 있는 점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③ 따라서 심히 歪曲된 農產物市場에 대하여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補助金政策과 기타 政府支持措置가 더이상 許容되지 않고, 국내시장이 輸入農產物과 自由競爭 할 수 있도록 開放措置를 早期에 취해야 한다.

## ② 提案內容

### 가) 長期實踐計劃

#### (1) 開發途上國 優待措置

GATT 규정에 명시된 開發途上國 優待原則과 Punta del Este 宣言은 다음의 早期救濟措置등 동제안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동제안에 명시된 諸措置의 長期實踐計劃

둘째, 명백히 輸出目的과는 연결되지 않으면서 經濟社會的 開發을 촉진할 수 있는 國內經濟計劃 관련 特定支持措置등

#### (2) 市場接近(Market Access)

GATT의 諸規定과 原則은 다음과 같이 農產物貿易上 자유로운 流通의 制限을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GATT에 명백히 제시되지 않은, 예컨대 非關稅障壁과 기타 賦課金 및 最低輸入價格制등 모든 조치의 新規導入이나 既存措置의 계속 적용의 금지

둘째, 農產物에 대한 모든 關稅의 免除 내지 低率化등

#### (3) 農產物 補助金(Agricultural Subsidies)

GATT의 규정과 원칙은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補助金과 기타 政府支援措置를 금지 시켜야 한다.

#### (4) 衛生 및 植物衛生措置(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國際貿易에 대한 諸障壁을 제거하는 衛生 및 植物衛生規定과 調和를 이루도록 長期實踐計劃이 수립되어야 한다.

#### (5) 諮問, 監視 및 紛爭解決

農產物貿易은 長期實踐計劃을 통하여 諮問, 監視 및 紛爭解決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適用可能한 規定과 制度(mechanism)로 완전히 統合되어야

한다.

#### 나) 改革計劃事業(Reform Programme)

改革事業은 長期計劃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長期計劃이 실현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동 改革事業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綜合的 支持政策의 段階的 減縮(phase down)

전반적인 政府支持政策이 貿易歪曲의 根本原因이 되고 있으므로 각국은 國別減縮計劃의 형태로 貿易歪曲政策을 減縮 내지 廢止하되 無差別, 無條件의 最惠國待遇原則에 따라 實踐되어야 한다.

##### (2) 段階的 減縮의 優先順位

補助金政策의 段階的 減縮形態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다음사항에 대하여 그 處理上的 優先順位를 두어야 한다.

① 直接輸出補助金 및 직접, 간접으로 輸入을 줄이고 輸出을 늘리게 하는 間接補助金의 段階的 撤廢

② 關稅引下등을 포함한 輸入接近機會의 체계적 확대와 비관세장벽의 단계적 철폐

##### (3) 例外的 事項

消費者 補助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목적 및 구조적 조정을 위한 特定措置에 한하여는 支援減縮 範圍의 例外로 할 수 있다.

##### (4) 衛生 및 植物衛生的 措置

國際貿易障壁의 철폐를 위하여 각국의 基準과 衛生 및 植物衛生 規定을 조화시켜야 하며, 輸出開途國이 衛生 및 植物衛生的 措置에서 야기하는 實在的, 行政的 問題를 극복할 수 있는 技術的 支援을 해야한다.

##### (5) 協議, 監督, 紛爭解決 및 經過規定

農業部門補助金의 체계적 감축계획은 효과적인 確認節次를 요하며 過渡期를 위한 補完的 經過規定을 두어야 한다. 또,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제 조치에 대한 通告義務 規定을 두고 각국을 감시할 수 있는 監視機構(surveillance mechanism)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早期救濟措置(Early Relief Measures)

世界農產物貿易의 自由化를 확대하고 世界貿易의 歪曲을 줄이기 위하여 그에 대한 早期救濟措置가 필요하다. 예컨대 世界農產物貿易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輸出補助金과 生産補助金을 그 이상 확대치 못하도록 凍結하고, 단계적으로 補助金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

## 2. 各案別 要旨와 各國의 反應

### 가. 農產物 貿易協商에 관한 各案別 要旨

#### ① EC 案

##### 가) 前提와 方向

農產物需給 不均衡 등 세계농산물 시장에 惡影響을 미치는 근본문제를 農產物貿易協商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國際農產物市場의 不均衡, 不安定 및 不確實性등을 해소 하려면, 첫째, 農產物貿易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補助金政策을 감축하고 둘째, 市場動向에 대한 農業의 感應度提高, 세째, 생산과는 무관하게 直接補助方式을 통한 農民所得 支持 등의 농업정책적 改革을 요한다.

##### 나) 協商의 接近

첫째, 협상의 범위는 문제가 심각한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어 당해 原料 農產物과 加工農產物을 모두 포함하여 협상의 범위로 한다. 둘째, 협상의 방법은 우선 일차적으로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減縮政策을 제 1, 제 2 단계 등으로 나누어 推進할 것을 먼저 다룬다.

##### 다) 協定上의 制度的 裝置

GATT가 보조금에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예컨대 農業補助金 支給에 대한 이상적 測定方法을 갖추어야 하는바, OECD 등이 創案하여 일부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PSE는 그것이 적절히 조정되어야만 農業

補助金の 測定裝置 내지 측정의 基本單位로 이용될 수가 있다.

라) 開途國 優待問題

開途國은 그들 국가의 開發需要에 따라 특별히 그나라 형편을 고려하여 差別的으로 取扱되어야 한다.

② 스위스案

가) 協商의 目的

多者間 貿易協商은 첫째, 國際農產物市場의 機能改善保障과 둘째, 각국이 농업을 合理的 水準(비율)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나) 바람직한 接近代案

국내공업의 多樣性を 고려하면서 GATT 閣僚宣言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바람직하다.

① 國內農業政策과 農產物國際貿易을 분리하고,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것.

② 國內農業支援政策의 維持와 그것이 農產物國際貿易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간의 調和를 이룰것.

다) 具體的 方案

① 제 1 단계 : 協商參與國은 세계에서 供給過剩을 일으키고 있는 被補助農產物의 수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現水準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 2 단계 : 國內農業政策의 國際的 影響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協商을 통하여 마련하고, 이규정은 過剩供給되는 被補助農產物이 수출국의 國內市場에는 접근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外國市場으로만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CAIRNS 案

가) 基本目的

農產物貿易의 自由化를 충분히 이루고 歪曲된 農산물정책을 근절하며 GATT의 規定과 原則의 범위내로 協商原則을 歸屬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나) 長期實踐計劃

#### (1) 市場接近

非關稅障壁, 可變賦課金 및 最低輸入價格制 등 GATT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조치의 新規導入이나 既存措置의 계속적 적용을 禁止하고 農산물에 대한 모든 關稅를 免除 내지 引下한다.

#### (2) 農產物補助金

農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과 기타 政府支援措置를 금지한다.

#### (3) 衛生 및 植物衛生措置

국제무역에 대한 規制的 障壁役割을 하는 衛生 및 植物衛生措置는 排除되어야 한다.

#### (4) 監視 및 紛爭解決

農산물무역과 관련된 GATT 규정의 違反등에 대한 監視制度를 확립하여 분쟁의 소지를 最小化 하여야 한다.

### 다) 改革計劃

① 각국은 國別 減縮計劃을 세워 綜合的, 段階的인 補助金減縮을 단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감축의 우선순위는 直接輸出補助金 및 直接, 間接으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間接補助를 撤廢하는데에 두어야 한다.

## 나. 各案에 대한 各國의 反應

### ① EC案에 대하여

農產物輸出先進國인 美國은 EC案이 제안한 자체는 긍정적이나 그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閣僚宣言의 목적에 부합치 않아 미흡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태국, 호주, 우루과이 등은 EC案이 農產物貿易自由化 方案이 될 수 없고 市場歪曲 등 諸問題의 存續을 용인하는 소극적인 제안이라고 비

관한다. 이에 반하여 일본, 복구, 자마이카 등은 EC 案을 대체로 肯定的으로 평가한다. 특히 일본은 EC 案을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協상의 對象範圍가 부적절하고 補助金도 輸出補助金과 國內補助金を 구분치 않고 있으며, 정부보조의 測定手段으로서 PSE를 제안한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② 스위스案에 대하여

스위스案에 대하여 美國은 供給過多品目만을 協商對象으로 하자는 것들과 같이 비전이 약한 提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호주는 市場接近에 대한 보장을 언급치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에비하여 이집트, 한국, 자마이카, 멕시코 등은 農產物 輸入開途國의 優待原則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에 異見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AIRNS案에 대하여

CAIRNS案에 대해 輸出國인 美國은 懷疑的,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데 반하여 北歐와 EC 등 輸入國은 그것이 非現實的이고 지나치게 야심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日本도 CAIRNS案에 대하여 農產物의 特殊性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국이 필요에 따라 어느정도 獨自의인 農業政策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過剩生産問題를 比重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反對意思를 표시하고 있다.

# 다. 各案에 대한 韓國의 立場과 留意事項

## ① 韓國의 立場

韓國의 現단계로서는 農產物輸入國중에서 開途輸入國의 立場에 있다. 따라서 農產物貿易協商도 일차적으로는 農產物輸入國의 立場에서 다음에는 輸入國중에서도 開途輸入國의 立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검토한 각국의 提案에 대해서도 수출국 내지 선진국간의 利害關係가 類似 하듯이 輸入國 내지 開途輸入國간의 利害關係도 같거나 유사하므로 輸入開途國에 속하는 한국은 대체로 農產物輸出國 내지 輸出先進國과는 相反된 입장에 있다.

따라서 그들 國家群이 앞의 各案에 대하여 表明한 의견은 곧 한국의 입장과 같거나 유사할 수도 있고(輸入國, 輸入開途國의 경우), 다르거나 정반대일 수도 있다(輸出國, 輸出先進國의 경우).

## ② 韓國이 關心을 두고 留意할 事項

앞에서 검토한 農產物協商에 관한 各案의 내용중에서 韓國이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協商的 前提와 目標, 協商對象範圍, 市場接近, 農產物補助金 및 補助金 測定에 관한 制度的 裝置, 開途國優待問題, 衛生 및 植物衛生措置, 기타 諮問, 監視 및 紛爭解決등에 관한 사항이다.

### 가) 協商的 前提와 目標

① 農產物의 需給不均衡등 세계농산물 시장에 惡影響을 주는 근본 문제를 協商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農產物뿐만 아니라 熱帶產品 및 天然資源產品 등의 貿易自由化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EC案등에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② 그러나 협상을 통한 農產物貿易自由化의 利益은 수출국 내지 수출선진국에만 치우치지 않고, 특히 開途國에 有利한 방향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 나) 協商的 對象範圍

① 原料農產物과 加工農產物을 협상대상 범위로 하되, 構造的인 過剩狀態와 심각한 無秩序가 예상되는 부문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EC案에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② 그러나, 특히 韓國과 같은 輸入開途國의 國內農業事情을 고려하여 특정 農產物의 輸入開放이 그나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例外를 인정하여야 한다

### 다) 市場接近

① 비관세장벽, 가변부과금, 최저수입가격제등 GATT에 명시치 않은 모든 貿易抑制措置의 新規導入이나 既存措置의 계속적 적용을 금지하는 등

시에 모든 關稅를 引下 내지 免除하여야 한다는 CAIRNS 案에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② 단, 각국의 그러한 조치에 대한 確認과 감시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對應方案도 規律化 되어야 하는바 그러려면 충분한 준비기간이 요구된다.

#### 라) 農產物補助金

CAIRNS에서는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과 政府支援措置를 GATT의 규정과 원칙에 의하여 금지토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日本측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農業補助금은 輸入補助金과 一般國內補助金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보조금에 한해서만 規制對象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아니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도 該當國家의 國內經濟事情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構造改善등에 요하는 長期的 準備期間을 두어 지극히 완만한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 마) 補助金 測定에 관한 制度的 장치

EC案이 지적한 바와같이 GATT가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으려면, 締約國이 실시하고 있는 多樣的 농업보조금에 대한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測定方式을 협정을 통하여 장치화 하여야 한다. 현행 PSE개념은 적절한 調整을 통해서만 보조금 수준의 측정 장치로서, 그리고 측정의 기본단위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 開途國 優待問題

농수산물의 국제무역조건을 개선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그들 국가의 개발수준과 開發需要에 맞추어야 하며, 그러려면 開途國은 개발수요에 따라 특별히 그나라 여건에 맞도록 差等的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韓國은 국제적으로 先發開途國으로 부상하여 一般開途國과 달리 優待原則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할때 開途國優待問題는 전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 사) 衛生 및 植物衛生措置

각국이 실시중인 衛生 및 植物衛生措置가 국제문제의 不當한 견제장치로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국제간의 基本原則과 基準(basic principles and criteria) 및 생산과 가공등에 관련된 원칙등을 맞추어 調和

시켜야 한다.

아) 諮問, 監視 및 紛爭解決

예컨대, 농업보조금 감축을 위한 長期實踐計劃을 통하여 GATT 체제 내에 우루과이라운드선언에서 강조된 諮問과 監視 및 紛爭解決을 위한 규정과 제도를 확립하자는 CAIRNS 案에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 參 考 文 獻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_\_\_\_\_, 「關稅」, 各月報.

金基洪, 「保護主義措置의 凍結과 撤廢」, KIET, 1987. 3.

金基成, 金亨模, 「農水產物關稅制度의 效率의 運用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三宅正太郎, 「貿易摩擦과 GATT」, 김인경(譯), 고려원.

金廷洙의(譯), 「80 年代의 貿易政策」, KIET, 1984.

農協中央會, 「農產物 貿易과 農業發展」, 1985.

\_\_\_\_\_, 「開放經濟에 對應한 農產物交易과 農業發展 戰略」, 1985.

農開公, 「日本 農水產物輸入制度와 流通」, 海外資料 제 20 호, 1983. 4.

大韓貿易振興公社, 「GATT 協定文」, 貿公資料 26 ~ 27, 1987. 3.

\_\_\_\_\_, 「뉴라운드展望과 推進方向」, 1985. 10.

文大永의,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과 우리의 對應」, 研究報告 第 69 號,  
KIET, 1985. 3.

朴晚承의, 「GATT를 中心으로 한 國際貿易秩序의 展開方向과 우리의  
對應」, 研究報告 第 40 號, KIET, 1984. 5.

朴相哲, 「美國의 貿易環境과 우리의 對美貿易構造」, 特殊分析 131 號,  
KIET, 1981. 6. 30.

朴弼秀, 「韓美通商關係의 制度的 變遷」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2.

商工部 貿易委員會, 「貿易委員會와 産業被害教育」, 1987. 9.

\_\_\_\_\_, 뉴라운드에 관한 主要國別 立場, 1985. 8.

成克濟, 「世界貿易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情報産業政策」, 研究報告  
'86 - 06, 通信政策研究所, 1986. 12.

- 外務部,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現況 및 對應方案」, 1984. 7.
- 柳寬榮, 「日本の 貿易障壁과 對日逆調」, 特殊分析 第138號, KIET, 1981. 11. 17.
- 尹宇鎮, 「保護主義措置의 凍結과 撤廢」, KIET, 1987. 3.
- 李鏞熙의, 「先進國의 通商政策과 通商機構」, 研究報告 第39號, KIET 1984. 5.
- 李載王의, 「農畜水產物 輸入制限內容: 86 上半期・87 上半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日本貿易振會(編), 「서비스貿易의 現況과 自由化의 움직임」, 張碩熙・金基洪(譯), KIET, 1985. 4.
- 財務部, 關稅廳, 「UR補助金相計措置協商그룹 主要論點」, 1987. 8.
- \_\_\_\_\_, 「뉴라운드 協商關聯 業務資料」, 1986. 9.
- 車東世의, 「緊急輸入制限措置協商과 우리의 對應」, 特殊分析 2-17, KIET, 1982. 12.
- 韓國貿易協會, 「EC通商關係法 解說」, 1986. 12.
- \_\_\_\_\_, 「美國의 開放要請品目 輸入實態」, 1987. 5.
- \_\_\_\_\_, 「貿易」, 各月報.
- 許信行의, 「EC 共同農業政策의 方向轉換摸索」,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木島啓子, 「世界農產物貿易의 諸問題」, 大明堂, 1970.
- 齋藤高廣, 「農產物貿易と 國際協定」, 1979. 10.
- 紙谷貢・是永東彥, 「農業保護と 農產物貿易問題」, 日本 農林統計協會, 1985.
- CCC, Custom Valuation, 1972.
- FAO, Agricultural Commodity Projections, 1975 ~ 85, 1970.
- GATT, Customs Valuation, 1973.
- \_\_\_\_\_, The World Market for Dairy Products, 1983, Geneva.
- \_\_\_\_\_, Information on Measures Affecting Trade, 1983.
- \_\_\_\_\_, Programme of Work, Committee on Trade in Agriculture,

- GATT, Format for Submitting Information on Trade Measures, Explanatory Note, 1983.
- \_\_\_\_\_, Draft Report of the Committee on Trade in Agriculture, 1984.
- \_\_\_\_\_, Meeting of Committee at Senior Policy Level, 2 ~ 3, April 1984.
- \_\_\_\_\_, Summary of the Points Raised During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Held on 17 ~ 19, September 1985.
- \_\_\_\_\_, Inventory of Non-Tariff Measures/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Notified in Respect of Products in CCCN Chapters 1 ~ 24, 1982.
- \_\_\_\_\_, Information on Measures Affecting Trade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1983.
- \_\_\_\_\_, Tropical Products ; Information on the Commercial Policy Situation and Trade Flows/Tea and Instant Tea, 1981.
- \_\_\_\_\_, Work on Trade Liberalization ; Quantitative Restriction and other Non-Tariff Measures Affecting the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1981.
- \_\_\_\_\_,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Negotiations on Tropical Products/Note by the Secretariat, 1984.
- \_\_\_\_\_,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Status of Acceptances of Protocols, Agreements, and Arrangements, 1983.
- \_\_\_\_\_, Recommendation Concerning Transparency of Anti-Dumping Proceedings, 1983.
- \_\_\_\_\_, Working Party on Trade in Certain Natural Resource Products/Background Note Submitted by Canada, 1984.
- OECD, Problems of Agricultural Trade, Paris, 1982.

빈

면

研究報告 154

뉴라운드에 對應하는 農林水産物 輸出入政策方向

---

1987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京洋文化印刷株式會社 ( 737-2101 )

---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